



ODA집행기관의 사업시행 법적기반 및 사업유형

2017. 8

연구책임자

박광동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2007 -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2015 - 2019 국회입법지원위원
- 2011 - 2017 강남대학교 겸임교수
- 2008 일본 나고야대학 CALE 외국인 교수

주요 연구 실적

- ▷ Study on the City Redevelopment Legislative Modularization in Korea, 한국법제연구원(2016)
- ▷ 법원의 외국 사법부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2105)
- ▷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4)
-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I) 추진을 위한 각국의 경제발전법제 비교연구(1) - 중국과 러시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5)
- ▷ 日韓の法分野別 法整備支援事業の 現状と問題点, 名古屋大学法政国際教育協力研究センター (CALE) (2009)

공동연구원

허 대 원

주요 경력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2016 - 2017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2016 - 현재 아시아법제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 2017 - 현재 경기대학교 강사

주요 연구 실적

- ▷ “캄보디아의 토지소유 법제에 관한 연구”, 일감 부동산법학 제14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2017)
- ▷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일감 부동산법학 제1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2016)
- ▷ 노후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연구 : 「노후준비지원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2016)
- ▷ 한국 법제 모듈화에 대한 체계화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5)
- ▷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4)

연구보조원

임 희 선

주요 경력

-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제협력학 석사
- 2017 -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 2014 - 2017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문 요약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0년 7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유·무상 원조 정책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기본법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제1유형에 속하며, 법체제적 성격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과 관리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과 위임규정에 대한 하위법령에의 미비라는 법체제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ODA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즉, ODA 총괄 및 조정 기구로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관기관으로서 외교부(무상원조) 및 기획재정부(유상원조)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조 시행기관으로는 외교부 산하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KOICA)과 기획재정부 산하의 유상원조 담당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있으며, 그 외에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ODA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현행 폐지), ③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주관기관으로서 외교부(무상원조)는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②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유상원조)는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②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③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외 다수의 행정규칙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시행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행정규칙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또는 직제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ODA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이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구체화하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포함)와 외교부(KOICA 포함) 개발협력 사업을 양측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ODA 규모 1%(약 264억 원) 이상의 사업 예산을 받는 부처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ODA는 상대적으로 양자·유상원조가 많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 대한 원조 비율이 높다. 그리고 양자간 원조의 경우 프로젝트 원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자간 원조의 경우 세계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 지원 규모가 가장 높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July, 2010 reflecting official views received from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ECD’). In accordance with the new law,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IDC’) under the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to moderate, deliberate on, and decid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on grants and concessional loans.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provides the basic principle of South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DA’) regulates agencies supervising and implemen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Regarding the scope of effectiveness, the law belongs to the first type. Also, it features both the aspects of general norms as well as management norms of policy instruments in regard to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framework. However,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some issues on that front such as absence of provision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and insufficiency of delegation provisions in its subordinate statutes.

Korea’ ODA implementation system has its base in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CIDC plays a central role in moderating major matter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charge of grants)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charge of loans) are the two supervising agencies. And in terms of ODA implement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 Eximbank’), under the Ministry of Finance, play important roles as executing agencies. Furthermore, other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lso carry out a lot of modaliti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specify, the CIDC moderates ODA matters based on the following legal grounds: (1)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s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s; (2) the Operating Regulation of the CIDC (currently abolished); and (3)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Institutions Attached There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 a supervising body has its legal base under (1)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ts Enforcement Decree; (2) the Rules on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Council for Grant Aid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3)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stitutions Attached Thereto. Meanwhil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onducts its affairs under (1)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ts Enforcement Decree; (2)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s; and (3) the Regulations 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and other administrative rules.

Most of the legal grounds for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that imple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lies in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s subordinate statutes and administrative rules. In particular, most of the organizations base the ground for implementing their ODA projects on the Enforcement Rules of affiliated institutions and its own administrative rules.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ordinances that specify the contents of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ince 2015.

Asid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cluding Korea Eximbank)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cluding KOICA) serving as the two big pillars of Korea’s ODA projects,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and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re recognized to have received more than 1% (about 26.4 billion won) of the total ODA project budget in Korea. Korea’s ODA loan-assisted projects relatively focus more on bilateral and credit assistance, and tend to be conducted in Asia, Africa and South America. Bilateral aid is the most commonly used method for ODA projects and multilateral assistance is most frequently conducted with the help of the World Bank.

목 차

I. 들어가며	1
II.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법적 성격	2
1. ODA 기본법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
가. 기본법의 개념과 기능	2
나. 기본법의 유형	3
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체계 분석	5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ODA 관련 개별 법률관계 분석	16
가. ODA 관련 개별 법률	16
나. ODA 관련 개별 법률의 적용 범위.	17
III. ODA 담당기관의 유형별 법적 근거 및 사업 유형	19
1. ODA 담당기관의 유형별 법적 근거와 조직	19
가. 총괄 및 조정기구(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
나. 무상원조 주관기관(외교부)	25
다. 유상원조 주관기관(기획재정부)	28
라. 주요 수행기관	38
마. 그 밖에 수행부처	75
2.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93
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및 책무	93
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관련 자치법규 입법 현황	94
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자치법규	97

IV. ODA집행기관의 사업유형	108
1. 현 황	108
2. 3년간 주요 부처 및 지자체의 구체적 현황	113
가. 2015년	113
나. 2016년	127
다. 2017년	153
라. 2015-17년 부처, 기관별 ODA 사업 유형 통계(건수 기준)	187
3. 입법 제·개정안 현황	188
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188
나.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	190
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	192
참고문헌	194
[부록 1]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공여실적(순지출기준)	199

표 목차

〈표 1〉 기본법의 성격별 유형	3
〈표 2〉 기본법의 효력별 유형	4
〈표 3〉 법체계적 성격 유형	4
〈표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구성	5
〈표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연혁	9
〈표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연혁	11
〈표 7〉 ODA 관련 개별 법률	17
〈표 8〉 ODA 관련 개별 법률	18
〈표 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관련 ODA 근거 법령	20
〈표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단 비교	21
〈표 11〉 외교부 관련 ODA 근거 법령	25
〈표 12〉 한국국제협력단 관련 ODA 근거 법령	26
〈표 13〉 기획재정부 ODA 관련 개관	28
〈표 14〉 기획재정부 관련 ODA 근거 법령	32
〈표 15〉 기획재정부 ODA 관련 법령 체계 분석	33
〈표 16〉 기획재정부 ODA 관련 법령 근거 조문 및 내용	33
〈표 17〉 KSP(무상원조사업) 법적 근거	36
〈표 18〉 교육부 ODA 관련 개관	38
〈표 19〉 교육부 관련 ODA 근거 법령	41
〈표 20〉 교육부 ODA 관련 법령 체계 분석	41
〈표 21〉 교육기본법상의 국제교육 조문	42
〈표 22〉 교육부 ODA 관련 법령 근거 조문 및 내용	43
〈표 23〉 보건복지부 ODA 관련 개관	47
〈표 24〉 보건복지부 관련 ODA 근거 법령	49
〈표 25〉 보건복지부 ODA 관련 법령 체계 분석	50
〈표 26〉 보건복지부 ODA 관련 법령 근거 조문 및 내용	51
〈표 2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제규정」	55
〈표 28〉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개관	56
〈표 29〉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ODA 근거 법령	59
〈표 30〉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법령 근거 조문 및 내용	61
〈표 31〉 산업통상자원부 ODA 관련 개관	69

〈표 32〉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ODA 근거 법령	72
〈표 33〉 인사혁신처 관련 ODA 근거 법령	73
〈표 34〉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ODA 근거 법령	75
〈표 35〉 통일부 관련 ODA 근거 법령	77
〈표 36〉 법무부 관련 ODA 근거 법령	77
〈표 37〉 국방부 관련 ODA 근거 법령	78
〈표 38〉 행정자치부 관련 ODA 근거 법령	79
〈표 39〉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ODA 근거 법령	80
〈표 40〉 환경부 관련 ODA 근거 법령	81
〈표 41〉 고용노동부 관련 ODA 근거 법령	82
〈표 42〉 여성가족부 관련 ODA 근거 법령	83
〈표 43〉 국토교통부 관련 ODA 근거 법령	84
〈표 44〉 해양수산부 관련 ODA 근거 법령	86
〈표 45〉 기상청 관련 ODA 근거 법령	87
〈표 46〉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ODA 근거 법령	88
〈표 47〉 국민안전처 관련 ODA 근거 법령	89
〈표 48〉 조달청 관련 ODA 근거 법령	90
〈표 49〉 중소기업청 관련 ODA 근거 법령	92
〈표 50〉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97
〈표 51〉 세종특별자치시 ODA 관련 개관	98
〈표 52〉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99
〈표 53〉 경기도청 ODA 관련 개관	100
〈표 54〉 경상남도청 ODA 관련 개관	103
〈표 5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DA 관련 개관	105
〈표 56〉 서천 구청 ODA 관련 개관	107
〈표 57〉 부처별 ODA 규모	108
〈표 58〉 정부부처 등의 ODA 사업 수행 실적	110
〈표 59〉 2015 주요 부처 및 지자체의 구체적 현황	113
〈표 60〉 2016 주요 부처 및 지자체의 구체적 현황	127
〈표 61〉 2017 주요 부처 및 지자체의 구체적 현황	153
〈표 62〉 2015-17년 부처, 기관별 ODA 사업 유형 통계(건수 기준)	187
〈표 6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188
〈표 64〉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	191
〈표 6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	192

그림 목차

〈그림 1〉 한국 ODA 추진체계	19
〈그림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직도	24
〈그림 3〉 개발협력국 조직도	28
〈그림 4〉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조직 및 체계	38
〈그림 5〉 교육부 조직	46
〈그림 6〉 보건복지부 조직도	53
〈그림 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조직도	54
〈그림 8〉 인사혁신처 조직도	74
〈그림 9〉 한국의 공여기관의 ODA규모	110
〈그림 10〉 한국의 총 ODA 규모 10개 기관	112

상자 목차

〈상자 1〉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령해석사례	13
〈상자 2〉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령해석사례	15
〈상자 3〉 국제교류협력 관련 자치법규 입법현황	95
〈상자 4〉 국외 자매결연 관련 조례 입법현황	96
〈상자 5〉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103
〈상자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	105
〈상자 7〉 「서천군 국제개발협력 조례」	106
〈상자 8〉 현황 조사 분석 결과 검토시 기준점	113

I. 들어가며

최근 OECD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순지출 규모는 약 19억 달러(원화: 2조 1,619억 원)이며, 국민소득(Gross National Incom, GNI) 대비로는 약 0.14%이다.¹⁾ 이러한 ODA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ODA정책은 2개의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및 약 30여개 이상의 집행(=시행)기관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²⁾ 이러한 ODA집행과 관련하여 일부 행정부처 또는 기관이 ODA를 개별적인 사업개발과 예산확보 (또는 증액)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수원국의 종합적이고 장기적 발전보다 ‘보여주기식’의 단기적 사업, 또는 중복된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 다만,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ODA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의 사업시행의 유형 및 법적 기반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DA집행기관의 사업시행의 안정적 수행 및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첫째, 기본법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기본법 유형 및 법적 성격 분석, 둘째, 우리나라 ODA집행기관의 총괄 및 조정기구, 주관기관, 시행기관의 유형별 법적 근거 및 사업 유형 분석, 셋째, ODA집행기관의 사업시행 법적기반 및 사업유형에 대한 입법 제·개정안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ODA집행기관의 사업시행의 법적 기반 및 사업유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자 한다.

1) 유웅조, 2016. 『지표로 보는 이슈』 vol.56. 국회입법조사처, 1면.

2) 유웅조, 앞의 글, 4면.

3) 유웅조, 앞의 글, 4면.

II.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법적 성격

1. ODA 기본법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가. 기본법의 개념과 기능

기본법은 주로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거나, 해당분야 정책시행을 위한 골격을 형성하거나, 그 밖에 개별법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대강을 정하여 개별법으로 정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법률이라고 논의되고 있다.⁴⁾

이러한 기본법에는 ①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법률을 지칭하는 경우(예: 「교육기본법」등)와 ②주로 국정의 중요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의 방향성과 대강을 천명·지시하는 법률로서, 법령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법률을 말한다.⁵⁾

기본법은 개별 정책대상을 규율하는 개별법과는 상위법적 위상을 가지지는 않으며, 반드시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야만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정책의 기본적 이념·정책·방침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모두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⁶⁾

이러한 기본법은 국가정책의 방향제시 및 추진, 제도·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정책의 계속성·일관성 확보, 행정의 통제,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 지방분권의 추진, 다른 법률의 총칙 규정 역할⁷⁾ 등의 기능이 있으며,⁸⁾ 또한 보충적 법형성 기능, 해석적 통제기능, 체계형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⁹⁾

4) 백옥선, 2015.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제품인증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31-32면.

5) 박영도, 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19-20면.

6) 강현철 외,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분석 연구』. 세종: 기획재정부, 62

7) 법제처, 2012. 『법령입안심사기준』. 세종: 법제처, 81면.

8) 기본법의 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은 박영도, 앞의 보고서, 24-33면을 참고.

9) 백옥선, 앞의 보고서, 32-34면.

나. 기본법의 유형

기본법의 유형은 기본법의 성격과 효력범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분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성격이 혼합되어 나타난다.¹⁰⁾

우선, 기본법의 성격에 따라 이념형, 정책형, 대책형, 개혁추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¹¹⁾

〈표 1〉 기본법의 성격별 유형¹²⁾

유 형	내 용	예
이념형 (선언형)	- 제도·정책에 관한 기본·이념·원칙을 정하는 것 - 이 형의 기본법은 그 분야에 있어서 지도법으로서 기본적인 이념·원칙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국민에게 널리 제시한다는 역할도 담당	- 「관광기본법」 - 「교육기본법」
정책형	- 각각의 행정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제도의 목표·방향대강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에 대하여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것	- 「농업·농촌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 「과학기술기본법」
대책형	- 일정한 행정상의 대책의 기본을 정하고 사회질서의 유지, 복지향상, 피해의 예방·구제 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민방위기본법」 -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혁 추진형	- 국정상의 중요과제로 되어 있는 특정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의 형식을 사용한 것으로서 개혁의 기본이념·기본방침을 명시하고 스스로 그 개혁의 프로그램을 정하거나 개혁추진을 위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또한, 기본법의 효력범위에 따라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¹³⁾

10) 박영도, 앞의 보고서, 119-120면.

11) 박광동, 2011.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137면.

12) 박광동, 앞의 보고서, 137-138면.

13) 박영도, 앞의 보고서, 345-346면.

〈표 2〉 기본법의 효력별 유형¹⁴⁾

유 형	주요내용	비 고
제1 유형	규율하고자 하는 제도의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동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국가 등의 책무, 동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개별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준 및 제정·개정 시 기본법의 취지존중,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개별 법률에서 도입할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 동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기본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개별법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의 유형	「고용정책기본법」, 「관광기본법」, 「교육기본법」, 「국세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자격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청소년기본법」, 「해양개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제2 유형	법률에서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사용하면서 규율하고자 하는 제도의 기본이념·기본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도의 운영을 자체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기본법을 구체화·세부화 하는 다른 개별 법률이 없는 법률의 유형	「민방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그리고 기본법의 법체계적 성격에 따라 ‘헌장으로서의 기본법’,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 ‘관리규범으로서의 기본법’, ‘종합법전으로서의 기본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⁵⁾

〈표 3〉 법체계적 성격 유형¹⁶⁾

유 형	내 용
헌장으로서의 기본법	기본법 중 특정한 정책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선언적인 형태로 정하는 경우로서 특히, 해당 정책분야의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분야 종사자의 책무를 정한다.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	헌장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 특히 그 기본법이 해당분야의 정책에 대한 조정수단을 포괄하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으로 기본법이 헌장에 해당하

14) 박영도, 앞의 보고서, 345-346면.

15) 강현철 외, 앞의 보고서, 69면.

16) 강현철 외, 앞의 보고서, 69면.

유 형	내 용
	는 기본이념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총괄조정을 위한 위원회조직, 재정수단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 규제 및 지원을 위한 각종 행정수단을 총괄적으로 설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리규범으로서의 기본법	기본법이 특정한 분야에 대한 우월적 관리수단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주목한다. 즉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특정한 제도·행정조직 또는 정책수단에 대한 관리 및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합법전으로서의 기본법	특정분야의 종합법전으로서의 기본법은 위의 세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본법의 범주 이외에 특정한 행정 분야에 대한 유일한 법률이면서 이념과 총괄적인 정책수단과 개별적 행정수단을 모두 망라한 종합법전의 형태를 띠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

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체계 분석

1) 기본법의 구성

현행 제정된 기본법은 20개조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구성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구성¹⁷⁾

([시행 2015.4.16.] [법률 제12767호, 2014.10.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2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제2조(정의)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14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4조(기본원칙)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16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18조(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재외공관의 역할)
제9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10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부 칙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2264&ancYd=20100125&ancNo=09938&efYd=20100726&nwJoYnInfo=N&efGubun=>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 평등 실현,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법 제3조제1항).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은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그 밖에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법 제3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1항). 또한 국가 등은 양자 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2항).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6조).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법 제7조제1항)와 실무위원회(법 제7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두어야 하고, 민간자문위원회(법 제7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를 둘 수 있다.

양자 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하고(법 제9조제1항),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주

Y&chrClsCd=010202#0000 (접속일: 2017.4.14.).

관한다(법 제9조제1항).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1항).

구체적으로 보면, 주관기관은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홍보,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법 제10조제1항). 다만, 이 법에 따른 주관기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시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법 제20조).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분석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기본법의 성격과 관련하여 각각의 행정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제도의 목표·방향·대강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에 대하여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정책형 기본법이다.

그리고 기본법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제1유형에 속하며, 법체계적 성격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과 관리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입법체계적인 점에서 2가지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 기본법과 관련 개별 법률 등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¹⁸⁾

그런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6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시 그 법령의 목적이나 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그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과의 적용상 선후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 법령의 제정 목적이나 이념에 맞도록 다른 법령을 제정·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18) 국회 법제실, 2016. 『법제이론과 실무』. 서울: 국회 법제실, 287면.

방식이다.¹⁹⁾ 이런 규정 방식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실제 법령 해석상 다른 법령과의 저촉 문제 등 의문을 일으킬 소지가 많으므로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²⁰⁾

또한 이런 규정 방식은 법령을 제정·개정 시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나, 현행법령과의 관계에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관해 정책형 기본법 유형이나 제1유형,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과 관리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경우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정책에 따라 다른 법률 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우선 적용하게 하거나, 또는 개별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위임규정에 대한 하위법령에 대한 규정 미비를 들 수 있다. 예컨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7항의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국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연혁

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2010년 1월 25일에 제정되고, 2010년 7월 26일에 시행되었으며, 2017년 5월 현재 총 4회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이 중 2013년 3월 23일 일부개정은 타법개정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개정은 주로 사업의 책임성·투명성[시행계획 국회 보고 등] 강화 및 정책의 효율성·일관성(전문 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19)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 <http://www.lawmaking.go.kr/lmKnlgl/jdgStd/info?astSeq=44&astClsCd=>(접속일: 2017.4.14.).

20)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 상동

〈표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연혁²¹⁾

제·개정 시기	제·개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시행 2010.7.26.] [법률 제9938호, 2010.1.25., 제정]	현행 공적개발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연수생 초청, 전문 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 지원 등의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공적개발원조업무가 합의된 기본이념이나 원칙 수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추진기관간 사업 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유무상 원조간의 연계가 저해되어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국제개발협력은 인도주의 실현 및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등을 기본정신으로 함(법 제3조) 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둠(법 제7조). 다. 양자 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하되,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함(법 제9조).
[시행 2011.10.26.] [법률 제10919호, 2011.7.25., 일부개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실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사업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9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AD%EC%A0%9C%EA%B0%9C%EB%B0%9C%ED%98%91%EB%A0%A5%EA%B8%B0%EB%B3%B8%EB%B2%95#undefined> (접속일: 2017.4.14.).

제·개정 시기	제·개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시행 2013.7.16. 및 2014.1.1.] [법률 제11889호, 2013.7.16., 일부개정]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정신에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지침에 따라 각 시행기관별로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 중 “여성·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 평등 실현”을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 평등 실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각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2015.4.16.] [법률 제12767호, 2014.10.15., 일부개정]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가. 국가 등은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제5조제4항 신설). 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제7조제1항). 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제13조제5항 신설). 라. 국가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은 2010년 7월 21일에 제정되고, 2010년 7월 26일에 시행되었으며, 2017년 5월 현재 총 3회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이 중 2013년 3월 23일 및 2014년 11월 19일의 일부개정은 타법개정에 의한 것이다.

〈표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연혁²²⁾

제·개정시기	제·개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시행 2010.7.26.] [대통령령 제22296호, 2010.7.21., 제정]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법률 제9938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정보 공개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자문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8조 및 제9조) 1)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안은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은 시행기관이 주관기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정책이 효율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1)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자체 평가, 제3자 평가 또는 공동평가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평가소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국제적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개발협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2264&ancYd=20100125&ancNo=09938&efYd=2010072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접속일: 2017.4.14.).

제 · 개정시기	제 · 개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력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평가를 전담하는 기구를 둠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정보 공개의 대상(안 제13조)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중요 심의 · 조정 결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결과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되, 공개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정보 공개의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시행 2011.10.26.] [대통령령 제23229호, 2011.10.17., 일부개정]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주요 사항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919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정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9호, 2013.3.23., 타법개정]		◎ 대통령령 제24429호(2013.3.2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관련한 법령해석정보

첫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의결하여 확정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의결하여 확정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²³⁾

〈상자 1〉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령해석사례²⁴⁾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이유²⁵⁾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제1호),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제4호) 등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함)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제1호),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관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23) 법령해석사례. 2017. [법제처 16-0630, 2017.2.15., 국무조정실]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searchCondition=3&searchKeyword=%ea%b0%9c%eb%b0%9c%ed%98%91%eb%a0%a5&csSeq=375114&rowIdx=1>. (접속일: 2017.4.14.).

24) 법령해석사례. [법제처 16-0630, 2017.2.15, 국무조정실]. 상동

조정 및 심사·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의결하여 확정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먼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5항제1호,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그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위원회가 해당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심사·의결 및 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에 부수하는 “계획의 수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회는 확정된 계획을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고 할 것인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4항은 위원회의 기본계획 수정 권한에 관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불필요한 중복 등을 방지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는 정책조정계획으로서, 해당 계획이 확정된 후 국제적·국내적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정할 경우 그 내용에 맞추어 하위계획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 해당 법률에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기본계획의 변경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상위·하위 계획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의결하여 확정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법률 제11889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13.7.16. 공포되어 2014.1.1. 시행 예정인 것) 제13조제2항에서 각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자체평가계획과 평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체평가계획,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체평가계획,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는 없다.²⁵⁾

25) 법령해석사례. 2[법제처 16-0630, 2017.2.15, 국무조정실]. 상동

26) 법령해석사례. [법제처 13-0536, 2013.12.11, 국무조정실]. 상동

〈상자 2〉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령해석사례²⁷⁾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2항이 모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인지 또는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할 시행기관의 범위와 대상을 평가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인지 여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²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하고, 같은 조 제8호에 따르면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하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법률 제11889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서 각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자체평가계획,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이하 “자체평가계획 등”이라 함)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는데, 개정규정의 문언 형식을 보면 “각 시행기관”은 자체 평가 계획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서 시행기관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명시하여 시행기관의 범위에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개정규정에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자체 평가 계획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각 시행기관별로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이유서 참조), 시행기관의 범위는 평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규정에서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자체 평가 계획 등의 내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도록 한 것으로 볼 것이고, 국제개발협력평가의 대상인 시행기관의 범위까지 규율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개정규정에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평가와 관련된 제반 규율 내용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자체 평가 계획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도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행기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별도로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이러한 시행기관의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은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체 평가 계획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는 없다.

27) 법령해석사례. [법제처 13-0536, 2013.12.11, 국무조정실]. 상동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ODA 관련 개별 법률관계 분석

가. ODA 관련 개별 법률

우리나라의 ODA사업은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추진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한국국제협력단법」, 「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과 함께 ODA 사업이 운용되고 있다.²⁹⁾ 여기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과 관리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ODA 사업 중 무상원조의 주무부처는 외교부(무상원조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와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유상협력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에 위탁)로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다.³⁰⁾ 이에 따라 주요 3개 법령 중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유상원조와 관련되어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법」이 무상원조와 관련된 법령으로 볼 수 있다.

〈표 7〉 ODA 관련 개별 법률³¹⁾

법률명	소관부처	소관 부처 성격	유·무상 구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외교부(개발정책과)/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외교부-주관기관	유·무상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	기획재정-주관기관	유상
「한국국제협력단법」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주관기관	무상
「국제보건의료재단법」	보건복지부(국제협력담당관)	보건복지부-시행기관	유·무상

나. ODA 관련 개별 법률의 적용 범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법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28) 법령해석사례. [법제처 13-0536, 2013.12.11, 국무조정실]. 상동

29) 전용일 외. 2011. 「국내 주요 기관 공적개발원조(ODA) 체제 평가 연구」. 세종: 국무총리실, 9면.

30) 권윤. 2016. “SDGs 이행과 ODA 추진체제의 개선과제.” 『KIPA 조사포럼』 vol.19. 한국행정연구원 19면

31) 법제처의 ODA 관련 개별 법률을 분석하여 연구진이 정리한 것임.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즉,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첫째,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목적 조항에서 이 법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여 기금설치를 위한 근거 법임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의 양자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①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② 양자를 상위법과 하위 법으로 보는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우위의 법률이 되어, 양자 간의 상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적용되게 된다.

둘째,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설립을 위한 근거 법임을 밝히고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한국국제협력단법」과의 관계를 ①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② 양자를 상위법과 하위 법으로 보는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우위의 법률이 되어, 양자 간의 상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적용되게 된다.

셋째, 「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이 법은 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여 국제보건의료재단 설립을 위한 근거 법임을 밝히고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국제보건의료재단법」과의 관계를 ①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제보건의료재단법」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② 양자를 상위법과 하위 법으로 보는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우위의 법률이 되어, 양자 간의 상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적용되게 된다.

〈표 8〉 ODA 관련 개별 법률³²⁾

법률명	법적 성격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의 관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기본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금설치 근거법	①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적용 ② 상위법과 하위법 관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적용
「한국국제협력단법」	조직설립 근거법	①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적용 ② 상위법과 하위법 관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적용
「국제보건의료재단법」	조직설립 근거법	①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적용 ② 상위법과 하위법 관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적용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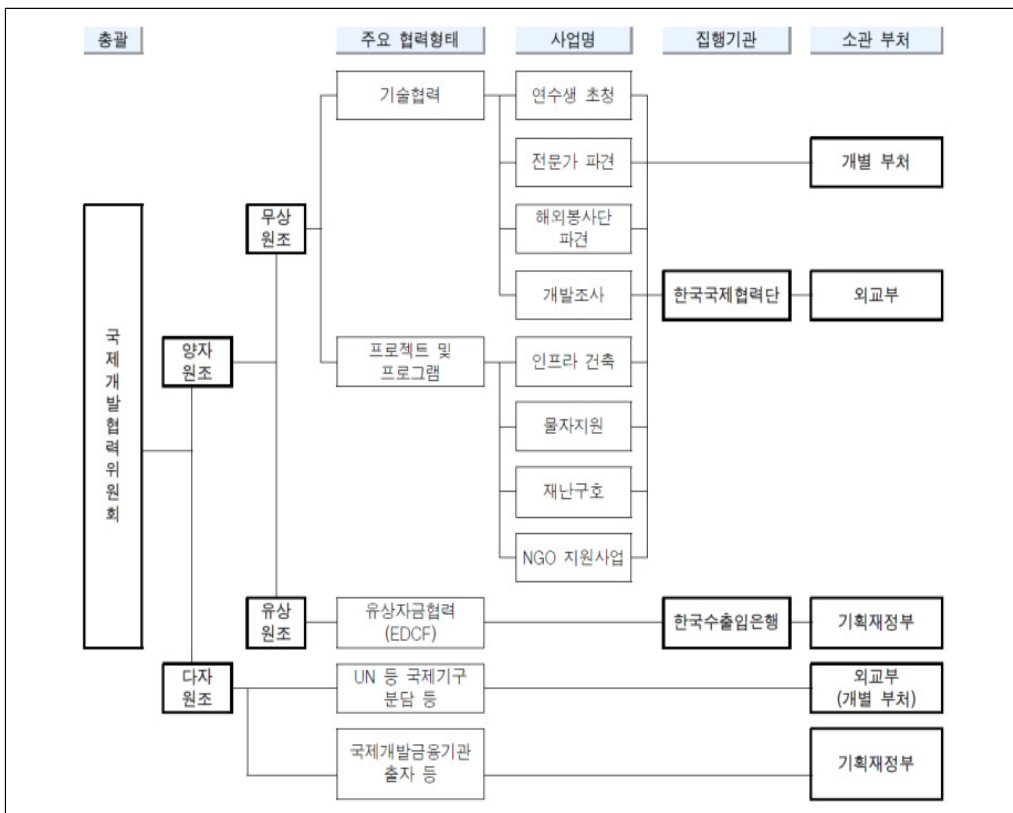
III. 담당기관의 유형별 법적 근거 및 사업 유형

1. ODA 담당기관의 유형별 법적 근거와 조직

우리나라의 ODA추진체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즉, ODA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주관기관으로서 외교부(무상원조) 및 기획재정부(유상원조)가 있다(이 법 제9조). 그리고 시행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있다(이 법 제2조제8호).

이와 같은 전체적인 추진체계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림 1〉 한국 ODA 추진체계³³⁾



33) 감사원. 2017. 『감사보고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서울: 감사원, 10면.

가. 총괄 및 조정기구(국제개발협력위원회)

(1) 법적 근거

2010년 당시 공적개발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연수생 초청, 전문 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무상원조사업이 수행되고 있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지원 등의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공적개발원조업무가 합의된 기본이념이나 원칙 수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추진기관간 사업 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유무상 원조간의 연계가 저해되어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었으므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시행된 바 있으며,³⁴⁾ 동법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동법 제7조 제1항), 동 위원회도 재편되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정하였다.³⁵⁾ 그리고 2006년 1월 26일 대통령령 제19298호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을 제정·시행되었다가, 2010년 7월 26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시행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은 폐지되었다.

〈표 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관련 ODA 근거 법령³⁶⁾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법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현행 폐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2264&ancYd=20100125&ancNo=09938&efYd=2010072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접속일: 2017.4.14.).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0744&lsId=&efYd=201504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접속일: 2017.4.14.).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2)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동법 제3조).
- ②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둔다(동법 제7조).

〈표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단 비교³⁷⁾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	제2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교육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행정자치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고용노동부장관 11. 여성가족부장관 12. 국토교통부장관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1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②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는 사항 ⑥ 위원회의 부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법 제9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면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위원(민간위원은 제외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임원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국무조정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5조(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이하 “민간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	--

	구성한다. ②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그 밖의 관련 단체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6조(수당 등) 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및 제1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폐지]

- ①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들 국가의 빈곤퇴치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한국국제협력단법」 등에 의한 국제적 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동 규정 제1조).
- ②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 등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매년도 및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등을 심의한다(동 규정 제2조).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 규정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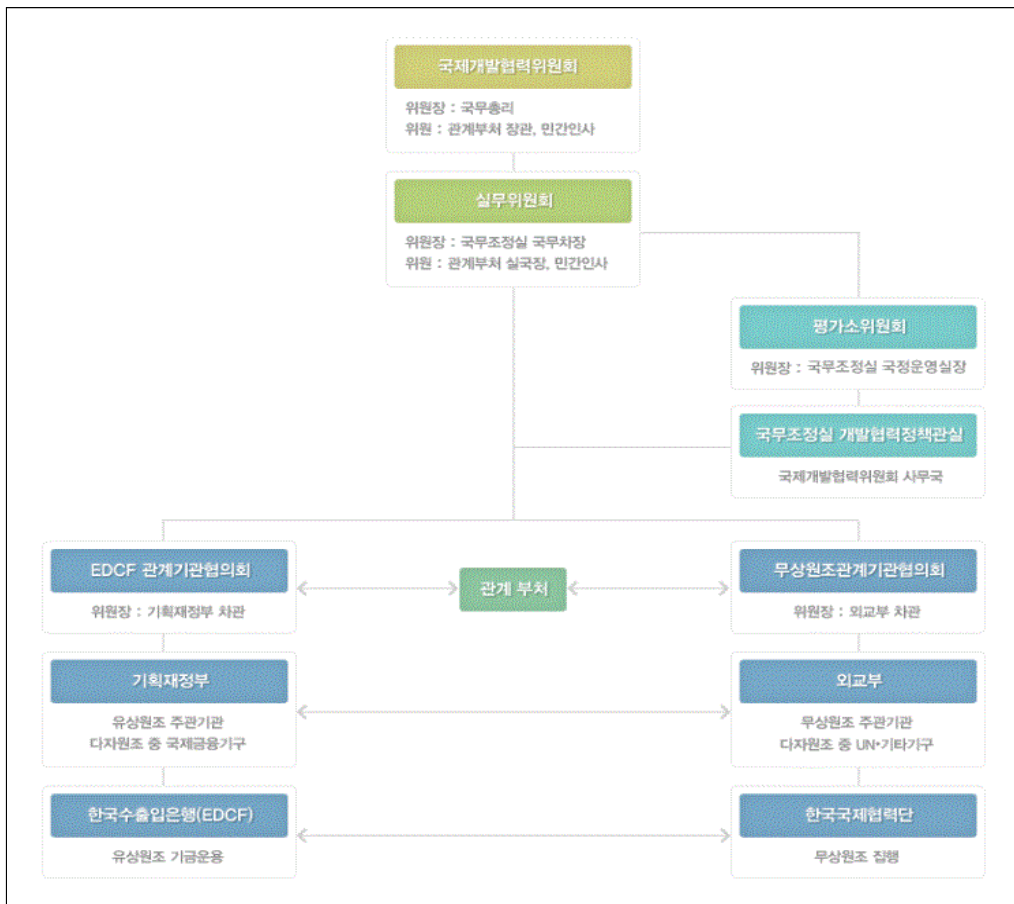
3) 조직 체계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소관부처 중의 하나인데,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관련 하여 담당조직은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국무1차장-개발협력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제12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는 필요적 위원회이다(「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항).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관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다(이

위원회는 ①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②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이법 제7조제5항).

〈그림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직도³⁸⁾



24 ODA집행기관의 사업시행 법적기반 및 사업유형

나. 무상원조 주관기관(외교부)

1)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제1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및 「UN(United Nations) 및 기타기구」 관련 다자원조의 주관기관³⁹⁾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초부터 당시 외교통상부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무상원조 담당기관들 사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었다.⁴⁰⁾ 이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⁴¹⁾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⁴²⁾에 따라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와 “무상원조 관계기관 분과협의회”를 재편하게 되었으며,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2010년 11월 18일 외교통상부 예규 제172호로 제정·시행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다(「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

〈표 11〉 외교부 관련 ODA 근거 법령⁴³⁾

외교부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행정규칙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9) 행정자치부 국제행정협력관실. 2014. 『국제협력실무 매뉴얼』. 세종: 행정자치부, 87면.

40) 정책뉴스, 『외교부, 충분한 사전검토 통해 체계적 대외원조』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JSESSIONID_KOREA=9AOwKM8zakinBKjTPbTrf1VFNJs09tC0Y93QO1V0rKOzb00cgH5M!2013340275!-1727401076?newsId=148615482&pWise=relationNews2 (접속일: 2017.4.14.).

4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 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주관한다.

4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5조(협의체)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③ 재외공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 협력대상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행기관의 현지 주재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4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이 밖에도 외교부는 무상원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이때, 한국국제협력단 조직설립에 법적 근거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고 있다.

〈표 12〉 한국국제협력단 관련 ODA 근거 법령 44)

한국국제협력단법	법적 근거	
	법률	-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시행령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폐지)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 -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이 사업시행지침 제1조). 또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 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국제협력단 인력 파견사업 시행 시 안전에 관한 훈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1조).

4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2)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① 양자 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법제9조제1항).
- ②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법 제7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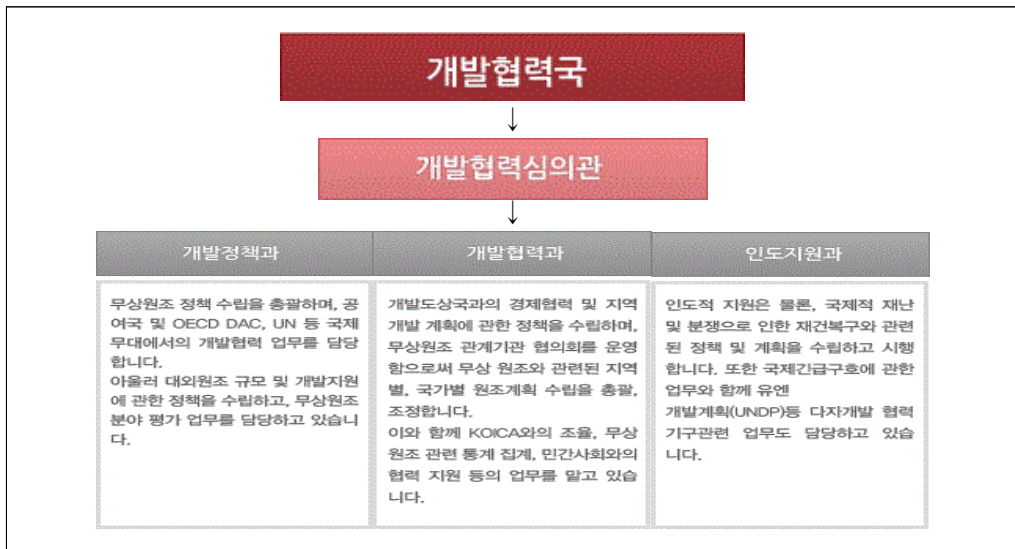
나) 「한국국제협력단법」

- ①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 ②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연수생의 초청, 전문 인력의 파견, 해외봉사단의 파견, 개발조사, 재난구호,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의 사업 및 국제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사업, 그리고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법 제7조).

다) 조직 체계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소관부처 중의 하나이며, 국제개발협력상의 무상원조 주관기관이다(「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제1항). 특히 외교부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담당 조직은 외교부장관-제2차관-개발협력국에서 담당하고 있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제2항 및 제26조).

〈그림 3〉 개발협력국 조직도⁴⁵⁾



구체적인 실무는 국장, 심의관 및 3개과(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인도지원과)로 구성되어 있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이 담당하고 있다. 외교부는 무상원조와 관련하여 대외 무상원조에 관한 업무 및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은 한국국제협력단 설립 근거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서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유상원조 주관기관(기획재정부)

〈표 13〉 기획재정부 ODA 관련 개관

	부서명	부서 인원	예산(단위: 억 원) ⁴⁶⁾	ODA사업 경험 및 유형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개발협력과	9명	대외경제협력기금 (1987-2016): 47,993 ○ 상세항목 * 정부출연금:43,242 * 재특차입금:6,171 * 차입금상환:3,027 * 재정운영결과:1,606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총괄

45) ODA KOREA, 『무상원조 주관 및 시행기관』 http://odakorea.go.kr/ODAPage_2012/T02/L02_S02_01.jsp (접속일: 2017.4.14.).

조직도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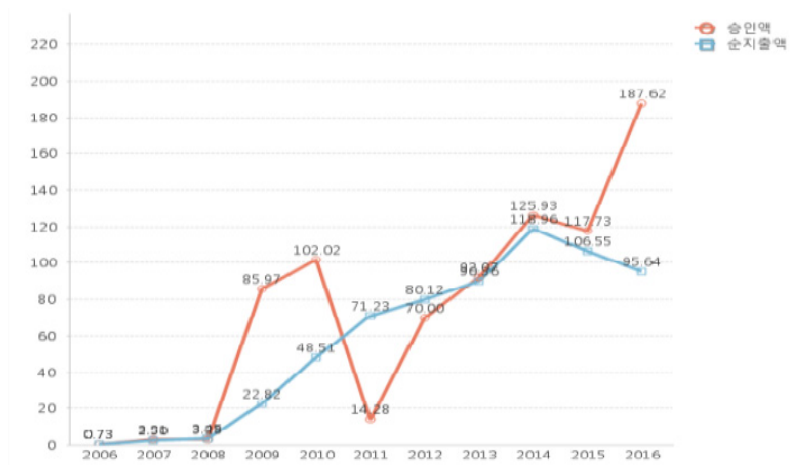
ODA 시행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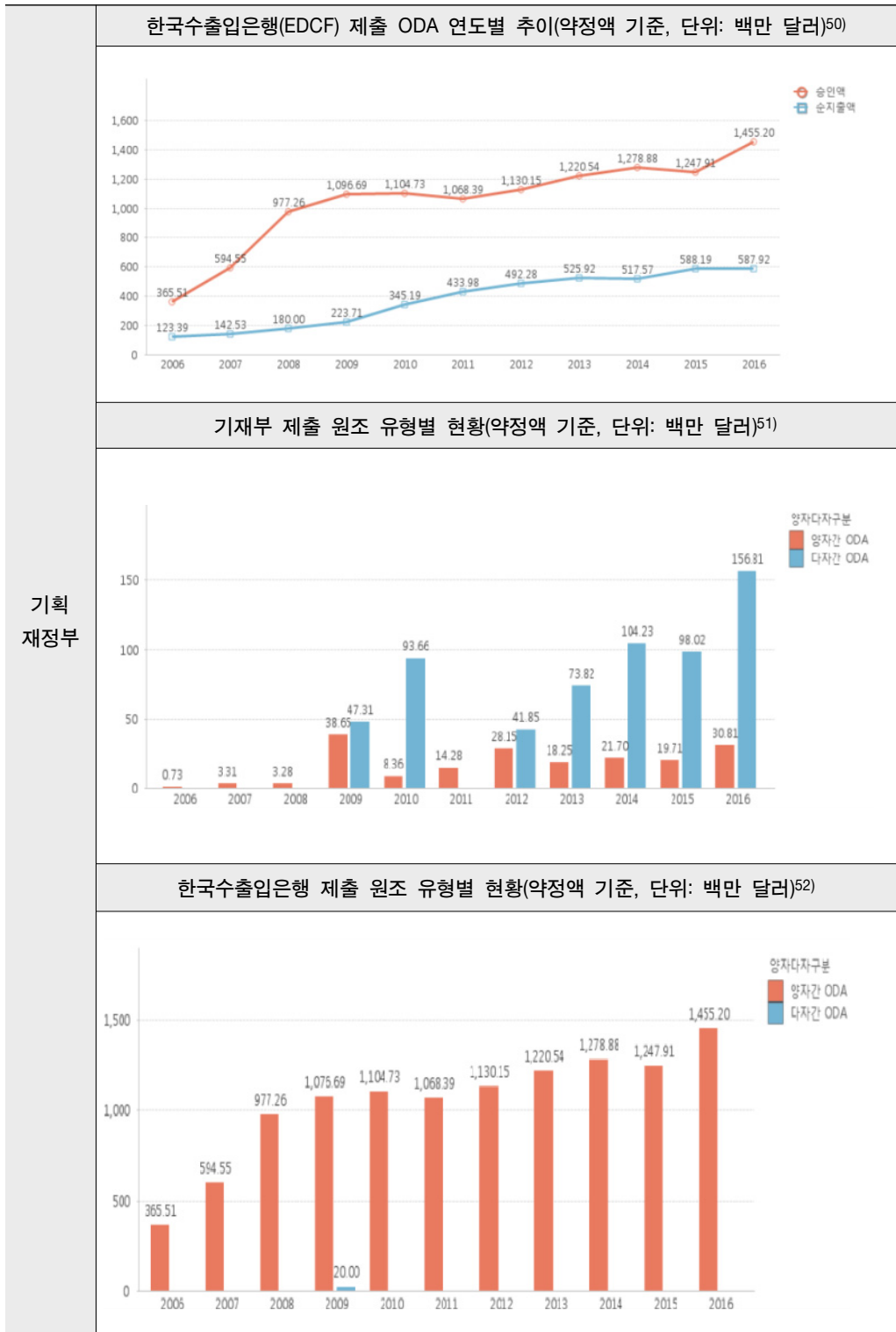
- 1986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공여실적(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 달러)⁴⁸⁾

1987년	2015년
공적개발원조: 23.50	공적개발원조: 1,915.39
- 양자간: 1.42	- 양자간: 1,531.14
- 다자간: 22.08	- 다자간: 384.25

기재부 제출 ODA 연도별 추이(약정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⁴⁹⁾





기획재정부	EDCF 최근 ODA 대표적 사업 및 유형 ⁵³⁾	
	프로젝트 사업	- 2014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3차) - 2014 이집트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사업 - 2015 니카라과 브로드밴드 구축사업(EDCF-IDB 협조융자 퍼실리티 기금 지원 사업) - 2015 교육정보화 2차사업 - 2016 캄보디아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 - 그 외 다수
	시설물 사업	- 2016 IT 파크 건립사업 - 2016 다레살람시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 2016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사업 - 2016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하천정비사업 - 2016 반테민체이 관개 개발 및 홍수 피해 저감 사업 - 2016 인도네시아 수자원 엔지니어링 사업 - 2016 전자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건립사업 - 2016 몽골 시외버스 교체사업 1,2차 - 2016 몽골 국제버스 교체사업 - 그 외 다수

1)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유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제1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유상 및 국제금융기구 관련 다자원조 주관기관⁵⁴⁾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

46)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2016. 4분기)』 http://mosf.go.kr/com/bbs/detailComtnbbs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51&menuNo=6050200&searchNttId=MOSF_000000000008416 (접속일: 2017.6.13.)

47) 기획재정부 『조직도』 http://www.mosf.go.kr/mi/orgnzt/org.do?bbsId=MOSFBBS_000000000097&menuNo=9040100 (접속일: 2017.6.12.)

48) 한국수출입은행, 『EDCF 통계보고서』 <https://www.edcfkorea.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4002004001> (접속일: 2017.6.13.)

49) ODA통계, <https://211.171.208.92/index.html> (접속일: 2017.6.14.)

50) ODA통계, 상동

51) ODA통계, 상동

52) ODA통계, 상동

53) 한국수출입은행, 『EDCF 통계보고서』, 상동

54) 행정자치부 국제행정협력관실, 2014, 『국제협력실무 매뉴얼』, 세종: 행정자치부, 87면.

를 통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여 유상협력 사업의 발굴, 집행 및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⁵⁵⁾ 이 때,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아 유상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시행기관’의 역할을 한다.⁵⁶⁾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민·관, 유·무상, 부차·기관 간 사업 발굴 및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 연계사업 확대 등 효율적인 유상협력 추진을 주관하고 있다.⁵⁷⁾

또한 지난 2015년 12월에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개정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는 시장재원과 정부재정을 조합하여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발금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⁵⁸⁾

〈표 14〉 기획재정부 관련 ODA 근거 법령⁵⁹⁾

기획재정부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행정규칙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 「대외경제협력기금 여유자금운용지침」 - 「대외경제협력기금 여유자금운용세칙」 -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외화자산운용관리에 관한 지침」

5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2017년 대한민국 ODA백서』. 세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41면.

5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앞의 책, 41면.

5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앞의 책, 41면.

58) 대외경제협력기금. 2015. 『2015 EDCF Annual Report』. 서울: 대외경제협력기금, 36면.

5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표 15〉 기획재정부 ODA 관련 법령 체계 분석⁶⁰⁾

부처	유형	기관별 법률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훈령 등등 유무)	사업운영기관
기획재정부	국제개발협력 관련 개별법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 기금의 설치/제7 조 기금의 용도 등)	「대외경제협력기 금법 시행령」(제1 조 목적 등)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 금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등)	
			「대외경제협력기 금 운용관리규정」 (제1조 목적/ 제8 조 지원업무의 종 류 등)	
			「대외경제협력기 금운용위원회 운 영세칙」(제1조 목 적 등)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 국제교류 및 협 력의 강화)	「국제개발협력기 본법 시행령」	
	해외진출, 국제교류 및 협력 관련 법령	없음	「경제발전경험 공 유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추진체계 등)	KDI, 한국수출입 은행, KDI 국제 정책대학원

〈표 16〉 기획재정부 ODA 관련 법령 근거 조문 및 내용⁶¹⁾

부처	법률	하위법령	근거조문 및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9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 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 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6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6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부처	법률	하위법령	근거조문 및 내용
기획재정부			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주관한다.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 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대외경제협력 기금법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며(동법 제3조), 기금은 1.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어음 할인, 채무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포함) 또는 출자 2.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3. 개도국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4. 그 밖에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동법 제7조).
		대외경제협력기금 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동규정 제1조)

부처	법률	하위법령	근거조문 및 내용
기획재정부			기금의 지원에 관하여 1. 경제개발사업의 실시 에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 2. 민자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 정부 또는 민자 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3. 개도국의 종합 또는 부문별 개발 계획 이행을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 개발사업 등의 실시상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에 대한 융자 등 총 17가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동규정 제8조).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 제3 조 제1호가 정하는 정책자문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동규정 제1조), 정책자 문사업의 유형에는 1. 중점지원사업, 2. 정책자 문관 현지파견사업, 3. 역량강화연수사업, 4. 일반 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동규정 제2조). 이 때, 기획재정부는 정책자문사업을 주관하 며, 총괄기획·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동규정 제3조 제1항).

한편, 기획재정부는 개발도상국 등의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지식 공유의 수요에 부합하고 인류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주관하고 있다.⁶²⁾ 동 사업은 현재 세 개의 기관이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이 국가정책 자문 사업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을,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⁶³⁾ 다만, 무상원조사업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에 대한 법적 근거는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명문 규정은 없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으나, 이 운영규정은 2015년 5월 4일에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제1호가 정하는 정책

6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http://ksp.kdi.re.kr/kr/ksp/organiz.jsp> (접속일: 2017.4.14.).

6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상동

자문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KSP 정책자문 사업 운영지침이 운영되고 있다.

〈표 17〉 KSP(무상원조사업) 법적 근거⁶⁴⁾

기획재정부	KSP(무상원조사업) 법적 근거	
	법률	- 없음
	행정규칙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2015.5.4. 실효) ⁶⁵⁾ - 「KSP 정책자문사업 운영지침」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윤리 지침」

2)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① 양자 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법 제9조제1항).
- ②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법 제7조제3항).

나)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①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②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하고(제9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제9조제2항).

6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6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 부칙 ② (존속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5월 4일까지로 한다.

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2015.5.4. 실효)

- 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국가와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제2조제1호).
- ② 경험공유사업의 종류는 정책자문사업, 발전경험정리(모듈화)사업, 공동자문사업, 그 밖에 경험공유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이다(제3조).⁶⁶⁾
- ③ 기획재정부는 경험공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제9조제1호), 사업총괄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재위탁 할 수 있다(제9조제2호).

3) 조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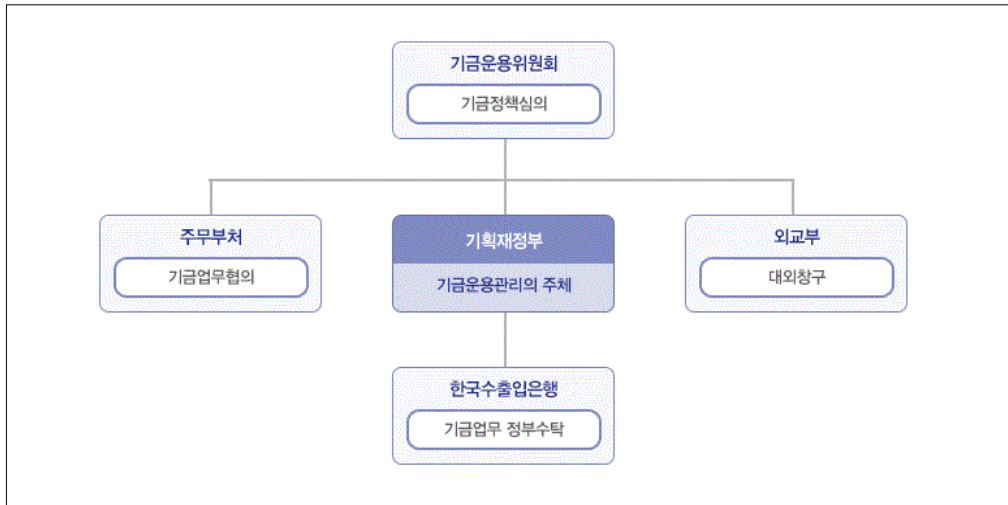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소관부처 중의 하나이며, 국제개발협력 상의 유상원조 주관기관이다(「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제1항).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담당조직은 부총리-국제금융협력국⁶⁷⁾-개발협력국에서 담당하고 있다(「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의2).

66) 「KSP 정책자문사업 운영지침」 제2조(사업유형) 정책자문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점지원사업: 다년간 협력대상국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사업)제안, 제안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기관의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EDCF 등 후속사업과 연계 지원), 정책담당자의 역량 배양 등을 단계적·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2. 정책자문관 현지파견사업: 협력대상국의 법·제도 설계와 기관 설립, 사업계획 수립 등 정책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사업
3. 역량강화연수사업: 협력대상국 정책담당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교육 등을 통해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사업
4. 일반지원사업: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사업

67)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금융협력에 관한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및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2).

〈그림 4〉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조직 및 체계⁶⁸⁾



기획재정부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2015.5.4. 실효) 제9조에 의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가정책자문 사업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을,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을 위탁받고 있다.⁶⁹⁾

다만, 위의 3기관을 명시하여 위탁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

라. 수행기관

1)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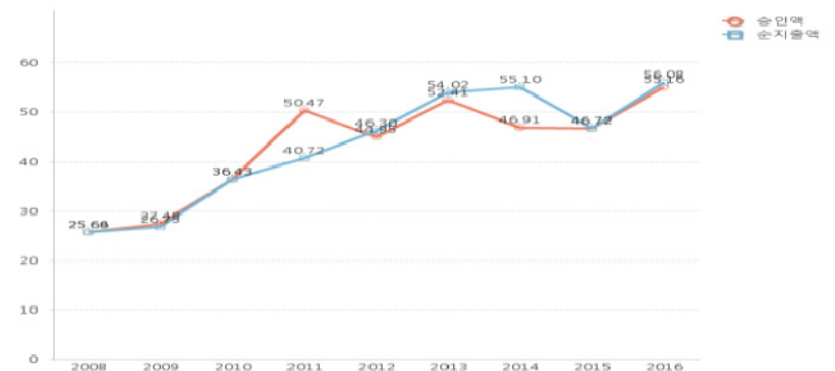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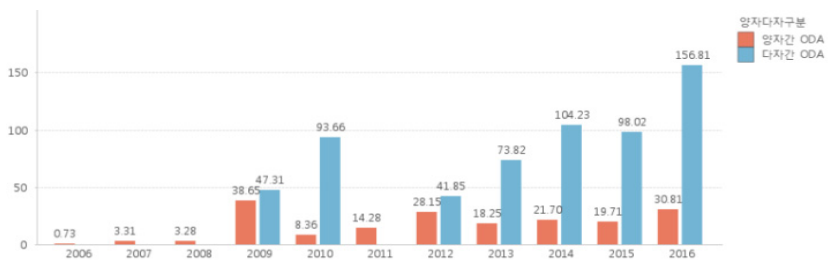
〈표 18〉 교육부 ODA 관련 개관

	부서명	부서 인원	실무담당 인원
교육부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32명	1명
	교육안전정보국 이러닝과	11명	1명

68) 대외경제협력기금. 『기금 관리체계』. <http://211.171.208.43/edcf/intro/outline/system.jsp> (접속일: 2017.4.14.).

69)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http://ksp.kdi.re.kr/kr/ksp/organiz.jsp> (접속일: 2017.4.14.).

교육부

2017년 ODA관련 예산(단위: 천 원, 1\$) ⁷⁰⁾																																					
교육 지원	- 글로벌 교육지원사업(ODA):4,241,000 - UNESCO 저개발국 교육지원(ODA): 7,496,000 \$4,249,565																																				
기타	-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59,230,000 - 이러닝 세계화(ODA):4,469,000																																				
ODA 시행 법적 근거																																					
- 1998년 교육기본법																																					
교육부 제출 ODA 연도별 추이(약정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⁷¹⁾																																					
 <table><caption>교육부 제출 ODA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caption><thead><tr><th>연도</th><th>약정액 (Commitment)</th><th>순지출액 (Disbursement)</th></tr></thead><tbody><tr><td>2008</td><td>25.66</td><td>25.66</td></tr><tr><td>2009</td><td>26.44</td><td>26.44</td></tr><tr><td>2010</td><td>36.23</td><td>36.23</td></tr><tr><td>2011</td><td>50.47</td><td>40.73</td></tr><tr><td>2012</td><td>45.30</td><td>45.30</td></tr><tr><td>2013</td><td>51.02</td><td>51.02</td></tr><tr><td>2014</td><td>40.91</td><td>55.10</td></tr><tr><td>2015</td><td>46.72</td><td>46.72</td></tr><tr><td>2016</td><td>56.08</td><td>56.08</td></tr></tbody></table>		연도	약정액 (Commitment)	순지출액 (Disbursement)	2008	25.66	25.66	2009	26.44	26.44	2010	36.23	36.23	2011	50.47	40.73	2012	45.30	45.30	2013	51.02	51.02	2014	40.91	55.10	2015	46.72	46.72	2016	56.08	56.08						
연도	약정액 (Commitment)	순지출액 (Disbursement)																																			
2008	25.66	25.66																																			
2009	26.44	26.44																																			
2010	36.23	36.23																																			
2011	50.47	40.73																																			
2012	45.30	45.30																																			
2013	51.02	51.02																																			
2014	40.91	55.10																																			
2015	46.72	46.72																																			
2016	56.08	56.08																																			
교육부 제출 원조 유형별 현황(약정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⁷²⁾																																					
 <table><caption>교육부 제출 원조 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caption><thead><tr><th>연도</th><th>양자간 ODA (Bilateral)</th><th>다자간 ODA (Multilateral)</th></tr></thead><tbody><tr><td>2006</td><td>0.73</td><td>0.73</td></tr><tr><td>2007</td><td>3.31</td><td>3.31</td></tr><tr><td>2008</td><td>3.28</td><td>3.28</td></tr><tr><td>2009</td><td>38.65</td><td>47.31</td></tr><tr><td>2010</td><td>8.36</td><td>93.66</td></tr><tr><td>2011</td><td>14.28</td><td>14.28</td></tr><tr><td>2012</td><td>28.15</td><td>41.85</td></tr><tr><td>2013</td><td>18.25</td><td>73.82</td></tr><tr><td>2014</td><td>21.70</td><td>104.23</td></tr><tr><td>2015</td><td>19.71</td><td>98.02</td></tr><tr><td>2016</td><td>30.81</td><td>156.81</td></tr></tbody></table>		연도	양자간 ODA (Bilateral)	다자간 ODA (Multilateral)	2006	0.73	0.73	2007	3.31	3.31	2008	3.28	3.28	2009	38.65	47.31	2010	8.36	93.66	2011	14.28	14.28	2012	28.15	41.85	2013	18.25	73.82	2014	21.70	104.23	2015	19.71	98.02	2016	30.81	156.81
연도	양자간 ODA (Bilateral)	다자간 ODA (Multilateral)																																			
2006	0.73	0.73																																			
2007	3.31	3.31																																			
2008	3.28	3.28																																			
2009	38.65	47.31																																			
2010	8.36	93.66																																			
2011	14.28	14.28																																			
2012	28.15	41.85																																			
2013	18.25	73.82																																			
2014	21.70	104.23																																			
2015	19.71	98.02																																			
2016	30.81	156.81																																			
최근 3개년 ODA사업 경험 및 유형 ⁷³⁾																																					
글로벌 교육지원사업	- 2015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육글로벌화 지원 - 2017년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사교류지원																																				
UNESCO 저개발국 교육지원	- 2016년 UNESCO 저개발국 교육지원: UNESCO UNITWIN 사업, 아프리카 희망브릿지 사업 - 2017년 UNESCO 저개발국 교육지원: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 교육지원, UNESCO UNITWIN사업, 아프리카 희망브릿지 사업																																				
기타	-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교육개발협력팀): 교육부, 정부, 국내대학 공동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 - 교육ODA 국제컨퍼런스 개최: 2014, 2015, 2016(총 3회)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교육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교육부 개별 법률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국제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교육부 소관의 개별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19〉 교육부 관련 ODA 근거 법령⁷⁵⁾

교육부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행정규칙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표 20〉 교육부 ODA 관련 법령 체계 분석⁷⁶⁾

부처	유형	기관별 법률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 훈령 등등 유무)	사업운영기관
교육부	국제개발협력 관련 개별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 제8호(정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해외진출, 국제교류 및 협력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제29조(국제교육))		
		· 「인적자원개발기본법」(제5조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 「과학교육진흥법」(제8조 국제협력)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국제협력)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국내외 교류협력)		

7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7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부처	유형	기관별 법률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 훈령 등등 유무)	사업운영기관
교육부	해외진출, 국제교류 및 협력 관련 법령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국제협력)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제4조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제25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제6조 사업)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연구재단법」(제5조 사업)		한국연구재단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제7조 직무)	국립국제교육원

예컨대, 「교육기본법」 제29조에서는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9조와 관련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없으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을 가지고 있다.

〈표 21〉 교육기본법상의 국제교육 조문⁷⁷⁾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기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undefined> (접속일: 2017.4.14.).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 제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국제교육지원부장의 업무 중에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지원 등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이 업무 규정이 있다(제9조제7호).

〈표 22〉 교육부 ODA 관련 법령 근거 조문 및 내용⁷⁸⁾

부처	법률	하위법령	근거조문 및 내용
교육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는 바(동법 제5조제1항), 기본계획에는 9.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촉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교육진흥법」		제8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 교육·훈련 기관, 과학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7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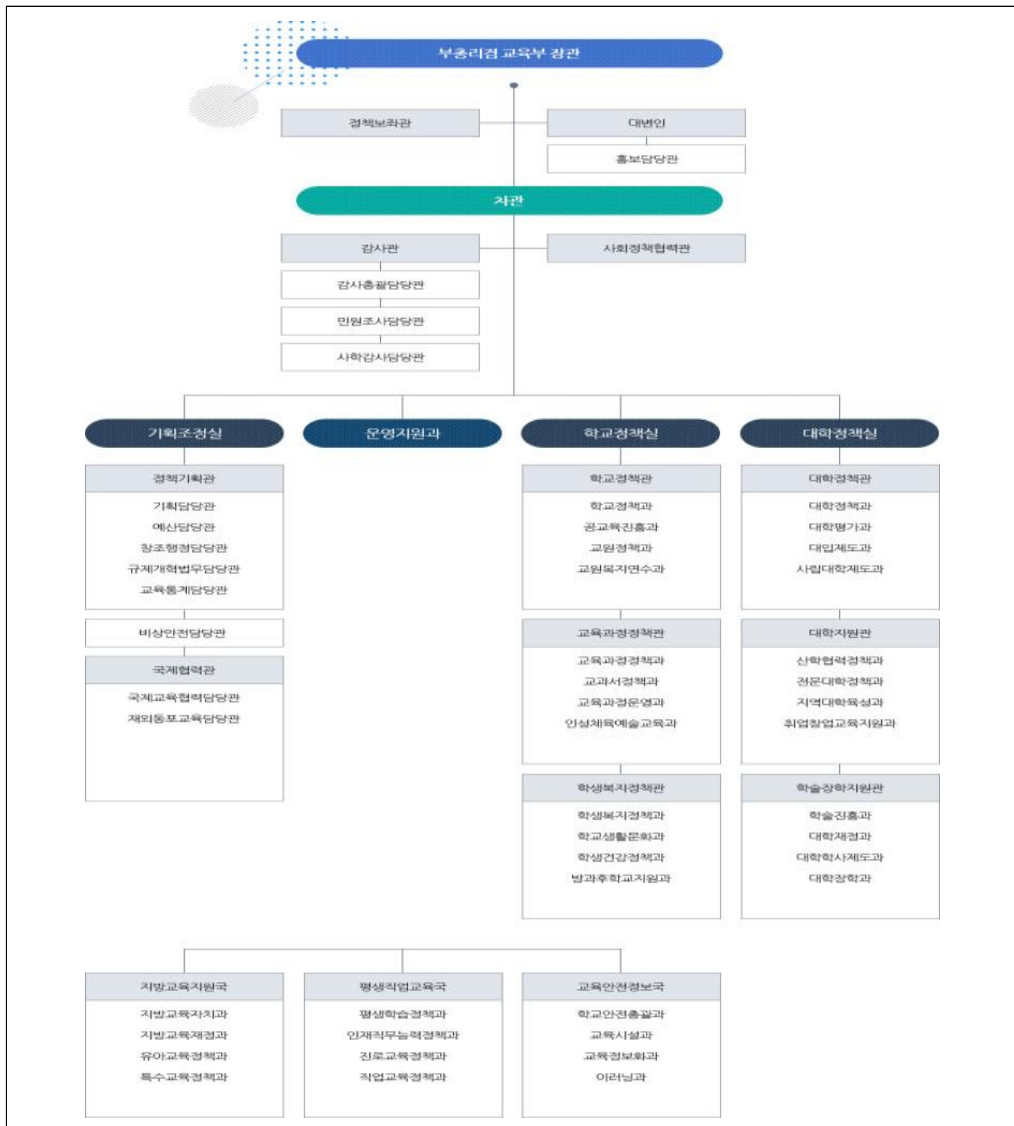
부처	법률	하위법령	근거조문 및 내용
교육부			2. 과학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과학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그 밖에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 기관·훈련기관·산업연구기관·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 참가 4.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제협력)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의 교류·연수, 특수외국어 관련 교재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교육·연구기관 등과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1. 유네스코 2.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3. 유네스코 회원국의 정부와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한 국가위원회 4.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단체 5.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단체 등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동법 제4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國際理解教育)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하며(동법 제25조제1항), 아태교육원은 1. 국제이해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지역적 역량 강화사업 2. 국제이해교육에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국제적 교류 협력 촉진사업 3.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사업 4. 국제이해교육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의 운영사업 5. 국제이해교육 교육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보급 사업 6. 그 밖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동법 제25조제4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조사·수집

부처	법률	하위법령	근거조문 및 내용
교육부	「한국연구재단법」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운영 3.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4.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자료의 연구·개발·발굴 및 보급 5. 각 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6. 각 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 지원 7. 원격교육·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8. 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2.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3.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 개발 지원 5.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6.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 협력 지원 7.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직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외국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유치·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외국어 공교육 지원

다) 조직 체계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교육부에는 국제개발협력 조직에 관한 직제 규정은 없고, 국제협력 관련 직제를 가지고 있다. 즉, 국제협력 관련 담당조직은 교육부장관-기획조정실-국제협력관-국제교육협력담당관⁷⁹⁾에서 담당하고 있다(「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제10항제2호).

〈그림 5〉 교육부 조직⁸⁰⁾



79)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제 교육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부 소관 국제협력 총괄
3.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지원
4. 교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5. 교육약정·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육교류 사업 및 외국과의 교육협력 추진
6.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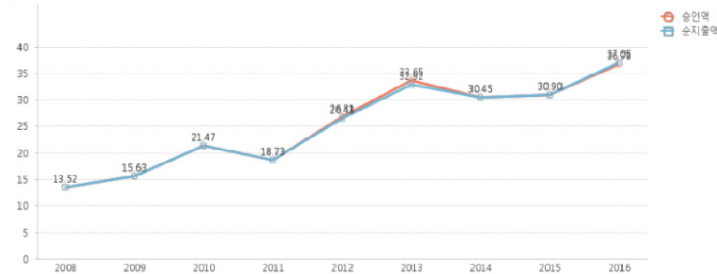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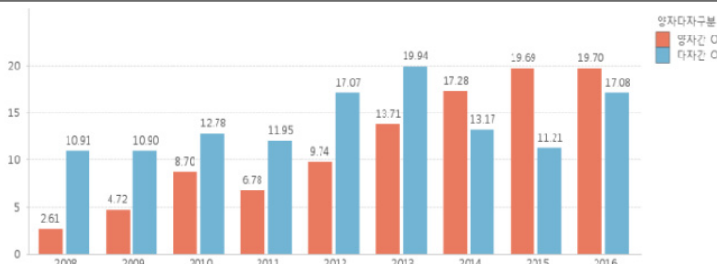
80) 교육부. 『조직도·직원 및 연락처』. http://www.moe.go.kr/sub/info.do?_page=0604&m=0604&s=moe (접속일: 2017.6.12.).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 제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에서 국제교육지원부장의 업무 중에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지원 등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이 업무 규정으로 되어 있다(제9조제7호).

2) 보건복지부

〈표 23〉 보건복지부 ODA 관련 개관

보건
복지부

부서명	부서 인원	실무담당 인원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10명	2명																														
2017년 ODA관련 예산 ⁸¹⁾																																
-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ODA): 35억 원 - 국제백신연구소지원(ODA): 61억 원																																
ODA 시행 법적 근거																																
- 2005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보건복지부 제출 ODA 연도별 추이(약정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⁸²⁾																																
 <table><caption>보건복지부 제출 ODA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caption><thead><tr><th>연도</th><th>ODA 약정액</th><th>ODA 실적액</th></tr></thead><tbody><tr><td>2008</td><td>13.52</td><td>13.52</td></tr><tr><td>2009</td><td>15.63</td><td>15.63</td></tr><tr><td>2010</td><td>21.47</td><td>21.47</td></tr><tr><td>2011</td><td>18.73</td><td>18.73</td></tr><tr><td>2012</td><td>26.83</td><td>26.83</td></tr><tr><td>2013</td><td>33.65</td><td>33.65</td></tr><tr><td>2014</td><td>30.43</td><td>30.43</td></tr><tr><td>2015</td><td>30.99</td><td>30.99</td></tr><tr><td>2016</td><td>36.09</td><td>36.09</td></tr></tbody></table>			연도	ODA 약정액	ODA 실적액	2008	13.52	13.52	2009	15.63	15.63	2010	21.47	21.47	2011	18.73	18.73	2012	26.83	26.83	2013	33.65	33.65	2014	30.43	30.43	2015	30.99	30.99	2016	36.09	36.09
연도	ODA 약정액	ODA 실적액																														
2008	13.52	13.52																														
2009	15.63	15.63																														
2010	21.47	21.47																														
2011	18.73	18.73																														
2012	26.83	26.83																														
2013	33.65	33.65																														
2014	30.43	30.43																														
2015	30.99	30.99																														
2016	36.09	36.09																														
보건복지부 제출 원조 유형별 현황(약정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⁸³⁾																																
 <table><caption>보건복지부 제출 원조 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caption><thead><tr><th>연도</th><th>ODA 실적액</th><th>ODA약정액</th></tr></thead><tbody><tr><td>2008</td><td>2.61</td><td>10.91</td></tr><tr><td>2009</td><td>4.72</td><td>10.90</td></tr><tr><td>2010</td><td>8.70</td><td>12.78</td></tr><tr><td>2011</td><td>6.78</td><td>11.95</td></tr><tr><td>2012</td><td>9.74</td><td>17.07</td></tr><tr><td>2013</td><td>13.71</td><td>19.94</td></tr><tr><td>2014</td><td>13.17</td><td>17.28</td></tr><tr><td>2015</td><td>11.21</td><td>19.68</td></tr><tr><td>2016</td><td>17.08</td><td>19.70</td></tr></tbody></table>			연도	ODA 실적액	ODA약정액	2008	2.61	10.91	2009	4.72	10.90	2010	8.70	12.78	2011	6.78	11.95	2012	9.74	17.07	2013	13.71	19.94	2014	13.17	17.28	2015	11.21	19.68	2016	17.08	19.70
연도	ODA 실적액	ODA약정액																														
2008	2.61	10.91																														
2009	4.72	10.90																														
2010	8.70	12.78																														
2011	6.78	11.95																														
2012	9.74	17.07																														
2013	13.71	19.94																														
2014	13.17	17.28																														
2015	11.21	19.68																														
2016	17.08	19.70																														
최근 3개년 ODA사업 경험 및 유형 ⁸⁴⁾																																
- 2017년 복지 분야 초청연수사업: 몽골 고용사회보장부, 에티오피아, 우간다 - 보건 분야 ODA 사업 협력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의 협업 및 사업 감독 - 2015년 네팔지진피해 지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추가파견 및 50만 불 규모 현물지원 실시 - 2014 사우디의료진 연수사업																																

81) 보건복지부,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http://www.mohw.go.kr/front_new/jb/



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3&CONT_SEQ=337861&page=1 (접속일: 2017.6.12.).

82) ODA통계, <https://211.171.208.92/index.html> (접속일: 2017.6.14.).

83) ODA통계. 상동

8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접속일: 2017.06.12.)

85) 보건복지부, 『조직도』, http://www.mohw.go.kr/front_new/sg/ssg0101mn.jsp?PARMENU_ID=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표 24〉 보건복지부 관련 ODA 근거 법령⁸⁶⁾

보건 복지부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시행령
	행정규칙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제규정」

특히, 보건복지부와 관련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과 관련하여 제7조 재단의 사업에서 재단은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 홍보 및 그 밖의 부대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법 제1조 목적 조항에 의하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ODA와 관련하여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05&MENU_ID=050201 (접속일: 2017.6.12.).

8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표 25〉 보건복지부 ODA 관련 법령 체계 분석⁸⁷⁾

부처	유형	기관별 법률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 훈령 등등 유무)	사업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국제개발협력 관련 개별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 국제교류 및 협 력의 강화)	「국제개발협력기본 법 시행령」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법」(제7조 재단의 사업)		한국국제보 건의료재단 (KOFIH)
	해외진출, 국제교류 및 협력 관련 법령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9조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진출 촉진)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 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 률」(제23조 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 「보건의료기본법」(제50 조 국제협력 등)		
		· 「저 출산·고령사회기본 법」(제31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 동 지원)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 진법」(제7조 국제협력)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재단의 사업)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업 규정을 두고 있다.

8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표 26〉 보건복지부 ODA 관련 법령 근거 조문 및 내용⁸⁸⁾

부처	법률	하위법령	근거조문 및 내용
보건복지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 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 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 나.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의 지원 다. 보건의료 인력의 초청 및 연수 라.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마.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바. 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사. 그 밖에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 이하 생략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① 국가는 병원체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병원체자원의 연구·개발 또는 활용 등의

8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부처	법률	하위법령	근거조문 및 내용
보건복지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해외 병원체자원을 수집하고 병원체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0조(국제협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건의료정보와 보건의료에 관한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저 출산·고령 사회기본법」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7조(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조직 체계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국제개발협력 조직에 관한 직제 규정은 없고, 국제협력 관련 직제를 가지고 있다. 즉, 국제협력 관련 담당조직은 보건복지부장관-기획조정실장-국제협력관-국제협력담당관⁸⁹⁾에서 담당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0항).

89)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복지분야의 외국정부와의 협력
3.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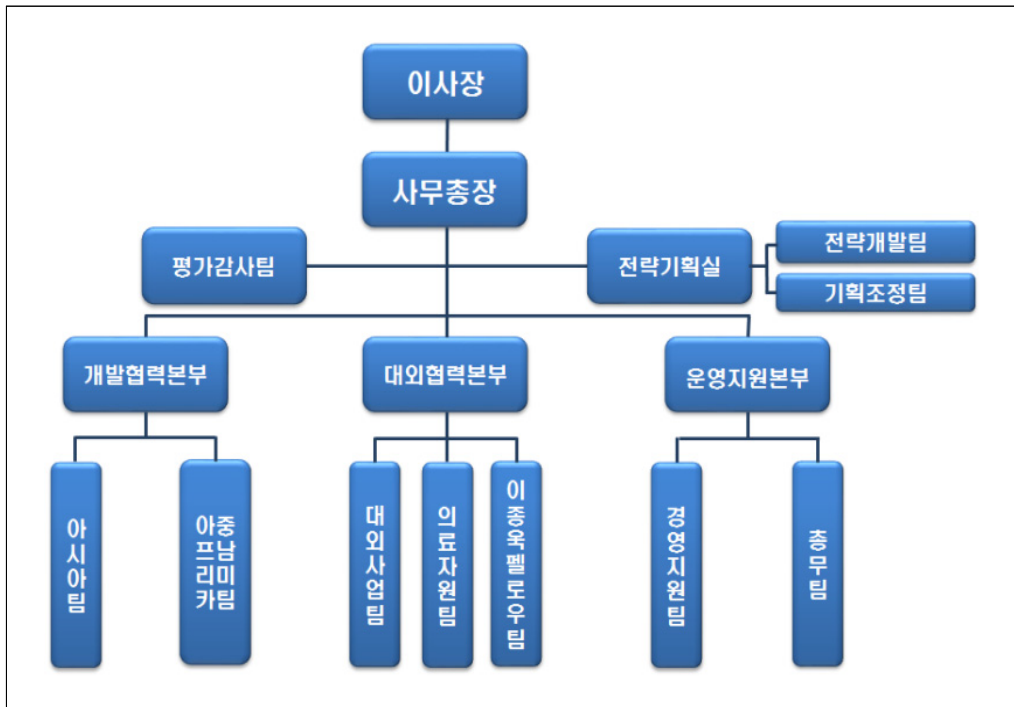
〈그림 6〉 보건복지부 조직도⁹⁰⁾



90) 보건복지부. 『조식도』. http://www.mohw.go.kr/front_new/sg/ssg0101mn.jsp? PAR_MENU_ID=05&MENU_ID=050201 (접속일: 2017.6.1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정관』 제2조). 이 재단에서는 정부 등 대내외 업무협약(국가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 및 지역 사업개발, 수행 및 전략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 분장을 하고 있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제규정』 <별표 3> 부서별 업무분장표).

〈그림 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조직도⁹¹⁾



9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제규정”, 【별표 1】 조직도. <http://www.kofih.org/overview/bylaws/regulations/?uid=1478&mod=document> (접속일: 2017.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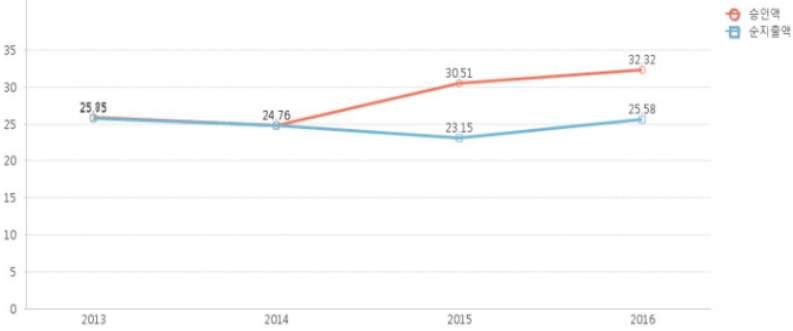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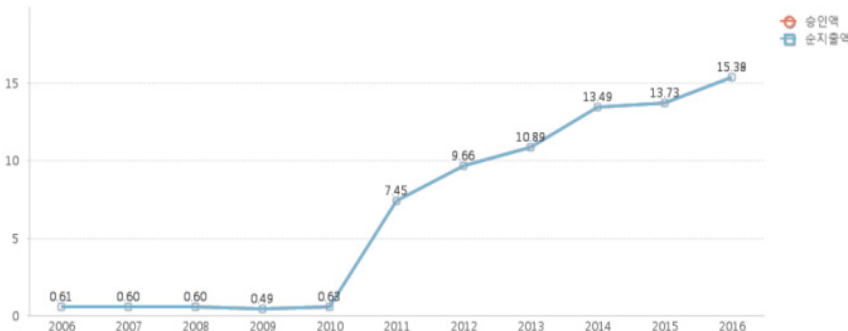
〈표 2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제규정」 9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제규정」 【별표 3】 부서별 업무분장표	
개발협력본부	
부서명	분 장 업 무
아시아팀	1. 정부 등 대내외 업무협의(국가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 2. 아시아 지역 사업개발, 수행 및 전략 이행에 관한 사항 3. 아시아 지역 유무상 연계 사업 개발 및 수행에 관한 사항 4. 아시아 지역 해외사무소 관리 및 사업 이행에 관한 사항 5. 전문가, 국내외기구 네트워크 운영 6. 본부 내 타 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아프리카 · 중남미팀	1.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사업개발, 수행 및 전략 이행에 관한 사항 2.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유무상 연계 사업 개발 및 수행에 관한 사항 3.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해외사무소 관리 및 사업 이행에 관한 사항 4. 전문가, 국내외기구 네트워크 운영
대외협력본부	
부서명	분 장 업 무
대외 사업팀	1. 정부 등 대내외 업무협의 2.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사업개발, 수행 및 전략 이행에 관한 사항 3. 해외긴급구호 및 구호의료인력 교육훈련 수행에 관한 사항 4. NGO, 기업, 대학 등과의 민관협력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5. 전문가, 국내외기구 네트워크 운영 6. 본부 내 타 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의료 자원팀	1. 의료기기 분야 기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기·의약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의약품 등 물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의료자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전문가, 국내외기구 네트워크 운영
이중육 펠로우팀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이중육 펠로우십 등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공기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가, 국내외기구 네트워크 운영

9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제규정”, 【별표 1】 조직도, 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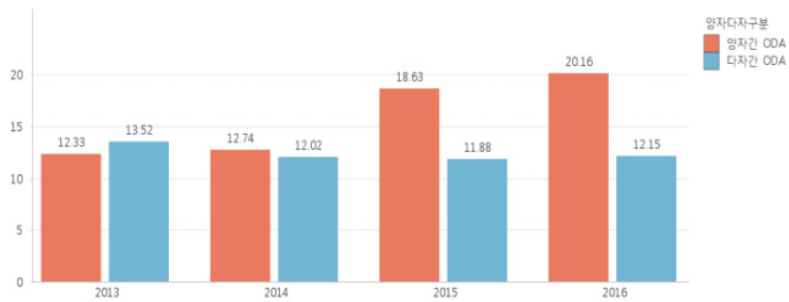
3) 농림축산식품부

〈표 28〉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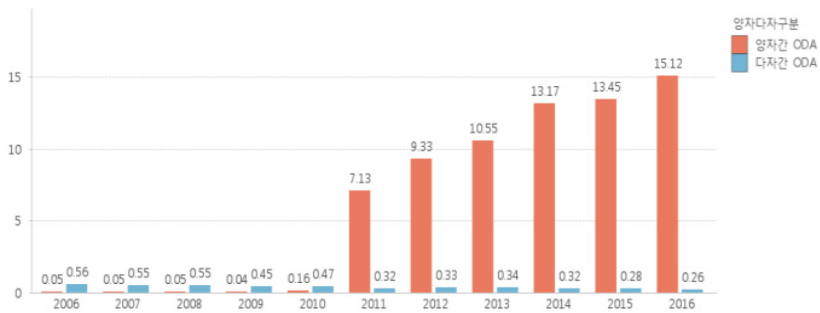
농림축산 식품부	부서명	부서 인원	실무담당 인원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19명	2명
	2016년 ODA관련 예산(단위: 천 원) ⁹³⁾		
	- 국제농업협력(ODA):15,610,000 - 국제기구분담금(ODA):14,384,000 - 동식물검역검사(ODA):348,000 - 농산물안전성조사(ODA):69,000 -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ODA):419,000		
	ODA 시행 법적 근거		
	- 2012년 해외농업개발협력법 - 2015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ODA 연도별 추이(약정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⁹⁴⁾		
			
	농촌진흥청 제출 ODA 연도별 추이(약정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⁹⁵⁾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원조 유형별 현황(약정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⁹⁶⁾		

93)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목명세서』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원조 유형별 현황(약정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⁹⁷⁾



최근 3개년 ODA사업 경험 및 유형⁹⁸⁾

- 2011~2013년 카메룬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 2011~2013년 라오스에 한국의 식물검역기술 전수
- 2013년 모잠비크 영농기술 교육시스템 구축사업
- 2014년 FAO 국제식물보호협약 아·태지역 국제워크숍 개최
- 2014~2015년 우간다 낙농개발사업
- 2014~2017년 미얀마 식물검역관 초청 검역기술 전수
- 2015년 농림 분야 초청연수
- 2015년 국제농업협력사업
- 2015년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전수
- 2015년 베트남 가축질병진단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업

http://www.mafra.go.kr/list.jsp?id=31665&pageNo=1&NOW_YEAR=2015&group_id=4&menu_id=72&link_menu_id=&division=B&board_kind=C&board_skin_id=C1&parent_code=71&link_url=&depth=2 (접속일: 2017.6.12.).

94) ODA 통계, <https://211.171.208.92/index.html> (접속일: 2017.6.14.).

95) ODA 통계. 상동

96) ODA 통계. 상동

97) ODA 통계. 상동

98)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afra.go.kr/search/totalSearch.jsp> (접속일: 2017.6.12.).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정의)제7호·제8호와 이 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법」에 근거하고,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중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제9장(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 운영) 및 제10장(해외연구보조원 파견)의 기존 규정을 따로 분리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3.9.24.에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제2항에서는 정부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표 29〉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ODA 근거 법령¹⁰⁰⁾

농림축산 식품부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농촌진흥법 및 시행규칙」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법률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10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외식산업진흥법」, 「종자산업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국제교류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는 “국제농업협력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외국의 농업·농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해외농업자원개발과 연계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업 관련 국제기구(비정부 간 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외국의 농업·농촌지역 개발 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이 법 제2조(정의)제7호 및 시행령 제2조제6호). 그리고 “국제산림협력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의 임업·산촌지역 개발과 산림환경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해외산림자원개발과 연계된 임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산림환경기능 증진 사업, 산림 관련 국제기구(비정부 간 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산림의 조성, 이용, 관리 등 임업 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이 법 제2조(정의)제8호 및 시행령 제2조제7호).

「농촌진흥법」 제23조에서는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이 법 제23조 제1항). 그리고 농촌진흥청장은 다수 국가와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여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이 법 제23조제2항). 이때 농촌진흥청장은 외국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들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협력사업의 운영이나 국제협력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약정(협력사업 또는 국제협력협의체 구성의 목적, 협력 분야와 구성원 역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을 체결하여야 한다(이 법 시행령 제9조).

또한 「농촌진흥법」에 근거한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서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 이하 “KOPIA 사업”이라 한다.)”이란 맞춤형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이하 “주재국”이라 한다.)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지도 및 훈련사업 등을 말한다(이 운영규정 제2조제1호).

농촌진흥청장은 KOPIA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KOPIA 사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해외농업자원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농업관련 글로벌 인력양성 지원, 그 밖에 KOPIA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해외농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운영규정 제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제2항에서는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30〉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법령 근거 조문 및 내용¹⁰¹⁾

부처	법률	하위법령	근거조문 및 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 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 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1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부처	법률	하위법령	근거조문 및 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2. 외국 농업·농촌지역 개발 사업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정보·기술·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4.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 4의2. 농업 분야 관련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이행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산림청장은 외국과의 산림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외국 임업·산촌지역 개발 사업 3.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정보·기술·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4. 국제산림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 5. 산림 분야 관련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이행 6.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

부처	법률	하위법령	근거조문 및 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계의 농업·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촌진흥법」		제22조(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수 국가와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여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농업기술 연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외국과의 협력 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농업 관련자를 선발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들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협력사업의 운영이나 국제협력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약정에는 협력사업 또는 국제협력협의체 구성의 목적, 협력 분야와 구성원 역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제9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

부처	법률	하위법령	근거조문 및 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지원에 관한 법률」		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농림수산물 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농림수산물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농림수산물과학기술 국제 공동 연구 2. 농림수산물과학기술 관련 정보 및 기술 개발 교류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수산생명 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① 정부는 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2.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개발에 따르는 외국 및 국제조직 등과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처	법률	하위법령	근거조문 및 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③ 정부는 농수산물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체험 활동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외식산업진흥법」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식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참가 3. 외식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부처	법률	하위법령	근거조문 및 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4. 외식산업 수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자산업법」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농어업 활동이나 자재 교역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해외 농수산물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농수산물생명자원 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농수산물생명자원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3. 그 밖에 농수산물생명자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부처	법률	하위법령	근거조문 및 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외국 농업·농촌지역 개발 사업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정보·기술·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4.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 4의2. 농업 분야 관련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이행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산림청장은 외국과의 산림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외국 임업·산촌지역 개발 사업 3.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정보·기술·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4. 국제산림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 5. 산림 분야 관련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이행 6.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조직 체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협력국에서 국제개발협력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제3항)¹⁰²⁾.

농업진흥청은 국제개발협력업무(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Korean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사업 포함)를 수행을 기술협력국에서 수행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2항).¹⁰³⁾ 특히 기술협력국 구성 중

102) ③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농업분야 국제협력정책의 총괄
2. 삭제 <2015.1.6.>
3. 국제 농업 관련 단체 및 농업 관련 해외 주재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1.6.>
5. 농업통상기획에 관한 사항
6.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과의 농업협력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1.6.>
8. 삭제 <2015.5.26.>
9. 개별국가와의 농업협력 및 농업통상현안에 관한 사항
- 9의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관한 사항
- 9의3. 글로벌농업협력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
10.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국제기구, 지역농업기구, 국제구호단체, 외국정부, 국제민간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무상원조시행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13.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업분야 무상원조 추진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4. 주요국의 농업정책 및 통상정책 정보수집·분석 및 배포
15.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농림 분야 운용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16. 해외농업개발 중장기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17.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신고·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8.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9.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3)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13.9.9., 2015.1.6.>

1.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2.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와의 협력사업
3. 국외농업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전문가 국외 파견에 관한 사항
4.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5. 국외농업 및 북한농업동향 등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분석
6.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국외전문가의 활용지원
7. 삭제 <2009.8.25.>
8. 농업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9. 주요 연구개발·보급사업의 경영분석 및 품목별 국제 경쟁력 분석
10.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성과의 경제성 분석
11.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12. 농업경영체의 소득조사·분석 및 농장경영관리기법 개발 등 경영·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2.5.23.>
14. 삭제 <2012.5.23.>

국외농업기술과장이 국제개발협력업무(KOPIA 사업 포함)에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4항).¹⁰⁴⁾

그리고 산림청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산림협력관 중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제개발협력업무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제3항).¹⁰⁵⁾

4) 산업통상자원부

〈표 31〉 산업통상자원부 ODA 관련 개관

산업통상 자원부	부서명	부서 인원	실무담당 인원
	기술규제협력과	6명	1명
	ODA 시행 법적 근거		
	- 1986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2013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		

15. 삭제 <2012.5.23.>

16. 삭제 <2012.5.23.>

17. 삭제 <2012.5.23.>

18. 국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 평가

19. 외국과의 권역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20. 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21. 농촌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2. 농산업 수출 기술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 수출 유망 농업기술 실용화 및 기반조성 지원

24. 농산물 및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보급 지원

104) ④ 국외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국외농업개발 기술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2. 농업계 대학생 등의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 및 개발도상국 대상 해외파견 운영

3. 개발도상국과의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체계 등의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

4. 개발도상국과의 기술지원 교류

5. 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105)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산림분야 국제협약·국제기구 협상 총괄

2. 국제산림협력 정책·협정과 국내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3. 산림분야 국제기구·다자간 협정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4. 산림분야 국제기구 협상·협력 및 국제 산림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5.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후속조치 및 창원이니셔티브 이행에 관한 업무

6.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7. 산림분야 국제협약·국제기구의 부담금 및 국제기구 인력파견 조정·총괄

8.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ODA 연도별 추이(약정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¹⁰⁶⁾																
<table border="1"><caption>ODA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caption><thead><tr><th>연도</th><th>총인액</th><th>순지출액</th></tr></thead><tbody><tr><td>2013</td><td>9.87</td><td>7.04</td></tr><tr><td>2014</td><td>14.11</td><td>14.11</td></tr><tr><td>2015</td><td>15.18</td><td>15.18</td></tr><tr><td>2016</td><td>14.49</td><td>14.49</td></tr></tbody></table>		연도	총인액	순지출액	2013	9.87	7.04	2014	14.11	14.11	2015	15.18	15.18	2016	14.49	14.49
연도	총인액	순지출액														
2013	9.87	7.04														
2014	14.11	14.11														
2015	15.18	15.18														
2016	14.49	14.49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원조 유형별 현황(약정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¹⁰⁷⁾																
<table border="1"><caption>원조 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caption><thead><tr><th>연도</th><th>원자다자구분</th><th>차자간 ODA</th></tr></thead><tbody><tr><td>2013</td><td>5.88</td><td>1.16</td></tr><tr><td>2014</td><td>12.90</td><td>1.21</td></tr><tr><td>2015</td><td>14.11</td><td>1.07</td></tr><tr><td>2016</td><td>13.65</td><td>1.28</td></tr></tbody></table>		연도	원자다자구분	차자간 ODA	2013	5.88	1.16	2014	12.90	1.21	2015	14.11	1.07	2016	13.65	1.28
연도	원자다자구분	차자간 ODA														
2013	5.88	1.16														
2014	12.90	1.21														
2015	14.11	1.07														
2016	13.65	1.28														
2017년 ODA관련 예산(단위: 백만 원) ¹⁰⁸⁾																
통상협력국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11,894															
산업정책관	-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ODA): 1,369 -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 2,376															
소재부품산업정책관	-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ODA): 68															
국가기술표준원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사업(ODA): 1,200															
전력기술기반확충	-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7,700															
최근 3개년 ODA사업 경험 및 유형 ¹⁰⁹⁾																
- 2013년 한국형 테크노파크, 한-베트남 인큐베이터 파크 착공 - 2015년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 초청연수 - 2016, 2017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 2017년도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106) ODA통계, <https://211.171.208.92/index.html> (접속일: 2017.6.14.).

107) ODA통계. 상동

108)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http://www.motie.go.kr/motie/ms/mg/budgeting/bbs/bbsView.do?bbs_cd_n=24&bbs_seq_n=37 (접속일: 2017.6.13.).

109)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tie.go.kr/www/main.do> (접속일: 2017.06.12.).



110)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조직안내』, <http://www.motie.go.kr/motie/mi/on/institution/organizationUser/institutionView.do> (접속일: 2017.6.12.).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제12호 및 시행규칙 제9조제7항29호,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등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제12조(엔지니어링 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및 이 법 시행령 제2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32〉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ODA 근거 법령¹¹¹⁾

산업통상 자원부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행정규칙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상의 사업의 범위에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앞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이 규정되어 있다.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협력개발지원사업”이란 우리나라의 산업화 경험, 기술, 인프라 등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국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개발협력을 지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산업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간 산업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이 운영요령 제2조제1호).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통상협력 개발지원 사업에는 협력개발지원 사업 발굴 및 기획 사업, 프로젝트 사업, 산업기술협력 사업, 개발컨설팅 사업, 전문 인력의 파견 사업, 초청연수 사업, 민간단체(기업 포함)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사업, 그 밖에 협력개발지원사업의

1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장관이 정하는 사업이 포함된다(이 운영요령 제3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법 제16조에서는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등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직 체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규제대응국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훈련 지원업무를 분장하고 있고(『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2호), 그리고 산업정책실 중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은 에너지·산업 부문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7항29호).

5) 인사혁신처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인사혁신처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표 33〉 인사혁신처 관련 ODA 근거 법령¹¹²⁾

인사 혁신처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행정규칙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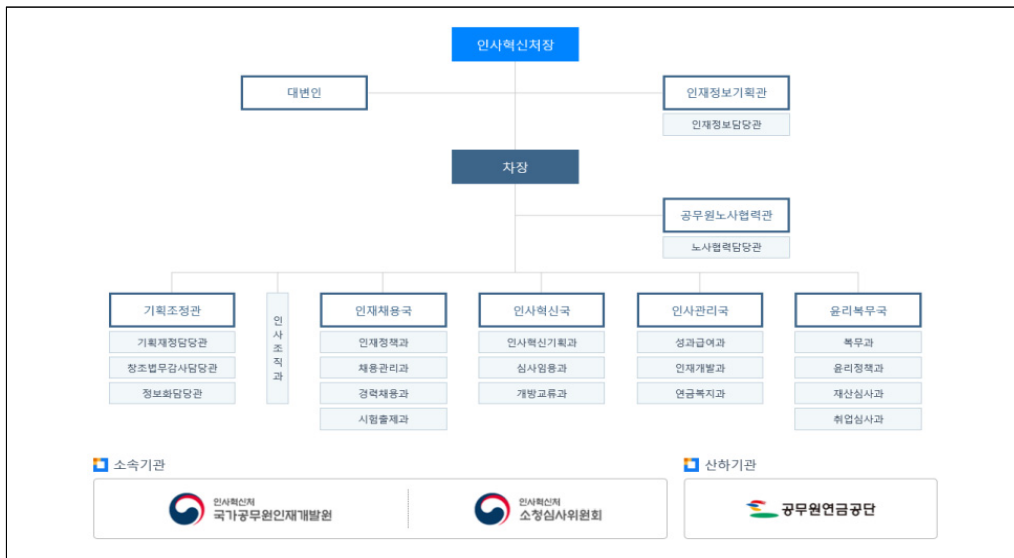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1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다) 조직 체계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인사혁신처는 국제개발협력 담당조직으로 글로벌교육부를 가지고 있다(『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¹¹³⁾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3항¹¹⁴⁾).

〈그림 8〉 인사혁신처 조직도¹¹⁵⁾



113) 제21조(글로벌교육부) ① 글로벌교육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공무원 외국어 교육 등 글로벌 역량 향상 교육
2. 해외파견 공무원 교육 등 지원
3. 외국공무원 교육
4. 국외 공공·민간 교육훈련 및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5. 국외 교육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114) 제14조(글로벌교육부) ① 글로벌교육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글로벌교육부에 글로벌교육과를 두며, 글로벌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글로벌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국 공무원에 대한 글로벌 역량교육·컨설팅 과정의 개발·운영
2. 공공 행정·인적개발 분야 국제회의 기획·운영
3. 개발도상국 등의 교육훈련기관 대상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개발·운영
4.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5. 공직자 등 해외진출 지원 사업
6. 국내·외 공무원 교육훈련 표준모델 제시 및 공통교과 개발·보급
7. 글로벌 사업 관련 홍보업무
8.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115) 인사혁신처. 『조직도』. <http://www.mpm.go.kr/mpm/about/aboutorg/orgchart/> (접속일: 2017.6.13.).

마. 그 밖에 수행부처

1) 미래창조과학부¹¹⁶⁾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의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및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이 국제개발협력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34〉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ODA 근거 법령¹¹⁷⁾

미래창조 과학부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 「국립수산물연구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서는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6) 2017-07-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뀜.

1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외교’와 관련된 사업 중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상협력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3조제3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추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직 체계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제개발협력 담당조직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가지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3호¹¹⁸⁾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11항제7호¹¹⁹⁾).

2) 통일부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통일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행정규칙으로서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 및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6호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18) 제11조(기획조정실장) ① ~ ② <생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 32. <생략>

3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4. ~ 40. <생략>

119) 7. 국제기구를 통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공적개발원조 협력사업 및 개발도상국가와의 인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표 35〉 통일부 관련 ODA 근거 법령¹²⁰⁾

통일부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행정규칙	-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 「국립수산물연구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직 체계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제개발협력 담당조직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3) 법무부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법무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36〉 법무부 관련 ODA 근거 법령¹²¹⁾

법무부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공익신탁법」
	행정규칙	

1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1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차. 에서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 조직 체계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법무부는 국제개발협력 담당조직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4) 국방부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표 37〉 국방부 관련 ODA 근거 법령¹²²⁾

국방부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행정규칙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직 체계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국방부는 국제개발협력 담당조직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1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5) 행정자치부¹²³⁾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행정자치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전자정부국)제8항제3호 및 제12조제14항제6호 등에 국제개발협력 규정을 두고 있다.

〈표 38〉 행정자치부 관련 관련 ODA 근거 법령¹²⁴⁾

행정자치부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행정규칙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직 체계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행정자치부는 국제개발협력 담당조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제8항제3호에서는 전자정부국 중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의 업무 중 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제14항제6호의 지방재정경제실 중 지역금융지원과장의 업무분장에 새마을금고 ODA 사업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6) 문화체육관광부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

123) 2017-07-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행정안전부로 전환.

1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법』 제2조제8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제4항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39〉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ODA 근거 법령¹²⁵⁾

문화체육 관광부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행정규칙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직제규칙」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제4항에서 특별회계의 세출 중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조직 체계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행정자치부는 국제개발협력 담당조직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는 관광정책실 중 국제관광기획과장의 업무 중 관광 분야 ODA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직제규칙」 <별표 2> 직무분장표상의 글로벌협력단 내 전자정부 국제협력팀은 전자정부 ODA 초청연수 지원 및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맡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7) 환경부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환경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범위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표 40〉 환경부 관련 ODA 근거 법령¹²⁶⁾

환경부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행정규칙	환경부 사무분장규정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범위에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지원 및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협력 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다) 조직 체계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환경부는 국제개발협력 담당조직과 관련하여 「환경부 사무분장규정」 제25조제11호에서는 국제협력과에서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함을 규정하고 있다.

1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8) 고용노동부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고용노동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제12항제3호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규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규정이 아닌 국제사회에서의 고용·노동 분야 국가 위상제고를 위하여 노동부 각 실·국 및 노동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공공기관과 고용·노동 분야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한 규정이다(「노동부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규정」 제1조).

〈표 41〉 고용노동부 관련 ODA 근거 법령¹²⁷⁾

고용노동부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행정규칙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직 체계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고용노동부는 국제개발협력 담당조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제12항제3호에서 기획조정실장 내 개발협력지원팀장이 부 내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총괄·조정하도록 업무분장을 규정하고 있다.

1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9) 여성가족부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여성가족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에서는 국제협력이라는 조문제목 아래 국제개발협력 추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제3항).

그리고 「여성가족부 직제」 제5조의2(기획조정실장)제3항제18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항제5호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를 위한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을 두고 있다.

〈표 42〉 여성가족부 관련 ODA 근거 법령¹²⁸⁾

여성가족부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양성평등기본법」
	행정규칙	-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 「여성가족부 직제」 및 시행규칙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제3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을 두고 있다(「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제1항).

1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다) 조직 체계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여성가족부는 국제개발협력 담당조직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직제」 제5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업무에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항 제5호에서는 기획조정실장내 국제협력담당관이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하도록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

10) 국토교통부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17년 9월 22일에 시행예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조문제목 아래 국가가 스마트도시사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건설정책국)제3항제11호 및 제16조(항공정책실)제3항제66호 및 이 직제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2조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2015년 「폐지된 국제협력·정보화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있었다.

〈표 43〉 국토교통부 관련 ODA 근거 법령¹²⁹⁾

국토교통부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1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9월 22일에 시행예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무상 협력 또는 유상 협력으로 해외 스마트 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조직 체계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 담당조직과 관련하여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1호에서 건설정책국장의 업무에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의 지원 및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직제 시행규칙 제9조 건설정책국장 내 해외건설정책과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항공정책실) 제3항제66호에서 항공정책실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외국과 항행안전시설 구축·운영·기술기준 제정 협력 및 개발도상국 항공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항공정책실 중 항공안전정책과장이 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해양수산부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국립수산물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44〉 해양수산부 관련 ODA 근거 법령¹³⁰⁾

해양수산부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행정규칙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립수산물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서는 “여수프로젝트”란 여수선언의 정신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해양문제 대처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수산물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 정의규정에서 “국외수산물기술개발사업”이란 수산 기술 지원과 수산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지도 및 훈련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 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조정·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1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다) 조직 체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14항제18호 해양정책실 내 국제협력총괄과장은 해양수산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관한 업무를, 이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항만국 내 항만투자협력과장은 해외항만개발 관련 공적개발원조사업 및 민간투자에 대한 업무와 해양 부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기상청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상법」 제35조의2에서 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였다.

또한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에서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이 법 제17조제5항제7호 및 시행령 제11조제7호에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중에 기상 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표 45〉 기상청 관련 ODA 근거 법령¹³¹⁾

기상청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기상법」 - 「기상산업진흥법」
	행정규칙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

1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상법」 제35조의2에서는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에서는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 및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조직 체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7항 및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0조에서는 기획조정관 중 국제협력담당관은 기상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기획 및 관리에 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13) 방송통신위원회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6조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46〉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ODA 근거 법령¹³²⁾

방송통신 위원회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행정규칙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1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다) 조직 체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6조 홍보협력담당관이 방송통신 규제 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방송통신 규제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방송통신 규제 분야 인력 초청연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국민안전처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이 직제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표 47〉 국민안전처 관련 ODA 근거 법령¹³³⁾

국민안전처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행정규칙	- 「국민안전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민안전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민안전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제1조).

1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다) 조직 체계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기획조정실장은 처 내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지원에 대하여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재난관리실장이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제21조의2제2항에서 해양구조안전국장이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15) 조달청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8에서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해외조달 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제23조 및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6조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48〉 조달청 관련 ODA 근거 법령¹³⁴⁾

조달청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1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관한 법률」 제3조의8의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에서는 조달청장은 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내 관련 기관 및 각 국 조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8에 따라 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선정하는 국내 기업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에서는 조달청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협력의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 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다) 조직 체계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제2항에서 기획조정관은 청 내 국제협력 사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서는 국제협력담당관은 청 내 국제협력사무의 총괄·조정,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6조의2에서 국제협력담당관이 국내기업의 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에 관한 사항 총괄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중소기업청¹³⁵⁾

가)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

135) 2017-07-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소벤처기업부로 됨.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에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해외진출 지원) 및 법 시행령 제11조(업무의 위탁)를 통해 중소기업창업과 관련하여 해외진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표 49〉 중소기업청 관련 ODA 근거 법령¹³⁶⁾

중소기업청	법적 근거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행정규칙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나)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제2조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법 시행령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직 체계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에 의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진이 ODA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에 국제협력과를 둔다. 그리고 이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경영판로국에 해외시장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고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 및 중견기업·중소기업 분야 경제원조 및 지식공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수행을 규정하고 있다.

2.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및 책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8호).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①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②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③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④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⑤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등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양자 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확정하는 5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동법 제11조 제1항), 위원회가 작성하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동법 제14조 제1항),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제15조 제1항),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동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17조), 매년 전년도에 국제개발협력의 통계자료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관련 자치법규 입법 현황

2017년 6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교류협력과 국제개발협력과의 관계에 대한 법령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면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 법률에는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에서는 “국제교류협력”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제2조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와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천군 국제개발협력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이란 서천군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적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정의 규정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관련 자치법규는 국제개발협력의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 민간 단체와의 협력, 자체재원을 활용한 예산의 확보, 외국과의 정보교환 및 협력 및 홍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관련 자치법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017년 6월 현재 총 62개의 국제교류협력 관련 자치법규가 운영되고 있다.

〈상자 3〉 국제교류협력 관련 자치법규 입법현황¹³⁷⁾

자치법규 입법현황

- 1)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 3)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4)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5)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6)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7)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8) 「광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9)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10)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11)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12)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13) 「김천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14)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 15)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6) 「논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17)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18)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 19)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21)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22)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3)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24)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5) 「순창군 국제교류협력증진 등에 관한 조례」
- 26)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27)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8) 「영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29) 「완도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30) 「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31)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 32)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 33)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34)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35)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36) 「전라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37) 「전라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 38)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39)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 40)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1)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 42) 「청양군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
 - 43)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44)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45)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46)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
 - 47)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 48)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49)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
 - 50) 「목포시 국제교류 명예자문대사 운영규정」
 - 51)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52) 「부산광역시 서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
 - 5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
 - 54)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조례」(폐지)
 - 55)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 56)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57) 「아산시 국제교류 자문위원 운영 규정」
 - 58) 「연천군 국제우호교류활동 조례」
 - 59) 「전라북도국제교류추진협의회규정」
 - 60)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61) 「포항시 국제교류원 복무 규정」
 - 62)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상자 4〉 국외 자매결연 관련 조례 입법현황¹³⁸⁾

또한, 지방자치단체 국외 자매결연 관련 조례는 2017년 6월 현재 23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

자치법규 입법현황

- 1)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2)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3)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7)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8)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9)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1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조례를 검색하여 연구진이 국제교류협력 관련 자치법규 입법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임.

1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에서 개별 조례를 검색하여 연구진이 국외 자매결연 관련 조례 입법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임.

-
- 10)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11)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12)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13) 「담양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14)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15)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16) 「여주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17) 「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 조례」
 - 18) 「정읍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19)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 「경산시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21) 「군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22) 「울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조례」
 - 23) 「청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자치법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구체화하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조례는 2015년 이후에 등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자치법규는 공통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것임을 목적조항에 규정하고 있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622호, 2015. 7.30., 제정)

〈표 50〉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¹³⁹⁾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8조(대상지역)
제2조(정의)	제9조(위탁)
제3조(추진사업)	제10조(시민 참여)
제4조(시장의 책무)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적용범위)	제12조(포상)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시행규칙)
제7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등)	

1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협력개발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세종특별자치시는 ① 개발도상국 및 6·25전쟁 참전국(이하 “개발도상국 등”이라 한다)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제도·조건의 개선, ② 개발도상국 등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③ 개발도상국 등의 문맹퇴치사업, 학교환경개선사업, ④ 개발도상국 등의 농업용수 개발, 주택개량사업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사업을 하며, 이때 시장은 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3조).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추진과 관한 사항을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9조).

〈표 51〉 세종특별자치시 ODA 관련 개관

세종 특별 자치시	부서명	부서 인원	실무담당 인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의회협력	5명	2명
	2017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예산(단위: 천 원) ¹⁴⁰⁾		
	국제화 기반 확립	총 174,826 - 국제교류협력:165,126 - 해외도시 공무원 교류:9,700	
	최근 ODA사업 경험 및 유형		
	- 해당 없음		

140)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pp.140-141
http://www.sejong.go.kr/prog/yesanInfo/sub04_01_04_01/list.do (접속일: 2017.6.13.).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서천군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국제개발협력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다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확정하는 5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차이가 발생한다.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지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① 개발 및 개량 사업, ② 환경정비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표 53〉 경기도청 ODA 관련 개관

경기 도청	부서명	부서 인원	실무담당 인원
	국제협력관 외교정책과	27명	2명
	2017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예산(단위: 백만 원) ¹⁴³⁾		
	외교·통일	2,716,074	
	최근 ODA사업 경험 및 유형 ¹⁴⁴⁾		
	지원사업	- 2009년-현재 베트남 응에안성, 농업기술 지원, 농촌개발 지원 사업, 여성쉼터 건립사업 - 2013년 네팔 응급 및 취약진료분야 의료장비 지원 - 2013년 베트남 연착현 주민건강 증진사업 - 2013년 몽골 다르항 절단장애인 의수족지원 - 2013년 인도네시아 ‘올 라이츠 빌리지 조성 프로젝트’ - 2013년 베트남 빈곤아동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 2013년 미얀마 아예아르와디구 마우빈지역 개발센터 건립 - 2013년 미얀마 양곤시 요앗땃찌 고등학교 건립사업 - 2014년 온두라스‘배움을 위한 빛’프로젝트 및 학습형 마을리더 양성사업 - 2014년 에티오피아 교사 역량강화센터 건립사업	
	역량강화·초청연수	- 2013년 에티오피아 아마다 과학기술대학교 교육인프라개선 및 교육역량강화사업 - 2013년 베트남 응에안성 빈시 빈곤여성들을 위한 쉼터 건립과 역량강화 - 2013년 캄보디아 캄푹주 찌띠알 마을 병원 운영지원 의료진 역량강화사업 - 2015년 자카르타주 청년인재 초청연수	

경기 도청	조직도 ¹⁴⁵⁾	
	도지사	대변인
		소통기획관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
	행정1부지사	감사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도시주택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자치행정국
		교육협력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해양국
		철도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환경국

143) 경기도. 『경기도 예산개요』. <http://www.gg.go.kr/archives/3750611> (접속일: 2017.6.13.).

144)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접속일: 2017.6.13.).

145) 경기도청 홈페이지 조직도안내. <http://www.gg.go.kr/organization> (접속일: 2017.6.13.)

146) 경기도청 홈페이지 조직도안내. 상동

	조직도 ¹⁴⁶⁾	
경기 도청	행정2부지사 (북부 10개시군 관할)	감사관
		복지여성실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관
		경제실
		임자리노동정책관
		국제협력관
		축산산업국
		교통국
		건설국
		북부소방재난본부
	연정부지사	연정협력국
		공유시장경제국
	의회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3)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경상남도조례 제3988호, 2015.4.2., 제정)

〈상자 5〉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147)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제1조(목적)	제8조(사무의 위탁)
제2조(정의)	제9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3조(적용범위)	제10조(국제개발협력 사업 자문단)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11조(홍보 등)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포상)
제6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13조(시행규칙)
제7조(대상 지역)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하여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제10조제1항).

〈표 54〉 경상남도청 ODA 관련 개관

경상 남도청	부서명	부서 인원	실무담당 인원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31명	2명
	2017년 예산(단위: 천 원) ¹⁴⁸⁾		
	국제통상과	28,024,897	
	최근 ODA사업 경험 및 유형 ¹⁴⁹⁾		
	- 2006-2011 해외 자매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14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

148) 경상남도,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서』.

http://open.gyeongnam.go.kr/jsp/sub01/01_0410.jsp (접속일: 2017.6.13.).

149) 경상남도청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jsp/main/main.jsp> (접속일: 2017.6.13.)



150)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조직도안내 http://www.gyeongnam.go.kr/jsp/sub04/04_03.jsp(접속일: 2017.6.13.)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133호, 2015.7.20., 제정)

〈상자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 1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	
제1조(목적)	제8조(사무의 위탁)
제2조(정의)	제9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3조(적용범위)	제10조(국제개발협력 사업 자문단)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11조(홍보 등)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포상)
제6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13조(시행규칙)
제7조(대상 지역)	

〈표 5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DA 관련 개관

해운대 구청	부서명	부서 인원	실무담당 인원
	기획조정실 기획팀	6명	1명
	2017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예산(단위: 천 원) ¹⁵²⁾		
	- 국제도시간 교류	- 44,000	
	최근 ODA사업 경험 및 유형		
	- 해당 없음		
	조직도 ¹⁵³⁾		

15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

152)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017년 사업예산 상세정보』.

http://e-budget.haeundae.go.kr/html/02_finance/finance_14.php (접속일: 2017.6.13.).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청장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하여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사업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제10조제1항).

5) 「서천군 국제개발협력 조례」(충청남도 서천군조례 제2407호, 2016.8.10., 제정)

〈상자 7〉 「서천군 국제개발협력 조례」 154)

〈「서천군 국제개발협력 조례」〉	
제1조(목적)	제7조(지원)
제2조(정의)	제8조(사무의 위탁)
제3조(적용범위)	제9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4조(군수의 책무)	제10조(홍보 등)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포상)
제6조(국제개발협력계획 수립·시행)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서천군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국제개발협력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다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기본계획은 5년, 이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행계획안을 주관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53)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조직도』. http://www.haeundae.go.kr/html/07_about/about_05.php (접속일: 2017.6.13.).

15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

〈표 56〉 서천 구청 ODA 관련 개관

서천 군청	부서명	부서 인원	실무담당 인원
	-	-	-
	2017년 예산(단위: 천원)155)		
	- 관련 항목 없음		
	최근 ODA사업 경험 및 유형		
	- 해당 없음		
	조직도 156)		

155) 서천군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http://www.seocheon.go.kr/prog/yesanInfo/sub01_08_02/list.do (접속일: 2017.6.13.).

IV. ODA집행기관의 사업유형

1. 현 황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ODA 순 규모는 국민소득(GNI) 대비 약 0.14%로 이는 약 2조 1,600억 원의 규모에 해당한다.¹⁵⁷⁾ 그리고 최근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한국 ODA 규모를 국민소득의 약 0.3%까지 늘릴 계획이다.¹⁵⁸⁾

공적개발원조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ODA 규모는 약 2조 6,359억 원으로 2016년 예산 2조 4,394억 원 대비 약 8.1%로 증가하였으며,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개발협력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42%와 35%로 전체 ODA 규모 중 약 77%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⁵⁹⁾

기획재정부(EDCF 포함)와 외교부(KOICA 포함) 개발협력 사업을 양측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ODA 규모 1%(약 264억 원) 이상을 사업예산을 받는 부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7〉 부처별 ODA규모¹⁶⁰⁾

(단위: 억 원)

시행부처(기관)	2016 예산 규모	2016 전체 ODA규모 대비 비중	2017 예산 규모	2017 전체 ODA규모 대비 비중
기획재정부 (EDCF 포함)	10,295	42.2%	11,113.1	42.2%
외교부 (KOICA 포함)	8,562.9	35.1%	9,318.5	35.4%
교육부	632.9	2.6%	697.6	2.6%

156) 서천군청. 『조직도』. http://www.seocheon.go.kr/kor/sub06_08_01.do (접속일: 2017.6.13.).

157) 권혁주, 김효정.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방안”, KIPA 조사포럼 Vol.19, 2016.12, 24면.

158) 유웅조, ‘공적개발원조(ODA) 현황과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56, 2016.4.28., 2면; 권혁주/김효정, 앞의 논문, 24면.

159)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활동현황 및 결과』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ltSIPL.do?brd_seq=24&bltn_div=oda (접속일: 2017.6.13.).

160)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활동현황 및 결과』.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ltSIPL.do?brd_seq=24&bltn_div=oda (접속일: 2017.6.13.).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시행부처(기관)	2016 예산 규모	2016 전체 ODA규모 대비 비중	2017 예산 규모	2017 전체 ODA규모 대비 비중
보건복지부	416.2	1.7%	493.3	1.9%
농림축산식품부	225.2	0.92%	269.9	1.02%
산업통상자원부	173.1	0.70%	267.1	1.01%
인사혁신처	207.5	0.85%	225.9	0.86%
농촌진흥청	168.1	0.69%	188.1	0.71%
산림청	129.8	0.53%	139.9	0.53%

첫째, 공여국가별 양자·다자, 무상·유상원조 추이를 보면, ① 양자 간 원조와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대비 원조 규모 비율의 경우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국가 평균이 우리나라 보다 높으며, GNI 대비의 경우 DAC 국가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¹⁶¹⁾ ② 우리나라의 다자간 원조의 경우에 다자간 원조 규모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자간 원조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¹⁶²⁾ ③ 무상원조 비율은 낮은 편이나, 무상원조는 DAC 국가와 우리나라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¹⁶³⁾ 다만, ④ 유상원조 역시 DAC 국가와 우리나라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DAC 국가에 비하여 GNI 대비 유상 원조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¹⁶⁴⁾

둘째,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수원국가 유형 및 지원범위에 대해서 보면, ①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대륙은 아시아가 가장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⁵⁾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베트남, 탄자니아, 캄보디아 등의 순이다.¹⁶⁶⁾ ② 양자 간 원조의 경우 프로젝트 원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자간 원조의 경우 세계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 지원 규모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⁶⁷⁾

161) 인포그래픽스, 공적개발원조(ODA)의 국내외 동향 및 비교분석, 2016.12 VOL.19 Winter, 한국행정연구원, 4면.

162) 인포그래픽스, 앞의 논문, 4면.

163) 인포그래픽스, 앞의 논문, 5면.

164) 인포그래픽스, 앞의 논문,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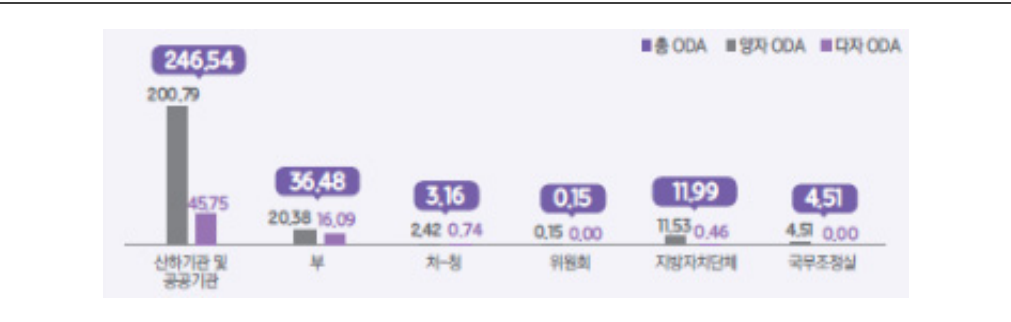
165) 인포그래픽스, 앞의 논문, 8면.

166) 인포그래픽스, 앞의 논문, 9면.

167) 인포그래픽스, 앞의 논문, 9면.

셋째, 우리나라의 ODA 기관별 지원형태에 대해서 보면, ① 우리나라 공여기관 성격별 ODA 규모는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가장 크며, 그 다음에 부처의 원조 규모가 크다.¹⁶⁸⁾

〈그림 9〉 한국의 공여기관의 ODA규모¹⁶⁹⁾



〈표 58〉 정부부처 등의 ODA 사업 수행 실적¹⁷⁰⁾

연번	시행부처(기관)	지출현황(총지출액, 억 원)									비 고		
		2015			2016			2017			사업수		
		양자	다자	합계	양자	다자	합계	양자	다자	합계	2015	2016	2017
1	국무조정실(본부)	7.67	-	7.67	8.3	-	8.3	6.6	-	6.6	1	1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2.57	11.74	64.31	64.0	-	64	57.8	-	57.8	17	12	9
2	기획재정부(본부)	126.8	955.9	1,082.7	119	937.0	1,056	79	1,163	1,242	30	39	12
	수출입은행(EDCF)	8,646.5	-	8,646.5	9,239	-	9,239	9,871.1	-	9,871.1	129	146	123
3	교육부	487.5	94.3	581.8	632.9	-	632.9	697.6	-	697.6	47	31	10
4	미래창조과학부	99.45	35.49	134.94	110.4	20.6	131.0	112.4	12.4	124.8	45	32	10
5	외교부(본부)	423	1,576	1,999	1,716.8	776.3	2,493.1	2,083.2	931.3	3,014.5	55	55	53
	한국국제협력단	5,916	414	6,330	6,069.8	-	6,069.8	6,304.0	-	6,304	551	579	614
6	법무부	9.32	2.96	12.28	9.5	-	9.5	3.7	-	3.7	2	4	4
7	행정자치부	36.08	-	36.08	28.4	-	28.4	73.4	-	73.4	22	16	8
8	문화체육관광부	103.32	11.86	115.18	128.1	-	128.1	110.8	-	110.8	13	13	11

168) 인포그래픽스, 앞의 논문, 1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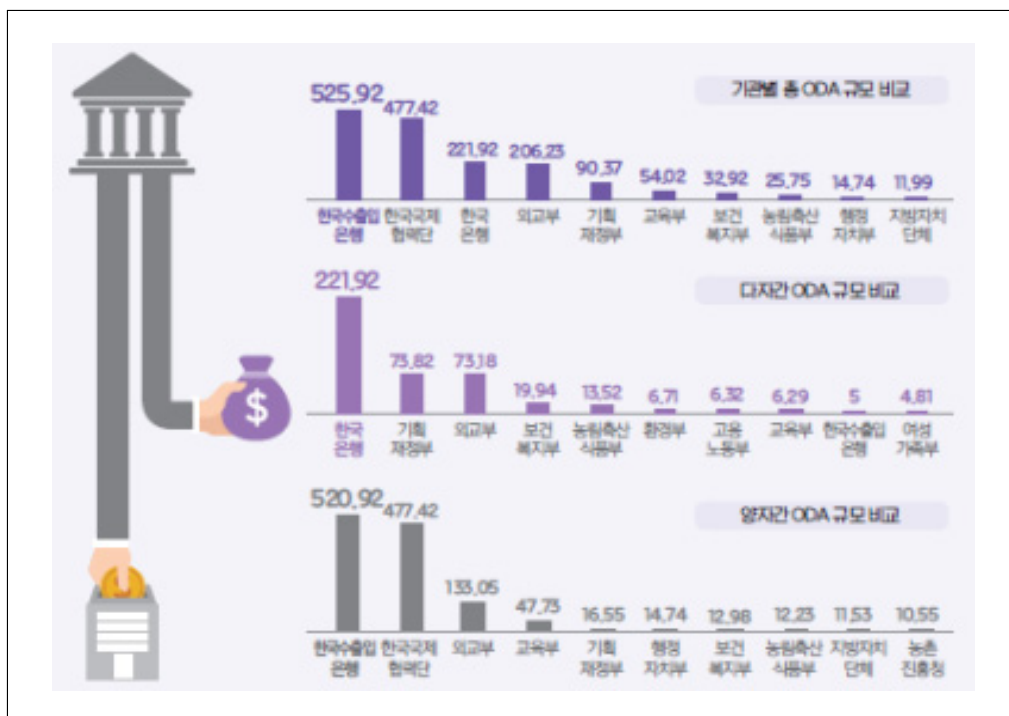
169) 인포그래픽스, 앞의 논문, 10면.

170)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활동현황 및 결과』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ltSIPL.do?brd_seq=24&bltn_div=oda
(접속일: 2017.6.13.).

연번	시행부처(기관)	지출현황(총지출액, 억 원)									비 고		
		2015			2016			2017			사업수		
		양자	다자	합계	양자	다자	합계	양자	다자	합계	2015	2016	2017
9	농림축산식품부	128.31	113.67	241.98	164.5	60.7	225.2	180.9	89.0	269.9	39	39	29
10	산업통상자원부	124.6	41.46	166.06	158.5	14.6	173.1	252.7	14.4	267.1	36	27	26
11	보건복지부	157.2	179.98	337.18	246.7	169.5	416.2	295.0	198.3	493.3	34	31	28
12	환경부	118.11	73.04	191.15	82.1	48.0	130.1	67.2	43.3	110.5	19	24	28
13	고용노동부	3.66	65.81	69.47	16.4	54.7	71.1	19.9	54.7	74.5	11	7	8
14	여성가족부	10.5	52	62.5	19.5	44.8	64.3	19.9	45.6	65.5	8	7	5
15	국토교통부	56.6	1.11	57.71	63.7	1.5	65.2	127.6	1.6	129.2	14	11	5
16	해양수산부	26.6	-	26.6	28.8	-	28.8	47.7	-	47.7	10	14	7
17	국민안전처	5	-	5	8.0	-	8.0	8.3	-	8.3	2	2	1
18	인사혁신처	-	158.62	158.62	-	207.5	207.5	225.9	-	225.9	1	1	1
19	국가보훈처	1.92	-	1.92	1.8	-	1.8	1.8	-	1.8	3	3	2
20	식품의약품안전처	0.77	11.64	12.41	13.0	-	13.0	17.6	-	17.6	5	5	4
21	관세청	36.67	-	36.67	33.6	19.7	53.3	40.5	19.7	60.2	13	11	5
22	통계청	8.98	1.11	10.09	16.2	-	16.2	15.4	-	15.4	7	6	5
23	문화재청	14.36	9.37	23.73	22.2	0.8	23.0	30.4	0.9	31.3	15	14	11
24	농촌진흥청	152	4.79	156.79	164.9	3.2	168.1	184.9	3.2	188.1	30	30	6
25	산림청	32.2	79.41	111.61	63.8	66.0	129.8	136.9	3.0	139.9	14	14	11
26	특허청	4.86	10.12	14.98	16.5	0.1	16.6	17.2	0.1	17.3	5	1	4
27	기상청	23.57	0.61	24.18	25.7	0.6	26.3	27.6	0.7	28.3	6	6	5
28	헌법재판소	0.51	-	0.51	0.4	-	0.4	0.4	-	0.4	1	5	1
29	공정거래위원회	0.4	1.12	1.52	1.6	-	1.6	1.5	-	1.5	3	1	3
30	국민권익위원회	1.0	-	1	0.9	-	0.9	0.8	-	0.8	5	3	2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96	-	10.96	36.5	-	36.5	47.7	-	47.7	7	6	3
32	중소기업청	X	X	X	2.0	-	2.0	X	X	X	X	5	X
33	지방자치단체(12개)	X	X	X	165.5	-	165.5	102.8	22.1	124.9	38	29	X
34	대검찰청	X	X	X	X	X	X	5.7	-	5.7	3	X	X
35	경찰청	X	X	X	X	X	X	24.0	-	24	2	X	X
합계		1682.69	3906.11	20,733.1	19,479	2,425.6	21,904.6				1,243	1,230	1,055

- ② 총 ODA 규모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가장 크며, 그 뒤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은행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⁷¹⁾

〈그림 10〉 한국의 총 ODA 규모 10개 기관¹⁷²⁾



171) 인포그래픽스, 앞의 논문, 10면.

172) 인포그래픽스, 앞의 논문, 10면.

2. 3년간 주요 부처 및 지자체의 구체적 현황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의 주요 부처 ODA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¹⁷³⁾

〈상자 8〉 현황 조사 분석 결과 검토시 기준점¹⁷⁴⁾

아래 표에 대한 주의사항	
- 사업형태 중 프로젝트, 연수생초청, 전문 인력/봉사단으로 구분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는 모두 민관협력으로 분류함	
- 사업 분야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각 부처특성에 맞춰서 적었으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기술환경에너지'로 작성하였고, 분담금 등 분야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기타'로 작성하였음	
- 사업지역이 분명하지 않은 분담금 등은 분류를 공란으로 넣었고, 유럽 쪽은 중동아시아로 작성하였음	
- 양·다자구분에서 다자성 양자로 분류된 항목은 금액 확인 후 양자로 넣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충청남도 서천군 등 구, 군, 읍면동이 확인이 안 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의 계획으로 대체하여 작성하였음	

가. 2015년

〈표 59〉 2015 주요 부처 및 지자체의 구체적 현황¹⁷⁵⁾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무상	양자·다자
기획재정부	라오스 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트, '11년~'18년, 96억/307억, 계속)	Y	공공행정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몽골 국립의료원 건립사업(프로젝트, '11년 '16년, 49억/597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미얀마 500kV Taungoo-Kamanat 송전망 구축사업(프로젝트, '13년~'16년, 144억/1,077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미얀마 IT 인프라네트워크 구축사업(프로젝트, '13년~'18년, 144억/602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5개 지역 한배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프로젝트, '08년~'15년, 312억/377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173) 이하의 내용은 허대원 공동연구진과 한국법제연구원 백영주 위촉연구원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 및 시행결과 등을 재정리한 것임.

174) 연구진이 ODA 관련 현황 조사 결과에 대한 기준점을 표로 정리한 것임

17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https://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ItSIPL.do?brd_seq=24&bltn_di v=oda(접속일: 2017.4.14.) 자료 등에 대하여 연구진이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재정부	베트남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 2차 사업(프로젝트, '10년~'16년, 56억/758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국립이비인후과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프로젝트, '14년~'15년, 68억/205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광빈성 태양광 발전사업(프로젝트, '12년~'16년, 35억/129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닌빈 고체폐기물 처리사업(프로젝트, '06년~'15년, 7억/259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락자아 우회도로 건설사업(프로젝트, '08년~'15년, 28억/994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로떼-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프로젝트, '12년~'19년, 592억/2,155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룡수옌시 하수처리사업(프로젝트, '12년~'16년, 55억/496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목짜우 상하수도 건설사업(프로젝트, '10년~'16년, 17억/140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밤공 교량 건설사업(프로젝트, '11년~'17년, 409억/2,258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밤공교량 접속도로 건설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74억/354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비엠헌 하수도 건설사업(프로젝트, '09년~'16년, 39억/354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엠바이성 종합병원 건립사업(프로젝트, '09년~'16년, 39억/354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탕화시 사회경제개발사업(프로젝트, '09년~'15년, 18억/373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티엔탄 상수도사업(2차)(프로젝트, '08년~'17년, 56억/442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사업(프로젝트, '14년~'18년, 8억/485억, 신규)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프로젝트, '08년~'15년, 336억/1,364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제10구간)(프로젝트, '09년~'15년, 487억/1,265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호이안띠미 상수도 건설사업(프로젝트, '09년~'16년, 59억/356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호치민-퐁롱고속도로지형교통시스템구축사업(프로젝트, '10년~'16년, 7억/327억, 계속)	Y	공공행정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재정부	베트남 흥옌시 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프로젝트, '12년~'16년, 26억/249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흥하교랑 건설사업(프로젝트, '14년~'19년, 18억/1,260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21번국도 개보수사업(프로젝트, '11년~'16년, 99억/566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2번 22번 국도 개보수 사업(프로젝트, '14년~20년, 10억/604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GMS 북서부도로 개선사업(프로젝트, '10년~'15년, 99억/341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다운트림 개발사업(프로젝트, '13년~'19년, 10억/503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몽콜보레이섬 개발사업(프로젝트, '10년~'15년, 34억/207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살라타온댐개발사업(프로젝트, '12년~'17년, 69억/395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 2차(프로젝트, '14년~'18년, 10억/442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ICT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프로젝트, '11년~'16년, 10억/433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광대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프로젝트, '13년~'16년, 200억/829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국가정보통신망개발사업(프로젝트, '10년~'16년, 40억/345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다카 상수도 개발사업(프로젝트, '12년~'16년, 40억/485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반달줄리 상수도 개발사업(프로젝트, '13년~'18년, 10억/1,045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비비아나-칼리아고 송전망 개발사업(프로젝트, '10년~'17년, 227억/1,091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철도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프로젝트, '12년~'15년, 40억/237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해상안전운행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99억/404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스리랑카 Ruhunupura 상수도 개발사업(프로젝트, '08년~'15년, 84억/881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스리랑카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85억/361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재정부	스리랑카 데두루오야 상수도 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115억/626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스리랑카 루완웰라 상수도 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40억/626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스리랑카 콜롬보 중앙 직업훈련 및 감파하 고등 기술센터건립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65억/281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스리랑카 하톤-누아라엘리아 도로 건설사업(프로젝트, '09년~'15년, 36억/429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파키스탄 말라칸트 터널건설사업(프로젝트, '14년~'19년, 210억/840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파키스탄 신드주 아동병원 건립사업(프로젝트, '14년~'18년, 7억/496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남수단 이태석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프로젝트, '13년~'16년, 34억/905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르완다 국립대학교 건설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139억/552억, 신규)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GAZA주 송배전망측사업(프로젝트, '09년~'15년, 14억/544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교육개선사업(프로젝트, '11년~'16년, 13억/195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니칼라 연결도로 개보수 1차 사업(프로젝트, '11년~'16년, 6억/215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남폴라-나메틸도로 건설사업(프로젝트, '13년~'17년, 2억/813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마푸트위생매립장 건립사업(프로젝트, '13년~'17년, 5억/524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확충사업(프로젝트, '10년~'15년, 4억/281억, 계속)	Y	공공행정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켈리만 중앙병원 건립사업(프로젝트, '08년~'15년, 25억/495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프로젝트, '10년~'15년, 3억/387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에티오피아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프로젝트, '14년~'18년, 26억/1,077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에티오피아 솔루타-게브레구라차 전력망구축사업(프로젝트, '13년~'17년, 25억/844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우간다 교육개선사업(프로젝트, '10년~'16년, 30억/289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잠비아 공공안전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56억/447억, 신규)	Y	공공행정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재정부	탄자니아 도도마시 상수도 확충사업(프로젝트, '10년~'16년, 23억/549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말라가라시강교량및연결도로건설사업(보충융자)(프로젝트, '12년~'16년, 92억/328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건립사업(프로젝트, '10년~'16년, 75억/532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프로젝트, '11년~'15년, 57억/291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이링가-신앙가 송변전망확충사업(프로젝트, '11년~'15년, 69억/420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잔지바르 관개시설 개선사업(프로젝트, '12년~'17년, 73억/539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주민중 데이터센터 건립사업(프로젝트, '13년~'16년, 80억/585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아루사송전망확충사업(프로젝트, '10년~'15년, 14억/269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가나 Prestea-Kumasi 전력 강화 사업(프로젝트, '12년~'17년, 82억/724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가나 Wa 상수도 건설사업(프로젝트, '11년~'15년, 76억/614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말리 관개개발 프로그램 1단계 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65억/233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말리 정부행정망개발사업(프로젝트, '11년~'18년, 70억/450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세네갈해상인프라 구축사업(프로젝트, '12년~'17년, 12억/545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시에라리온프리타운시 복합행정센터 건립사업(프로젝트, '13년~'17년, 126억/592억, 계속)	Y	공공행정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앙골라 산업고등기술센터 건립사업(프로젝트, '13년~'17년, 103억/375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앙골라 치안강화사업(프로젝트, '13년~'17년, 89억/474억, 계속)	Y	공공행정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카메룬 가루아 종합병원 건립사업(프로젝트, '13년~'17년, 10억/619억, 신규)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카메룬 직업훈련소 건립 사업(프로젝트, '10년~'15년, 10억/410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재정부	콩고민주공화국 뎀바임부 상수도 건설사업(프로젝트, '13년~'16년, 118억/732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아제르바이잔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6억/237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아제르바이잔 피르사기 하수처리장 건립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144억/469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우즈베키스탄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트, '13년~'17년, 52억/162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건립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10억/1,108억, 신규)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니카라과 재생에너지 송변전사업(프로젝트, '11년~'15년, 48억/293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니카라과 재생에너지 송변전사업(2차)(프로젝트, '13년~'17년, 77억/517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니카라과 직업훈련소 확충사업(2차)(프로젝트, '10년~'15년, 28억/251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시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트, '14년~'16년, 15억/388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 관리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트, '13년~'18년, 40억/269억, 계속)	Y	공공행정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볼리비아 바네가스 교량 건설사업(프로젝트, '09년~'17년, 50억/442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상수도 확장사업(프로젝트, '06년~'15년, 1억/515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프로젝트, '12년~'17년, 67억/732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온두라스 농촌태양광전력화사업(프로젝트, '14년~'18년, 30억/482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온두라스 출루테카 병원 건립사업(프로젝트, '11년~'16년, 38억/356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콜롬비아 ICT 교육역량 강화사업(프로젝트, '09년~'16년, 39억/323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요르단 나우르 폐수처리사업(프로젝트, '06년~'16년, 40억/224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요르단 암만남부 폐수처리시설 사업(보충용자)(프로젝트, '13년~'15년, 48억/328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요르단 암만 남부 하수처리 사업(2차)(프로젝트, '08년~'16년, 80억/492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재정부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프로젝트, '10년~'16년, 76억/754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인도네시아 경찰청 고속순시선 공급사업(프로젝트, '13년~'17년, 7억/377억, 신규)	Y	공공행정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인도네시아 경찰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프로젝트, '10년~'16년, 67억/431억, 계속)	Y	공공행정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인도네시아 바탐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프로젝트, '13년~'18년, 42억/539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인도네시아 카리안담 건설사업(프로젝트, '10년~'18년, 123억/1,077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프로젝트, '09년~'16년, 62억/625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GSO 도로(2차) 사업(프로젝트, '08년~'15년, 18억/323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남북부 연결철도 1차 사업(보충용자)(프로젝트, '09년~'15년, 7억/165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남북부 연결철도 2차 사업(프로젝트, '09년~'19년, 0억/1,034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라컨딩간 공항 항법지원설비 공급사업(프로젝트, '10년~'15년, 15억/143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라컨딩간 공항개발사업(프로젝트, '96년~'15년, 1억/287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바콜로드-실라이 공항진입도로 건설사업(프로젝트, '08년~'15년, 2억/150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발라-카시구란 도로개선 사업(프로젝트, '12년~'17년, 18억/335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사마르 해안도로 사업(프로젝트, '11년~'17년, 15억/407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팜팡가지역 통합재난위험감축 및 기후변화적응사업(프로젝트, '13년~'19년, 61억/1,035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개선사업(프로젝트, '09년~'17년, 102억/771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프로젝트, '12년~'18년, 138억/2,239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프로젝트, '15년~'17년, 110억/550억,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유상	양자
	민간협력차관(프로젝트, '15년, 30억/30억,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재정부	개도국사업진행컨설팅(민관협력, 계속, 64.8억/ 단년도 계속,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민간협력사업진행컨설팅(민관협력, 계속, 2.0억/ 단년도 계속,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개발금융사업진행컨설팅(민관협력, 계속, 48.5억/ 단년도 계속,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EDCF 행정비용(기금운영비, 교류협력지원비 등) (민관협력, 계속, 151.1억/단년도 계속,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민관협력, 계속, 126.8억/ 단년도 계속,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한-WB 협력기금(WB)(민관협력, '13년~'15년, 355.4억/9,000만 불,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빈곤감축기금(WB)(민관협력, '12년~'16년, 20.6 억/1,600만 불,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초급전문가 JPO 파견(WB)(민관협력, 계속, 3.1 억/30만 불/1인,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녹색성장기금(WB)(민관협력, '12년~'15년, 103.0 억/4,000만 불,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농업식량안보기금(WB)(민관협력, '13년~'15년, 154.5억/3,000만 불,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한·IMF 기술협력기금(IMF)(민관협력, '13년~'17 년, 41.2억/1,800만 불,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e-ASIA 기금(ADB)(민관협력, 계속, 82.4억/단년 도 계속,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기금(AfDB)(민관협력, '15 년~'16년, 72.1억/1,500만 불,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기술협력자문기금(EBRD)(민관협력, 계속, 30.9억/ 단년도 계속,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초기체제지원금 지원기금(EBRD)(민관협력, 계속, 10.3억/단년도 계속,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교육부	재정혁신협력기금(DB)(민관협력, '12년~'16년, 82.4억/4,000만 불,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민관협력, '12년~계 속, 26.88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글로벌교육지원(민관협력, '06년~계속, 8.05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전문 인력/봉사단, '67~ 계속, '13~계속, 345.84억, 8.24억, 계속)	Y	기타	전문 인력/ 봉사단		무상	양자
	한국형 첨단교육서비스 해외진출 지원(프로젝트, '11~계속, 18.00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교육부	아세안대학 이러닝지원(민관협력, '12년~계속, 18.38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이러닝세계화(민관협력, '06년~계속, 20.75억, 신규)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다문화가정대상국가 교육글로벌화지원(민관협력, '12년~계속, 21.86,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저개발국교육인재양성(전문 인력/봉사단, '10년~계속, 14.00억, 5.47억, 계속)	Y	교육	전문 인력/ 봉사단		무상	양자
	유네스코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프로젝트, 54.3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무상	다자
	국제백신연구소(민관협력, 40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다자
보건복지부	라오스 통합모자보건증진사업(프로젝트, '10년~15년, 20억/109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캄보디아 통합모자보건증진사업(프로젝트, '11년~'16년, 20억/106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필리핀 결핵관리사업(프로젝트, '11년~'16년, 10억/52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이중육필로우십 프로그램(프로젝트, '07년~계속, 38억/단년도계속사업,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제고사업(프로젝트, '11년~계속, 2.3억/단년도계속사업,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신규 사업 개발연구 및 타당성조사 사업(프로젝트, '11년~계속, 1.6억/단년도계속사업,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가나 모자보건 증진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협력사업(프로젝트, '13년~'18년, 12억/88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남수단 모자보건증진, 결핵관리 및 의과대학병원 지원 사업(프로젝트, '13년~'18년, 5억/110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우즈베키스탄 의료시설 건립운영 유무상 연계사업(프로젝트, '14년~'19년, 8억/72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몽골 의료시설 건립운영 유무상 연계사업(프로젝트, '14년~'19년, 1.8억/71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탄자니아 의료시설 건립운영 유무상 연계사업(프로젝트, '13년~'19년, 2.2억/52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모잠비크 의료시설 건립운영 유무상 연계사업(프로젝트, '13년~'19년, 1.1억/31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베트남 의료시설 건립운영 유무상 연계사업(프로젝트, '13년~'19년, 3.2억/31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보건복지부	에티오피아 통합모자보건 증진 및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프로젝트, '14년~'19년, 10억/82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미얀마 1차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프로젝트, '14년~'19년, 10억/87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에티오피아 의료가기관리운영체계 구축 사업(프로젝트, '15년~20년, 8억/80억, 신규)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전문 인력/봉사단 '03년~계속, 3.9억/단년도계속사업, 계속)	Y	보건의료	전문 인력/ 봉사단		무상	양자
	WHO 의무분담금 납부(민관협력, 72.49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WHO 사업 분담금 지원(민관협력, 19.73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WPRO 전략사업 추진(민관협력, 27.62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WHO 전통의학 활성화 지원(프로젝트, 4.8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다자
	감염병관리 국제 부담금(민관협력, 18.22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글로벌펀드 기여금(민관협력, 20.6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UNFPA 인구개발 국제 부담금(민관협력, 1.15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IPPF 인구개발 국제 부담금(민관협력, 0.9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국제적십자위원회분담금(민관협력, 3.52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국제암연구소 부담금 납부(민관협력, 10.95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농림축산 식품부	라오스 시엥쿠앙주 관개시설 설치사업(프로젝트, '12년~'16년, 12.1억/44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몽골 축산물 가공 및 위생관리시스템구축 지원 사업(프로젝트, '12년~'15년, 9.4억/25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미얀마 농촌개발 및 영농기술전수사업(프로젝트, '13년~'16년, 9억/28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베트남 채소 계약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프로젝트, '11년~'15년, 7.5억/3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캄보디아 산림복구 및 산림연구시설 구축사업(프로젝트, '11년~'15년, 6.89억/4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필리핀 MIC사업지구 농촌개발사업(프로젝트, '15년~'18년, 3억/27억, 신규)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10억/28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카메룬 버 재배단지를 활용한 교육연구단지 조성 사업(프로젝트, '14년~'18년, 6억/30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농림축산 식품부	라오스 농업농촌 역량개발 민관협력사업(프로젝트, '14년~'16년, 4억/1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모잠비크 영농기술보급 및 농업생산성 증대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8억/27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르완다 사료생산 및 수확후 처리 지원 사업(프로젝트, '14년~'18, 6억/43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가나 아쿠마단 농촌개발 및 채소단지 관개사업(프로젝트, '15년~'17년, 1.5억/37억, 신규)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라오스 쌍둥군 농촌개발 및 영농기계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프로젝트, '15년~'18년, 1.5억/45억, 신규)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캄보디아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사업(프로젝트, '15년~'18년, 4억/30억, 신규)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제농업협력사업 타당성조사(프로젝트, '15년, 3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프로젝트, '15년, 2.6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 성과 확산사업(민관협력, '13년~'18년, 12억/68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무상	양자
	(르완다)(민관협력, '15년, 4.13억, 신규)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필리핀)(민관협력, '15년, 3.74억, 신규)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파라과이)(민관협력, '15년, 4.13억, 신규)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농림축산검역 ODA(연수생초청, '06년~계속, 2.3억, 신규, 계속)	Y	농림수산	연수생초청		무상	양자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 (연수생초청, '06~계속, 1.2억, 계속)	Y	농림수산	연수생초청		무상	양자
	(식물검역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시아지역 워크숍 개최) (민관협력, '06년~계속, 0.66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개도국 국경검역 시스템 구축 지원)(연수생초청, '11년~계속, 0.44억, 계속)	Y	기타	연수생초청		무상	양자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성 관련 관계관 초청연수(연수생초청, '11년~계속, 0.69억, 계속)	Y	기타	연수생초청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아시아 중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연수생초청, '08년~계속, 0.87억, 계속)	Y	기타	연수생초청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미얀마 종자품질인증기술 역량강화사업(프로젝트, '15년~'17년, 3억/10억, 신규)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연수(연수생초청, '14년~계속, 1.4억, 신규, 계속)	Y	기타	연수생 초청		무상	양자
	(필리핀) (연수생초청, '14년~'17년, 0.72억, 계속)	Y	기타	연수생 초청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몽골) (연수생초청, '15년~'17년, 0.68억, 신규)	Y	기타	연수생 초청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농식품부-FAO간 식량안보 협력사업(프로젝트, '11년~계속, 18억, 계속,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동남아 식물관련 병해충 예방조사 능력 개발) (프로젝트, '13년~'16년, 6억/19.26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다자
	(아프리카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한 능력개발 및 우수사례 교환) 프로젝트, '14년~'17년, 7억/20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다자
	(개도국 조류 독감 대응능력 제고 사업) (프로젝트, '15년~'18년, 5억/30억,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다자
	농식품부-IFAD간 공동협력 보충기금 사업(프로젝트, '12년~계속, 10억, 계속,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다자
	(ICT 기반 농업생산성 향상 사업) (프로젝트, '12년~'15년, 5억/20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다자
	(남태평양 주요 도서국 농림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프로젝트, '15년~'18년, 5억/20억,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다자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분담금 (민관협력, 1949~, 54.77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분담금 (민관협력, 1978~, 29.87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세계식량계획(WFP) 분담금(민관협력, 1981~, 1.03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민관협력, '09년~계속, 156.79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운영 (민관협력, '09년~계속, 92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운영(민관협력, '10년~계속, 24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한-아프리카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KAFACI) 운영(민관협력, '11년~계속, 24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 운영 (민관협력, '14년~계속, 10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RDA 연수생연합체 기술지원 사업 운영(민관협력, '06년~계속, 2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농촌진흥청	국제기관및기구분담금(민관협력, '91년-계속, 4.79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국제농업연구자문단(CGIAR)분담금지원(민관협력, 3.21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아태식량비료기술센터(FFTC) 분담금지원 (민관협력, 0.41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다자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AVRDC) 분담금지원 (민관협력, 0.52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다자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분담금지원(민관협력, 0.31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다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담금지원 (민관협력, 0.24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아태농업연구기관협의회(APAARI) 분담금지원(민관협력, 0.1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다자
산림청	몽골그린벨트 조림사업(프로젝트, '07년~'16년, 20.1억/138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민간사막화방지 조림사업(민관협력, '07년~, 2.5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개도국 기술 지원(인도네시아)(프로젝트, 계속, 6.3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한-인도네시아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협력사업(프로젝트, '15년~'18년, 3.3억/26.3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프로젝트, '11년~, 45.6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무상	다자
	창원이니서티브이행 (프로젝트, '12년~, 20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무상	다자
	FAO 협력사업(프로젝트, 계속, 3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무상	다자
	ITTO분담금(의무/사업)(프로젝트, 계속, 3.46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다자
	IUCN 국제 부담금(프로젝트, 계속, 0.11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다자
	산림 생태계복원 이니서티브이행(프로젝트, '15년~'20년, 5억,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다자
	CIFOR 의무분담금 지원(민관협력, 계속, 2.24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산업통상 자원부	우즈벡섬유산업 고부가가치화지원(프로젝트, '15년~'19년, 21억/250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우즈베타양광발전협력(프로젝트, '14년~'15년, 2억/6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산업통상 자원부	한-베트남인큐베이터 파크 조성 지원(프로젝트, '12년~'15년, 42.3억/139.3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베트남 농업기계화 지원(프로젝트, '15년~'18년, 5.9억/230.3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인도네시아경제개발 및 산업발전방안 수립 지원 (민관협력, '12년~'15년, 3.5억/16.35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모잠비크 농기계 생산 기반 지원(민관협력, '15년, 1억/1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인도네시아공작기계 역량강화 협력(민관협력, '15년, 0.6억/0.6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필리핀금형기술 발전전략(민관협력, '15년, 0.6억/0.6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캄보디아 리사이클 기반 조성(민관협력, '15년, 0.6억/0.6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아제르바이잔건설기계 제조기반 육성(민관협력, '15년, 0.6억/0.6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페루전력산업 진출을 통한 전력 보급물재고(민관협력, '15년, 1억/1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몽골광물산업 중심의 국가균형개발을 위한석탄 테크노파크 조성 기반(민관협력, '15년, 0.6억/0.6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탄자니아 농수산 식품 가공 산업 활성화(민관협력, '15년, 1억/1억, 신규)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한-베트남 소재부품 협력사업(민관협력, '15년 ~, 20억/150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한-베트남 산업인력 양성사업(연수생초청, '15년 ~, 13억/60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연수생초청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한-카자흐스탄 기술 협력사업 (민관협력, '15년~, 2억/2억, 신규)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베트남 계량측정표준 기반구축사업(민관협력, '13년~'15년, 0.7억/2.1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몽골건설분야 시험 인프라 구축(민관협력, '13년~'15년, 0.7억/1.9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볼리비아 계량 측정 표준기반구축사업(민관협력, '13년~'15년, 0.3억/0.9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한국형 적합성 평가체계이식 및 기술규제 대응 기반마련 (민관협력, '14년~'15년, 1억/2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산업통상 자원부	한-에과도르 국가표준 역량 공동연구(민관협력, '14년~'15년, 0.7억/1.4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 구축지원(민관협력, '11년~'15년, 0.8억/7.4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지역표준화기구 회원국 및 아시아중동CIS 국가 대상 초청교육 지역표준화기구 회원국 및 아시아 중동CIS 국가대상 초청교육(연수생초청, '15년, 4.7억/15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연수생 초청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민관협력, 1954~계속, 0.44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민관협력, 1961~계속, 11.69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다자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 협력(민관협력, 2008~계속, 29.33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나. 2016년

〈표 60〉 2016 주요 부처 및 지자체의 구체적 현황¹⁷⁶⁾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KSP) 라오스 투자유치전략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사업(민관협력, '16년-'17년, 3.2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KSP) 미얀마 경제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사업(민관협력, '16년-'17년, 3.5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KSP) 베트남과의 전자산업 클러스터, 기술평가 시스템, 무역구제, PPP 부문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사업(민관협력, '16년-'17년, 8.0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KSP) 캄보디아농업발전, 교육부문 발전, 노동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자문사업(민관협력, '16년-'17년, 4.2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17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https://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ltSIPL.do?brd_seq=24&bltn_div=oda (접속일: 2017.4.14.) 자료 등에 대하여 연구진이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KSP) 인도네시아 반동시 개발, 사회 안전자금 관리, 저소득층 주택보급, 재 무부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사업(민 관협력, '16년-'17년, 4.5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KSP) 스리랑카 경제개발 계획수립 및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민관 협력, '16년-'17년, 4.5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KSP) 몽골수출 신용기관 설립 지원 및 예금보험정책 개선 방안(민관협력, '16년-'17년, 3.8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KSP) 태국 기술보증정책 개선 및 ICT 발 전 정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발전 방안 (민관협력, '16년-'17년, 3.2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KSP) 파키스탄의 지식경제 촉진을 위 한 경제발전 정책 수립 지원(민관협력, '16년-'17년, 4.8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KSP) 이집트 중소기업 및 제조업 발 전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민관협력, '16년-'17년, 4.0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KSP) 에티오피아 기술기반 산업 및 중공업 발달을 위한 제2차 성장 전환 계획의 주요 산업부문 타당성조사 및 action plan 개발 정책자문(민관협력, '16년-'17년, 3.5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KSP) 케냐 산업클러스터구축지원을 통한산업발전방안(민관협력, '16년 -'17년, 7.5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KSP) 온두라스 금융시장 발전 및 보건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사업 (민관협력, '16년-'17년, 3.5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KSP) 멕시코 과학기술 및 직업훈련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사업 (민관협력, '16년-'17년, 4.5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KSP) 쿠바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 한 정책자문(민관협력, '16년-'17년, 6.0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KSP) 니카라과의 산업화기술지원 및 교육기능 개선(민관협력, '16년-'17년, 4.5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KSP) 과테말라 농촌지역 소득증대 및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위한 정책자문 사업(민관협력, '16년-'17년, 4.5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KSP) 파라과이 수로교통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방안(민관협력, '16년-'17년, 3.0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KSP) 엘살바도르 R&D 진흥을 위한 정책자문사업(민관협력, '16년-'17년, 4.2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KSP) 콜롬비아 수출 진흥 및 지적재 산권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사업(민관 협력, '16년-'17년, 4.0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KSP) 페루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수립방안 (민관협력, '16년-'17년, 4.2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KSP)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 선 및 글로벌가치사슬과의 연계 강화 (민관협력, '16년-'17년, 3.0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KSP) 온두라스 지역사회환경관리강화 (민관협력, '16년-'17년, 2.5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KSP) 우즈베크의 교육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사업(민관협력, '16년 -'17년, 3.5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KSP) 키르기즈 공화국 신용조합 시스 템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 (민관협력, '16년-'17년, 3.0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KSP) 카자흐스탄 PPP (Public-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방안 (민관협력, '16년-'17년, 3.5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KSP) 중소기업 생태계 재편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자문(민관협 력, '16년-'17년, 3.5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KSP) 아제르바이잔의 농업의 현대화 및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민 관협력, '16년-'17년, 2.9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사업운영비(민 관협력, 계속, 3.72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사업진행컨설팅(EDCF) (프로젝트, 계속, 77.00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개발금융사업지원(EDCF) (프로젝트, 계속, 48.54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경제협력기반구축(EDCF) (민관협력, 계속, 30.27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기금운영비(EDCF) (민관협력, 계속, 46.45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라오스 GMS 북부 송전사업(프로젝트, '12년-'18년, 69억/424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라오스 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트, '12년-'19년, 40억/31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라오스 사반나켓주 농촌종합개발사업(프로젝트, '12년-'20년, 40억/51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라오스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프로젝트, '16년-'21년, 40억/503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프로젝트, '16년-'21년, 151억/904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몽골국립의료원 건립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35억/620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미얀마 500kV Taungoo- Kamanat 송전망구축사업(프로젝트, '15년-'18년, 225억/1,11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미얀마 IT 인프라네트워크 구축사업(프로젝트, '15년-'16년, 93억/62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미얀마 철도현대화사업(프로젝트, '16년-'18년, 1억/503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미얀마 한 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프로젝트, '16년-'20년, 17억/1,542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프로젝트, '11년-'16년, 170억/379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광빈성 태양광발전사업(프로젝트, '12년-'16년, 69억/13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베트남 로떼-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프로젝트, '15년-'18년, 157억/2,237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밤콩 교량 건설사업(프로젝트, '12년-'18년, 191억/2,258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밤콩교량 접속도로 건설사업(프로젝트, '15년-'18년, 36억/362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엔바이성 종합병원 건립사업(프로젝트, '11년-'16년, 61억/499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하노이-하이퐁고속도로 건설사업(프로젝트, '08년-'16년, 103억/1,364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하노이-하이퐁고속도로 건설사업 (제10구간)(프로젝트, '09년-'16년, 224억/1,26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호아깐띠이 상수도 건설사업(프로젝트, '10년-'16년, 51억/356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흥하교량 건설사업(프로젝트, '15년-'19년, 229억/1,30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짜빈성 튜컨 종합병원 앞의료기자재 공급사업(프로젝트, '16년-'17년, 27억/34억,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안지앙성 탄짜우 종합병원앞의료기자재 공급사업(프로젝트, '16년-'17년, 27억/34억,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하이퐁시 산부인과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프로젝트, '16년-'17년, 27억/34억,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목짜우 상하수도 건설사업(프로젝트, '11년-'18년, 44억/14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티엔탄 상수도사업 (2차)(프로젝트, '09년-'18년, 83억/29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국립이비인후과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프로젝트, '15년-'16년, 100억/213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룡수엔시 하수처리사업(프로젝트, '13년-'18년, 60억/51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베트남 비엠펙하수도 건설사업(프로젝트, '12년-'17년, 79억/34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사업(프로젝트, '15년-'19년, 55억/503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흥옌시 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프로젝트, '14년-'19년, 32억/25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짜빈성 상수도 건설사업(프로젝트, '16년-'19년, 4억/288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렌강 및 황마이강 수자원 개발사업(프로젝트, '16년-'21년, 9억/861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톨롱교량 건설사업(프로젝트, '16년-'19년, 84억/51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벤째성 종합병원 건립사업(프로젝트, '16년-'18년, 16억/32억, 신규)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빈딘성 꾸이년시 종합병원 개선(프로젝트, '16년-'18년, 16억/32억, 신규)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소방방재청 재난안전설비 개선사업(프로젝트, '16년-'18년, 22억/216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티엔탄 상수도사업(2차) 보충용자(프로젝트, '16년-'18년, 99억/162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하띤성 독토 종합병원 개선(프로젝트, '16년-'18년, 16억/32억, 신규)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호아빈성 락뚜이 종합병원 개선(프로젝트, '16년-'18년, 16억/32억, 신규)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21번국도 개보수사업(프로젝트, '13년-'16년, 91억/58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2번 22번국도 개보수사업(프로젝트, '15년-'19년, 4억/628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캄보디아 GMS 북서부도로 개선사업 (프로젝트, '10년-'16년, 36억/34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다운트리댐개발사업 (프로젝트, '15년-'19년, 5억/522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몽콜보레이댐개발사업(프로젝트, '11년-'16년, 15억/207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살라타온댐개발사업(프로젝트, '15년-'17년, 55억/41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 2차(프로젝트, '15년-'19년, 87억/45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국도 (No.31,33) 및 지방도 (No.117) 개보수, 캄포트 우회도로 건설사업(프로젝트, '10년-'16년, 15억/32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48번국도 개보수 사업(프로젝트, '15년-'19년, 9억/754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시엠립 하천정비사업 2차 (프로젝트, '15년-'19년, 34억/14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농촌종합개발사업(프로젝트, '16년-'18년, 9억/292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광대역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프로젝트, '15년-'19년, 96억/86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다카 상수도 개발사업(프로젝트, '13년-'18년, 53억/46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반달주리 상수도 개발사업(프로젝트, '15년-'19년, 97억/1,08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비비야나 칼리야코 송전 망개발사업(프로젝트, '10년-'18년, 83억/1,09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철도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프로젝트, '13년-'18년, 22억/246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해상안전운항시스템 구축 사업(프로젝트, '14년-'18년, 31억/42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방글라데시 디지털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트, '15년-'19년, 39억/40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BSM 의대 종합전문센터 건립사업(프로젝트, '15년-'20년, 71억/465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철도차량(객차) 구매사업(프로젝트, '16년-'18년, 20억/405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철도차량(기관차) 구매사업(프로젝트, '16년-'18년, 20억/405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카르나폴리 철도/도로 교량 건설사업(프로젝트, '16년-'20년, 45억/73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스리랑카 고체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프로젝트, '14년-'18년, 49억/37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스리랑카 데두루오야 상수도 사업(프로젝트, '15년-'17년, 84억/65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스리랑카 루완웰라 상수도 사업(프로젝트, '15년-'17년, 28억/23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스리랑카 콜롬보 중앙직업훈련 및 감파하 고등기술센터 건립사업(프로젝트, '11년-'17년, 29억/29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스리랑카 하톤-누와라엘리아 도로 개선사업 (보충용자)(프로젝트, '15년-'16년, 16억/192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파키스탄 말라칸트 터널건설사업(프로젝트, '15년-'20년, 106억/873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파키스탄 신드주 아동병원 건립사업(프로젝트, '15년-'19년, 91억/515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파키스탄 45번국도(캘카타-치트랄) 개선 확장사업(프로젝트, '16년-'20년, 128억/1,04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네팔 차멜리아 수력발전소 건설사업(프로젝트, '09년-'17년, 13억/68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남수단 이태석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프로젝트, '16년-'19년, 7억/975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르완다 국립대학교 건설사업(프로젝트, '15년-'19년, 110억/573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GAZA 주 송배전망 확충사업(프로젝트, '11년-'17년, 35억/544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교육개선사업(프로젝트, '14년-'18년, 5억/202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나칼라 연결도로 개보수 1차 사업(프로젝트, '11년-'16년, 27억/224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남폴라 나메틸도로 건설사업(프로젝트, '15년-'20년, 121억/844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마푸토 위생매립장 건립사업(프로젝트, '15년-'19년, 122억/544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켈리만중양병원 건립사업(보충용자)프로젝트, '15년-'17년, 93억/28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구급차 공급사업 (소액차관)(프로젝트, '15년-'17년, 19억/56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소방 설비 공급사업 (소액차관)(프로젝트, '15년-'17년, 19억/56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공공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트, '16년-'18년, 29억/959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에티오피아 모조 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프로젝트, '15년-'19년, 150억/1,11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에티오피아 솔루타-게브레 구라차 전력망구축사업(프로젝트, '13년-'16년, 60억/844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우간다 교육개선사업(프로젝트, '14년-'16년, 90억/290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잠비아 공공안전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트, '15년-'19년, 5억/46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탄자니아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 (프로젝트, '07년-'16년, 10억/171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말라가라시강 교량 및 연결 도로 건설사업(프로젝트, '09년-'16년, 3억/29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도도마시 상수도 확충사업 (프로젝트, '12년-'17년, 20억/54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말라가라시강 교량 및 연결 도로 건설사업(보충융자)(프로젝트, '12 년- 16년, 10억/328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 병원사 업(프로젝트, '11년-'17년, 80억/532 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프로젝트, '13년 -'17년, 780억/292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이링가-신앙가 송변전망 확 충사업(프로젝트, '12년-'18년, 50억 /42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잔지바르 관개시설 개선사 업(프로젝트, '14년-'19년, 90억/559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주민증데이터센터 건립사업 (프로젝트, '14년-'18년, 60억/587억, 계속)	Y	공공행정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아루샤 송전망 확충사업(프로젝트, '10년-'17년, 20 억/28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셀린더교량 건설사업(프로젝 트, '15년-'20년, 90억/1,018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마다가스카르 국가재해관리센터 구축사업(프로젝트, '16년-'17년, 70 억/336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가나 Prestea-Kumasi 전력 강화사업 (프로젝트, '15년-'18년, 165억/752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가나 Wa 상수도 건설사업(프로젝트, '12년~'17년, 17억/614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말리 관개개발사업(프로젝트, '15년~'19년, 52억/24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말리 정부행정망개발사업(프로젝트, '11년~'18년, 30억/450억, 계속)	Y	공공행정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시 복합행정센터 건립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12 억/615억, 계속)	Y	공공행정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앙골라 치안강화사업(프로젝트, '14 년~'19년, 112억/498억, 계속)	Y	공공행정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카메룬 가루아 종합병원 건립사업 (프로젝트, '15년~'19년, 130억/643 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콩고민주공화국 렘바임부 상수도사업 (프로젝트, '14년~'18년, 110억/760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이집트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사 업(프로젝트, '16년~20년, 50억 /1,286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세네갈 해상인프라 구축사업 (2차) (프로젝트, '16년~'19년, 24억/81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코트디부아르 국립암센터 건립사업 (프로젝트, '16년~20년, 30억/746억, 신규)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아제르바이젠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 (프로젝트, '15년~'17년, 75억/246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아제르바이젠 피르사기 하수처리장 건립사업(프로젝트, '15년~'18년, 50 억/487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우즈베키스탄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트, '15년~'19년, 20 억/168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건립사업 (프로젝트, '15년~'19년, 140억/1,151 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우즈베키스탄 국립전자도서관 구축사 업(프로젝트, '15년~'17년, 50억/161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2차사업 (프로젝트, '16년~'19년, 50억/369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니카라과 재생에너지 송변전사업 (프로젝트, '12년~'15년, 85억/293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니카라과 재생에너지 송변전사업(2 차)(프로젝트, '15년~'18년, 70억/537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니카라과 직업훈련소 확충사업(2차) (프로젝트, 10년~'16년, 11억/251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니카라과 후이갈과 하수처리사업 (프로젝트, '15년~'19년, 119억/742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니카라과 브로드밴드구축사업(프로젝 트, '16년~20년, 8억/27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니카라과 지방 재생에너지 공급사업 (프로젝트, '16년~'19년, 24억/281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파라과이 아순시온 공공버스 개선사 업(프로젝트, '16년~'19년, 18억/594 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 관리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트, '13년~'18년, 50 억/280억, 계속)	Y	공공행정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볼리비아 바네가스 교량 건설사업(프 로젝트, '12년~'17년, 80억/446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 사업(프로젝트, '15년~'18년, 110억 /76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온두라스 농촌태양광전력화사업(프로 젝트, '14년~'19년, 90억/50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온두라스 출루테카 병원 건립사업(프로 젝트, '12년~'16년, 60억/369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요르단 암만남부 하수처리사업(2차) (프로젝트, '11년~'17년, 83억/488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억, 계속)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립사업(보충 융자) (프로젝트, '15년~'17년, 47억 /143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요르단 나우르페수처리사업(보충 융자) (프로젝트, '16년~'18년, 10억 /324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인도네시아 경찰청 고속순시선 공급 사업(프로젝트, '15년~'17년, 53억 /392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인도네시아 경찰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프로젝트, '14년~'17년, 3억/447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인도네시아 바탐하수처리시설 구축사 업(프로젝트, '15년~'18년, 86억/559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인도네시아 카리안담건설사업(프로젝 트, '13년~'17년, 68억/1,11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 업(프로젝트, '12년~'17년, 125억 /627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사마르 해안도로 사업(프로젝 트, '15년~'18년, 60억/23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팜팡가지역 통합재난저감 및 기후변화대응사업(프로젝트, '15 년~'19년, 83억/9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개선 사업(프로젝트, '09년~'17년, 244억 /77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2단계) (프로젝트, '12년~'18년, 204억/2,325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세부 신항만건설사업(프로젝트, '16년~'20년, 58억/1,945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팜일교량 건설사업(프로젝트, '16년~'19년, 34억/1,145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민간협력차관(프로젝트, '15년~계속, 30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유상	양자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프로젝트, '15년~계속, 110억/500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WB) (민관협력, '12년~'16년, 30.9억/1,824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녹색성장기금(WB) (민관협력, '12년~'19년, 125.4억/10,032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초급전문가JPO파견(WB) (민관협력, '10년~계속, 3.4억/3.4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한·WB 협력기금(WB)(민관협력, '13년~계속, 342억/10,26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재정혁신협력기금(IDB)(민관협력, '12년~'16년, 92.9억/456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한-아프리카경제협력기금(AfDB) (민관협력, '07년~계속, 91.2억/171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다자
	기술협력자문기금(EBRD) (민관협력, '07년~계속, 34.2억/34.2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초기체제지원국 지원기금(EBRD)(민관협력, '09년~계속, 11.4억/11.4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e-Asia기금(ADB) (민관협력, 계속, 171억/171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다자
교육부	한·IMF 기술협력기금 (민관협력, '13년~'17년, 34.2억/182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에티오피아 아다마공대 학과 신설 및 초등교육 역량강화 사업(민관협력, '12년~'17년, 1.20억/21.00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캄보디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민관협력, '12년~'17년, 1.20억/20.00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스리랑카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간호학과 학위과정 구축 및 지역 보건 의료역량강화 프로그램(민관협력, '13년~'17년, 4.25억/18.00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새마을운동 정신의 교육과 세계화(민관협력, '13년~'17년, 4.25억/18.00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네팔 특수교사 양성고 기초교육 역량강화 사업(민관협력, '14년~'18년, 4.25억/18.00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교육부	국립후예대학교 간호대학 역량 강화 및 응급의료교육시스템 구축(민관협력, '14년~'18년, 4.25억/18.00억, 계속)	Y	보건의료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한-이집트 공동대학 설립사업(민관협력, '16년~'20년, 4.25억/16.00 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과대학 아 카데미 환경보건과학과 신설 및 역량 강화(민관협력, '16년~'20년, 4.26억 /16.00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인도네시아 세나타 다마 대학교의 화 학교육과 설치 및 지역사회 공헌(민관 협력, '16년~'20년, 4.26억/16.00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글로벌교육 지원(민관협력, '06년~계 속, 8.05억/62.05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다문화가정대상국가교사교류지원(민 관협력, '12년~계속, 24.36억/85.28 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프 로젝트, '16년~'18년, 13.00억/93.00 억, 신규)	Y	교육	프로젝트		무상	양자
	글 로 벌 코 리 아 스 칼 라 십 (연수생 초 청, '65년~계속, 378.20억/4,138.50 억, 계속)	Y	교육	연수생초청		무상	양자
	개발도상국 기초교육향상지원사업(민 관협력, '13년~계속, 47.86억/23.06 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지원 (페루) (프로젝트, '16년~'19년, 6.25억 /25.00억, 신규)	Y	교육	프로젝트	중남미	무상	양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지원 (라오 스)(프로젝트, '16년~'19년, 6.25억 /25.00억, 신규)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지원(우즈베 키스탄)(프로젝트, '15년~'18년, 1.48 억/6.50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지원 (베트 남)(프로젝트, '15년~'18년, 1.48억 /6.50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교육부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지원 (스리랑카)(프로젝트, '14년~'17년, 0.38억/8.33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지원 (파라과이)(프로젝트, '14년~'17년, 0.38억/8.33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중남미	무상	양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지원(아제르바이잔)(프로젝트, '13년~'16년, 0.50억/9.56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지원 (캄보디아)(프로젝트, '13년~'16년, 0.50억/9.56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슬라스쿨활용 교육 지원(민관협력, '13년~계속, 3.84억/4.59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아세안대학 이러닝지원(프로젝트, '12년~계속, 16.54억/71.88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이러닝세계화(민관협력, '06년~계속, 21.15억/239.61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유네스코 유니트윈사업(민관협력, '10년~계속, 16.82억/40.00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아프리카 희망브릿지(프로젝트, '13년~계속, 5.47억/15.00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아태지역저개발국ICT활용 교육지원(프로젝트, '13년~계속, 2.67억/11.00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통과 통합 증진을 위한 교육 협력사업(프로젝트, '15년~계속, 6.84억/21.00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아프리카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프로젝트, '15년~계속, 23.77억/67.00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보건 복지부	아프리카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프로젝트, '11년~계속, 14.93억/171.20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캄보디아 통합모자보건증진사업(프로젝트, '11년~'16년, 20.00억/105.80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필리핀 결핵관리사업(프로젝트, '11년~'16년, 10.00억/52.00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연수생초	Y	기타	연수생초청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보건 복지부	청, 단년도, 38.00억/45.00억, 계속)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제고사업(스리랑카)(민관협력, 단년도, 1.17억/2.0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제고사업(탄자니아)(민관협력, 단년도, 1.17억/2.0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신규사업 개발연구 및 타당성조사 사 업 (민관협력, 단년도, 1.60억/1.8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가나 모자보건증진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협력사업(프로젝트, '13년~'18 년, 12.00억/88.00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남수단 모자보건증진, 결핵관리, 의과 대학병원 지원 사업(프로젝트, '13 년~'18년, 5.00억/110.00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우즈베키스탄 의료시설건립운영유무 상연계사업(프로젝트, '14년~'19년, 8.00억/70.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몽골의료시설건립운영 유무상 연계사 업(프로젝트, '15년~'19년, 1.80억 /71.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탄자니아 의료시설건립운영 유무상 연계사업(프로젝트, '13년~'19년, 4.20억/52.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모잠비크 의료시설건립운영 유무상 연계사업(프로젝트, '13년~'19년, 3.10억/31.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베트남 의료시설건립운영 유무상 개 발건설팅 연계사업(프로젝트, '13 년~'19년, 3.15억/31.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에티오피아 통합모자보건 증진 및 건 강보험제도 협력사업(프로젝트, '14 년~'19, 10.00억/82.00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미얀마 1차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프 로젝트, '14년~'19년, 10.00억/87.00 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에티오피아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구축사업(프로젝트, '15년~'20년, 8.00억/80.00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라오스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Y	보건의료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보건 복지부	(민관협력, '16년~'21년, 20.00억/150.00억, 신규)						
	탄자니아 모자보건증진 및 지역보건 의료체계 강화사업(프로젝트, '16년~'21년, 4.00억/80.00억, 신규)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_한의학해외 공공보건사업(전문 인력/봉사단, 3.96억, 신규)	Y	보건의료	전문 인력/봉사단		무상	양자
	WHO 사업 분담금 지원(프로젝트, 19.73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WPRO 전략사업 추진(프로젝트, 26.74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WHO 전통의학활성화지원(프로젝트, 5.70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감염병 관리 국제부담금(프로젝트, 25.00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분담금(민관협력, 0.9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국제적십자위원회분담금(민관협력, 3.52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WHO 의무분담금 납부(민관협력, 81.46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NHIV/AIDSGlobalFund 기여금 (민관협력, 20.6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국제암연구소분담금 (민관협력, 7.3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분담금 (민관협력, 2.03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유엔연구기금 분담금 (민관협력, 1.15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국제백신연구소 지원(민관협력, '97년~계속, 57.00억/639.0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농림축산 식품부	라오스 시엥쿠앙주 관개시설설치사업 (프로젝트, '12년-16년, 15.60억/44.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미얀마 농촌개발 및 영농기술전수사업 (프로젝트, '13년-'16년, 6.65억/28.00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농림축산 식품부	억, 계속)						
	필리핀 MIC사업지구 농촌개발사업(프로젝트, '15년-'17년, 8,00억/27.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역량 강화 지원 사업 (프로젝트, '14년-'17년, 8.79억/28.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카메룬 벼재배단지를 활용한 교육 연구단지 조성사업(프로젝트, '14년-'18년, 6.00억/30.00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모잠비크 영농기술보급 및 농업생산성 증대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5.00억/27.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르완다 사료생산 및 수확후처리 지원 사업(프로젝트, '15년-'19년, 5.00억/43.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가나 아쿠마단 농촌개발 및 채소단지 관개사업(프로젝트, '15년-'17년, 6.00억/37.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라오스 쌍통곤 농촌개발 및 영농기계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프로젝트, '15년-'18년, 9.00억/45.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캄보디아 쌀산업 발전을 위한 건조 저장시설구축사업(프로젝트, '15년-'18년, 7.00억/30.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미얀마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건조 저장시설구축사업(프로젝트, '16년-'19년, 6.00억/38.00억, 신규)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우즈베키스탄 시설농업지원 및 기술 개발 컨설팅 전수사업(프로젝트, '16년-'19년, 3.05억/40.00억,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에티오피아 하라리주 관개시설구축사업(프로젝트, '16년-'18년, 5.30억/35.00억, 신규)	Y	농림수산	전문인력/봉사단	아프리카	무상	양자
	볼리비아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기술 전수사업(프로젝트, '16년-'19년, 5.00억/40.00억, 신규)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중남미	무상	양자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농정 성과 확산 사업(민관협력, '16년, 3.78억/3.78억, 신규)	Y	농림수산	민관협력		무상	양자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농정 성과 확산 사업(민관협력, '16년, 3.79억/3.79	Y	농림수산	민관협력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농림축산 식품부	역, 신규)						
	개도국 식량인보를 위한 농정 성과 확산 사업(민관협력, '16년, 4.43억/4.43억, 신규)	Y	농림수산	민관협력		무상	양자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연수(연수생 초청, '06년-계속, 1.10억/1.28억, 계속)	Y	교육	연수생초청		무상	양자
	식물검역 국제기준 아시아지역 워크숍개최(민관협력, '06년-계속, 0.71억/0.72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개도국 국경검역시스템 구축지원(프로젝트, '16년, 0.49억/0.49억, 신규)	Y	농림수산	프로젝트		무상	양자
	몽골동물질병관련 자료관리 및 방역 기술지원 사업(프로젝트, '16년-'20년, 1.18억/5.90억, 신규)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안전성관련관계관 초청연수(연수생초청, '11년-계속, 0.69억/0.75억, 계속)	Y	교육	연수생초청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아시아 중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연수생초청, '08년-계속, 0.83억/0.83억, 계속)	Y	교육	연수생초청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미얀마 중자품질 인증기술 역량강화 사업(프로젝트, '15년-'17년, 3.36억/10.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베트남 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 구축(프로젝트, '16년, 3.00억/6.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인도네시아 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 구축(프로젝트, '16년, 3.00억/6.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축산물이력제 역량강화 사업(연수생초청, '15년-'17년, 0.78억/2.27억, 계속)	Y	교육	연수생초청		무상	양자
	축산물품질평가 향상 특화연수(연수생초청, '14년-'16년, 0.78억/2.20억, 계속)	Y	교육	연수생초청		무상	양자
	동남아 식물검역 병해충 예찰조사 총사업기간 능력개발(프로젝트, '13년-'16년, 3.26억/19.26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아프리카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한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농림축산 식품부	능력개발 및 우수사례교환(프로젝트, '14년-'17년, 7.00억/20.00억, 계속)						
	개도국 조류독감 대응능력 제고사업 (프로젝트, '15년-'18년, 7.74억/30.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무상	양자
	ICT를 활용한 농업기술지도 및 가격 정보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트, '16년-'19년, 5.00억/20.00억, 신규)	Y	농림수산	프로젝트		무상	양자
	남태평양 주요 도서국 농림수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프로젝트, '15년-'18년, 5.00억/20.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타당성조사(민관협력, '11년-계속, 3.00억/3.0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사후관리 및 평가(민관협력, '11년-계속, 2.60억/3.25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사업관리(민관협력, '11년-계속, 6.56억/7.0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분담금(민관협력, '49년-계속, 28.76억/110.57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분담금(민관협력, '78년-계속, 30.90억/30.9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세계식량계획(WFP) 분담금(민관협력, '81년-계속, 1.03억/1.03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농촌 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베트남)(민관협력, '09년-계속, 6.20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캄보디아)(민관협력, '09년-계속, 7.63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필리핀)(민관협력, '09년-계속, 8.25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미얀마)(민관협력, '10년-계속, 3.36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우즈베키스탄)(민관협력, '10년-계속, 3.33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농림축산 식품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태국)(민관협력, '12년-계속, 2.66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스리랑카)(민관협력, '12년- 계속, 8.65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케냐)(민관협력, '09년-계속, 9.12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라오스)(민관협력, '16년-계 속, 5.00억, 신규)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에티오피아)(민관협력, '10 년-계속, 3.50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알제리)(민관협력, '11년-계 속, 2.71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파라과이)(민관협력, '09년- 계속, 9.10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브라질)(민관협력, '09년-계 속, 0.39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볼리비아)(민관협력, '11년- 계속, 3.87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에콰도르)(민관협력, '12년- 계속, 3.76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짐바브웨)(민관협력, '16년- 계속, 5.00억, 신규)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우간다)(민관협력, '13년-계 속, 2.34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세네갈)(민관협력, '13년-계 속, 2.66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중앙아시아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농림축산 식품부	협력사업(몽골)(민관협력, '13년-계속, 3.06억, 계속)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도미니카공화국) (민관협력, '13년-계속, 2.67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프로젝트, '10년-계속, 23.9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운영(프로젝트, '11년-계속, 33.29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한-중남미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운영 (프로젝트, '14년-계속, 10.4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중남미	무상	양자
	RDA 연수생연합체 기술지원 사업 운영 (민관협력, '06년-계속, 2.43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무상	양자
	아태식량비료기술센터(FFTC) 분담금 지원(민관협력, '06년-계속, 0.41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제기관기구분담금(아시아채소연구 개발센터(AVRDC) 분담금지원)(민관 협력, '06년-계속, 0.52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제기관기구분담금(유엔아태경제이사회위원회(UNESCAP) CAPSA 및 CSAM 분담금지원)(민관협력, '06년-계속, 0.31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제기관기구분담금(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농약작업반 및 트랙터 시험 코드 분담금지원)(민관협력, '08년-계속, 0.26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국제기관기구분담금 (아태 농업연구 기관협의회(APAARI)분담금지원)(민관협력, '01년-계속, 0.1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제기관기구분담금(국제농업연구자문단(CGIAR)분담금)(민관협력, '91년-계속, 3.19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산림청	몽골그린벨트 조림사업(프로젝트, '07년-'16년, 20.07억/138.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민간 사막화방지 조림 지원 사업(프로젝트, '07년-, 2.50억/2.5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산림청	개도국 열대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술지원(민관협력, '09년-, 6.40억/6.4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한-인도네시아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협력사업(프로젝트, '15년-'18년, 3.20억/ 26.3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메콩 강 유역 산림협력센터 운영(캄보디아)(프로젝트, '16년-'20년, 2.00억/25.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유라시아 산림 협력사업(프로젝트, '16년-'17년, 15.00억/29.6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CIFOR 의무분담금 지원(프로젝트, 2.24 억/2.06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이행(프로젝트, 5.16억/12.00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FAO 협력사업(프로젝트, 3.00억/3.00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ITTO 사업 부담금(프로젝트, 4.10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IUCN 국제 부담금(프로젝트, 0.11억/0.10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민관협력, 43.00억/54.0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다자
	창원이니셔티브이행(민관협력, 20.00억/20.0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산업통상 자원부	ITTO 의무분담금(민관협력, 3.00억/3.0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우즈벡섬유 테크노파크 조성(프로젝트, '15년-'19년, 40.40억/250.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베트남 농기계 개량시범보급(프로젝트, '15년-'18년, 16.00억/155.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우즈벡농기계 R&D센터 조성(프로젝트, '16년-'18년, 11.00억/100.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에티오피아 섬유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사업(민관협력, '16년, 4.00억/2.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산업통상 자원부	콜롬비아 수처리시설및 수처리 테크노 파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민 관협력, '16년, 4.00억/2.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산업개발협력기획 (민관협력, '16년, 6.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한-베트남 소재부품협력(민관협력, '12년-'19년, 20.00억/150.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한-베트남 산업인력양성(연수생초청, '12년-'16년, 13.00억/60.00억, 계속)	Y	교육	연수생초청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글로벌 산업기술나눔(TASK)(민관협 력, '16년-계속, 6.5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권역별 정책컨설팅지원사업(민관협력, '08년-계속, 2.00억/11.6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권역별 정책컨설팅지원사업(민관협력, '08년-계속, 1.80억/28.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권역별 정책컨설팅지원사업(민관협력, '08년-계속, 0.90억/15.6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권역별 정책컨설팅지원사업(민관협력, '08년-계속, 0.90억/15.6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권역별 정책컨설팅지원사업(민관협 력, '13년-계속, 2.00억/5.73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권역별 정책컨설팅지원사업(민관협 력, '12년-계속, 1.80억/7.2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국제기구협력사업(민관협력, '13년-계 속, 2.00억/5.5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국제기구협력사업(ACE)(민관협력, '08년-계속, 2.50억/25.6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국제기구협력사업(민관협력, '12년-계 속, 2.00억/10.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국제기구협력사업(민관협력, '12년-계 속, 2.50억/8.5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온실가스감축프로젝트 지원 사업(민 관협력, '11년-계속, 8.00억/11.99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캄보디아의 법정계량 제도 선진화(민 관협력, '15년-'19년, 3.80억/5.5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라오스의 국가인정제도 선진화 지원 (민관협력, '15년-'19년, 1.65억/5.50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산업통상 자원부	베트남 법정계량제도 선진화(민관협력, '13년-'17년, 0.30억/3.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페루의법정계량제도및제품안전제도 구축(민관협력, '16년-'20년, 1.50억/7.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파라과이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지원(민관협력, '16년-'20년, 3.90억/7.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국제자문문화위원회 분담금(민관협력, '54년-계속, 0.51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민관협력, '61년-계속, 14.12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경기도	개도국 공무원 역량강화 초청연수(연수생초청, '16년, 6.50억/5.00억, 신규)	Y	교육	연수생초청		무상	양자
	개도국 인프라 지원 (프로젝트, '16년, 18.50억/20.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무상	양자
충청 남도	새마을 해외봉사단 운영(전문 인력/봉사단, '10년-'18년, 1.94억, 계속)	Y	기타	전문 인력/봉사단		무상	양자
경상 남도	개도국 공무원 초청 새마을연수(연수생초청, '14년-'16년, 2.00억/9.00억, 계속)	Y	교육	연수생초청		무상	양자
	짐바브웨병원건립(2016년 보건 의료인력 연수)(연수생초청, '15년-'16년, 1.00억/2.00억, 계속)	Y	교육	연수생초청	아프리카	무상	양자
	모자보건 감염관리 가정용 제대관리용품지원 계획(민관협력, '15년-'16년, 0.15억/0.30억, 계속)	Y	보건의료	민관협력		무상	양자
	"world friends PC" 지원 사업(민관협력, '15년-'16년, 0.15억/0.3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자매도시 몽골항울구 농업기술 현지지도 교육(전문 인력/봉사단, '15년-'16년, 0.11억/0.11억, 신규)	Y	교육	전문 인력/ 봉사단	중앙아시아	무상	양자

다. 2017년

〈표 61〉 2017 주요 부처 및 지자체의 구체적 현황¹⁷⁷⁾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가나와의 경제발전경험공 유사업(KSP)(민관협력, '17년-'18년, 3.80억/3.8 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멕시코와의 경제발전 경 험공유사업(KSP) (민관협 력, '17년-'18년, 4.80억 /4.8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몽골과의 경제발전경험공 유사업(KSP) (민관협력, '17년-'18년, 3.20억/3.20 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미얀마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민관협력, '17년-'18년, 6.40억/6.40 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 태평양	무상	양자
	스리랑카와의 경제발전경 험공유사업(KSP) (민관협 력, '17-'18년, 3.20억 /3.2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 태평양	무상	양자
	에콰도르와의 경제발전경 험공유사업(KSP) (민관협 력, '17년-'18년, 3.80억 /3.8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엘살바도르와의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 (민관 협력, '17년-'18년, 3.80억 /3.8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온두라스와의 경제발전경 험공유사업(KSP) (민관협 력, '17년-'18년, 4.80억 /4.8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이집트와의 경제발전 경 험공유사업(KSP) (민관협 력, '17년-'18년, 4.90억 /4.9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17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https://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ItSIPL.do?brd_seq=24&bltn_div=oda (접속일: 2017.4.14.) 자료 등에 대하여 연구진이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임.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인도네시아와의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 (민관협력, '17년-'18년, 3.80억/3.8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케냐와의 경제발전경험공 유사업(KSP) (민관협력, '16년-'18년, 4.50억/15.5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콜롬비아와의 경제발전경 험공유사업(KSP) (민관협력, '17년-'18년, 4.80억/4.8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키르기스스탄과의 경제발 전경험공유사업(KSP) (민관협력, '17년-'18년, 3.90억/3.9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태국과의 경제발전경험공 유사업(KSP) (민관협력, '17년-'18년, 4.70억/4.7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라오스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민관협력, '17년-'18년, 3.90억/3.9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쿠바와의 경제발전경험공 유사업(KSP) (민관협력, '16년-'18년 5.00억 /15.0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사업진행컨설팅(EDCF) (프로젝트, 138.89억, 계 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경제협력기반구축(EDCF) (민관협력, 33.68억, 계 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기금운영비(EDCF) (민관 협력, 153.83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세계관세기구(WCO) 개발도상국 관세공무원 능력배양 사업(민관협력, '12년-계속 7.1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UN ESCAP 개발도상국간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무역협정(APTA) 발전 및 개도국 무역투자 프로젝 트에 대한 협력기금 출연 (민관협력, '13년-계속, 2.44억, 계속)						
	앙골라 산업고등기술센터 건립사업 (프로젝트, '16년-'18년 56억/412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앙골라 치안강화사업 (프 로젝트, '14년-'17년, 73 억/498억, 계속)	Y	공공행정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아제르바이젠 직업훈련센 터 건립사업 (프로젝트, '15년-'18년 700억/260 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아제르바이젠 피르샤기 하수처리장 건립사업 (프로젝트, '15년-'17년, 128억/514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비비야나-칼 리아코 송전망 개발사업 (프로젝트, '10년-'17년 23억/1,09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다카 상수도 개발사업 (프로젝트, '13년 -'17년 59억/46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철도신호시스 템 현대화사업 (프로젝트, '13년-'18년 46억/252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해상안전운항 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 트, '14년-'18년 50억/443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광대역 무선 통신망 구축사업(프로젝 트, '15년-'18년 95억/910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반달주리 상 수도 개발사업(프로젝트, '16년-'19년, 9억/1,146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방글라데시 BSM 의대 종합전문센터병원 건립사 업(프로젝트, '16년-'20년 92억/1,547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디지털 토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프로젝트, '16년-'20년, 4 억/424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철도차량(객 차) 구매사업(프로젝트, '17년-'18년, 12억/1,194 억,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방글라데시 철도차량(기 관차) 구매사업(프로젝트, '17년-'19년, 12억/1,075 억,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볼리비아 바네가스 교량 건 설사업(프로젝트, '12년 -'17년, 77억/446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코트디부와르 국립암센터 건립사업(프로젝트, '16년 -'19년, 13억/1,304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카메룬 가루아 종합병원 건 립사업(프로젝트, '15년 -'18년, 79억/679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 관리시스템 구축사업(프로 젝트, '13년-'16년, 1억 /28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콩고민주공화국 렘바 임 부 상수도 사업(프로젝트, '14년-'18년, 72억/803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프로젝 트, '15년-'19년, 94억 /803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이집트 철도 전자연동시 스템 구축사업(프로젝트, '16년-'20년, 159억/1,359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에티오피아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 (프로젝트, '16년-'19년, 123억/1,182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가나 Wa 상수도 건설사업 (프로젝트, '12년-'16년, 32억/614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가나 Prestea-Kumasi 전 력 강화 사업(프로젝트, '15년-'17년 166억/753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온두라스 출루테카 병원 건립사업(프로젝트, '12년 -'18년 48억/390억, 계속)	Y	의료보건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온두라스 농촌 태양광 전 력화사업(프로젝트, '15년 -'17년 61억/52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 도로 확장사업(프로젝트, '12-'17년, 3억/627억, 계 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인도네시아 카리안암 건 설사업(프로젝트, '13년 -'19년 168억/1,09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인도네시아 바탐 하수처 리시설 구축사업(프로젝 트, '15년-'19년, 82억 /59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인도네시아 경찰청 고속 순시선 공급사업 (프로젝트, '15년-'18년, 60억/414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요르단 나우르 폐수처리 사업(프로젝트, '08년-'18 년, 65억/514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요르단 암만 남부 하수처 리 사업(2차) (프로젝트, '11년-'17년, 88억/488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요르단 나우르 폐수처리 사업(보충융자) (프로젝트, '16년-'18년, 87억/355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캄보디아 21번 국도 개보 수사업(프로젝트, '13년 -'17년, 77억/58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살라톤담 개발 사업(프로젝트, '15년-'19 년, 115억/433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다운트리엠 개발 사업(프로젝트, '16년-'21 년, 117억/552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2번 22번 국도 개보수 사업(프로젝트, '16년-'20년, 24억/663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 사업 2차(프로젝트, '15년 -'19년, 77억/485억, 계 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48번 국도 개보 수 사업 (프로젝트, '16년-'20년, 12억/797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시엠립 하천 정비사업 2차 (프로젝트, '16년-'19년, 4억/157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라오스 GMS 북부 송전사 업(프로젝트, '12년-'17년, 99억/436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라오스 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트, '12년 -'17년, 65억/337억, 계 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라오스 사반나켓주 농촌 종합개발사업(프로젝트, '16년-'20년, 91억/554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프로젝트, '15년-'19년, 140억/95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라오스 참파삭주 메콩 강변 종합관리사업 (프로젝트, '16년-'20년, 89억/627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마다가스카르 국가재해관리센터 구축사업(프로젝트, '16년-'17년, 130억/35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말리 관개개발사업(프로젝트, '16년-'18년, 36억/25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말리 정부행정망 개발사업(프로젝트, '11년-'16년, 5억/45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몽골 국립의료원 건립사업(프로젝트, '14년-'18년, 70억/650억, 계속)	Y	의료보건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모잠비크 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확충사업(프로젝트, '11년-'16년, 2억/28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교육개선사업(프로젝트, '14년-'16년, 5억/199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마푸토 위생 매립장 건립사업(프로젝트, '15년-'17년, 67억/57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남폴라나 메틸 도로 건설사업(프로젝트, '15년-'18년, 95억/89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켈리만 중앙병원 건립사업(보충융자)(프로젝트, '15년-'16년, 72억/280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소방 설비 공급사업(소액차관)(프로젝트, '16년-'18년, 7억/59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모잠비크 구급차 공급 사업 (소액차관) (프로젝트, '16년 -'18년, 7억/59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모잠비크 공공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프로젝트, '17년-'19년, 121억/1,048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미얀마 500kV Taungoo- Kamanat 송전망 구축사업 (프로젝트, '16년-'20년, 124억/1,182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미얀마 IT 인프라네트워크 구축사업(프로젝트, '15년 -'17년, 237억/66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미얀마 철도현대화 사업 (프로젝트, '16년-'18년, 93억/532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미얀마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프로젝트, '16년-'21년, 113억/1,629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미얀마 뚝따 운하 개선사 업(프로젝트, '17년-'22년, 31억/724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니카라과 재생에너지 송변 전사업(프로젝트, '12년-'16 년, 20억/293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니카라과 재생에너지 송변 전사업(2차)(프로젝 트, '15년-'18년, 65억/567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니카라과 후이갈파 하수처 리사업(프로젝트, '16년-'18 년, 82억/784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유상	양자
	파키스탄 말라칸드 터널 건 설사업(프로젝트, '16년-'18 년, 103억/922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파키스탄 신드주 아동병원 건립사업(프로젝트, '16년 -'19년, 127억/544억, 계속)	Y	의료보건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파키스탄 45번 국도(캘카 탁-치트랄) 개선·확장사 업(프로젝트, '16년-'20년, 52억/1,108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 사 공항개선사업(프로젝 트, '13년-'17년, 46억 /77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사마르 해안도로 사업(프로젝트, '16년-'20 년, 42억/244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프로젝트, '13 년-'21년, 390억/2,457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팜팡가지역 통합재 난위험감축 및 기후변화 적 응사업(프로젝트, '16년 -'21년, 78억/95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필리핀 팡알만 교량 건설 사업(프로젝트, '16년-'20 년, 103억/1,183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르완다 국립대학교 건립 사업(프로젝트, '15년-'19 년, 66억/606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세네갈 해상인프라 구축 사업 (2차) (프로젝트, '16년-'19년, 7 억/1,042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시 복합행정센터 건립사업 (프로젝트, '14년-'19년, 112억/650억, 계속)	Y	공공행정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스리랑카 고체폐기물 매 립장 건립사업 (프로젝트, '16년-'20년, 14억/396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스리랑카 콜롬보 중앙 직업훈련 및 감파하 고등 기술센터 건립사업 (프로젝트, '14년-'19년, 67억/308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스리랑카 데두루 오아 상 수도 사업(프로젝트, '16 년-'19년, 162억/687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스리랑카 루완웰라 상수도 사업(프로젝트, '16년-'19 년, 58억/243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 대학 병원사업(프로젝트, '11년-'16년, 26억/532억, 계속)	Y	의료보건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이링가-신앙가 송변전망 확충사업(프로 젝트, '12년-'16년, 36억 /42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 학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 업(프로젝트, '13년-'16년, 20억/292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잔지바르 관개 시설 개선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260억/591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주민증 데이터 센터 건립사업(프로젝트, '14년-'17년, 185억/587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탄자니아 샬린더 교량 건설 사업(프로젝트, '16년-'20 년, 277억/1,076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우간다 교육개선사업(AfDB) (프로젝트, '14년-'17년, 29억/290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우즈베키스탄 국가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 트, '15년-'18년, 14억 /177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 원 건립사업(프로젝트, '15년-'18년, 327억 /1,215억, 계속)	Y	의료보건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우즈베키스탄 국립전자도 서관 구축사업(프로젝트, '15년-'17년, 44억/17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2차사업(프로젝트, '16년 -'18년, 94억/39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베트남 티엔탄 상수도 사 업(2차)(프로젝트, '09년 -'17년, 97억/28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5개 지역 한베 직 업기술대학 건립사업 (프로젝트, '11년-'17년, 625억/389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비엠펙 하수도 건 설사업(프로젝트, '12년 -'17년, 92억/34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목짜우 상하수도 건설사업(프로젝트, '11년 -'17년, 33억/14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엔바이 종합병원 건립사업 (프로젝트, '11년-'17년, 109억/499억, 계속)	Y	의료보건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밤콩교량 건설사 업(프로젝트, '12년-'17년, 210억/2,258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다낭병원 핵의학, 방사선센터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프로젝트, '11년-'16년, 3 억/116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광빈성 태양광 발 전사업 (프로젝트, '12년-'17년, 65억/13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룡수옌시 하수처 리사업 (프로젝트, '13년-'18년, 106억/539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베트남 로페-락소이 고속 도로 건설사업 (프로젝트, '15년-'19년, 410억/2,363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흥옌시 폐수처리 시설 건설사업 (프로젝트, '14년-'18년, 48억/273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국립이비인후과병 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프로젝트, '16년-'17년, 62억/225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사업(프로젝트, '16년 -'19년, 15억/532억, 계 속)	Y	의료보건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흥화교량 건설사 업(프로젝트, '15년-'18년, 162억/1,34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밤공교량 접속 도 로 건 설 사 업 (프 로 제 트, '15년-'18년, 53억 /362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틴롱교량 건설사 업(프로젝트, '16년-'19년, 124억/544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짜빈상수도 건설 사업(프로젝트, '16년-'19 년, 8억/30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짜빈성 튜컨 종합 병원 앞 의료기 자재 공급 사업(프로젝트, '16년-'17 년, 28억/35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안지앙성 탄짜우 종합병원 앞 의료기자재 공급사업(프로젝트, '16년 -'17년, 28억/35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하이퐁시 산부인 과병원 의료기자재 공급 사업(프로젝트, '16년-'17 년, 28억/35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베트남 렌강 및 황마이강 수자원 개발사업(프로젝트, '17년-'20년, 12억 /909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호아빈성 락뚜이 종합병원 앞 의료기자재 공급사업(프로젝트, '17년 -'18년, 9억/35억,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하띤성 독토 종합 병원 앞 의료기자재 공급 사업(프로젝트, '17년-'18 년, 9억/35억,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쾄년시 메디컬센 터 앞 의료기자재공급사 업(프로젝트, '17년-'18년, 9억/35억,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벤째성 종합병원 건립사업(프로젝트, '17년 -'20년, 17억/740억, 신 규)	Y	의료보건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떠반-년짜도로 건 설사업 (프로젝트, '17년-'20년, 58억/2,257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베트남 소방방재청 재난 안전설비 개선사업 (프로젝트, '17년-'19년, 49억/236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잠비아 공공안전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 (프로젝트, '16년-'18년, 101억/49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민간협력차관 (프로젝트, '17년-'19년, 30억/30억,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유상	양자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 (프로젝트, '17년-'19년, 110억/110억, 신규)	Y	기타	프로젝트		유상	양자
	라오스, 현대식병원 건립 사업(프로젝트, '17년-'21 년, 35억/600억, 신규)	Y	의료보건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캄보디아, 감염병 전문병원 건축사업(프로젝트, '17년 -'21년, 6억/605억, 신규)	Y	의료보건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캄보디아, 타크마우 하수 처리 건축사업(프로젝트, '17년-'21년, 52억/986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유상	양자
	우즈베키스탄, 데이터센 터 건축사업(프로젝트, '17년-'21년, 58억/292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유상	양자
	우간다, ICT 영농정보화 사업(프로젝트, '17년-'22 년, 76억/763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유상	양자
	WB빈곤감축사회개발기 금(민관협력, '17년, 23억 /23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WB녹색성장기금 (민관협력, '16년-'19년, 138억/69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WB초급전문가파견 (민관협력, '17년, 4억/4 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WB한-WB협력기금 (민관협력, '16년-'18년, 345억/1,035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WB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 구축기금(민관협력, '17년 -'19년, 57억/345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ADBe-Asia지식협력기금 (민관협력, '17년, 172억 /172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다자
	AfDB한아프리카협력기금 (민관협력, '17년-'18년, 103억/207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다자
	EBRD기술자문협력기금 (민관협력, '17년, 34억 /34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EBRD체제지원국지원기 금(민관협력, '17년, 11억 /11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기획 재정부	IDB재정혁신협력기금 (민관협력, '17년, 103억 /1,035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IMF한-IMF기술협력기금 (민관협력, '13년-'17년, 35억/184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녹색기후기금 운영 지원 (민관협력, '17년, 132억 /132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교육부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캄보디아 지속가능 발전 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민 관협력, '12년-'18년, 1.00 억/18.20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스리랑카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간호학과 학 위과정 구축 및 지역 보건 의료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관협력, '13년-'18년, 1.00억/17.80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베트남_국립후에대학교 간호대학 역량 강화 및 응 급의료교육시스템 구축) (민관협력, '14년-'18년, 4.25억/16.56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베트남_국립후에대학교 간호대학 역량 강화 및 응 급의료교육시스템 구축) (민관협력, '14년-'18년, 4.25억/16.56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네팔 특수교사 양성과 기 초교육 역량강화 사업) (민관협력, '14년-'18년, 4.24억/16.24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한-이집트 국제협력선도 대학사업) (민관협력, '16 년-'20년, 4.24억/16.24 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교육부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과대학 아카데미 환경보건 과학과 신설 및 역량강화) (민관협력, '16년-'20년, 4.24억/16.24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국제협력 선도대학사업 (인도네시아세나타 다마 대학교의화학교육과 설치 및 지역사회 공헌) (민관협력, '16년-'20년, 4.24억/18.20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재료공학과 신설 및 지역 커뮤니티 교육 인프라 구축) (민관협력, '17년-'21년, 4.24억/16.24억, 신규)	Y	교육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몽골 간호학 및 보건복지 전공 교육역량 강화 및 지역 취약계층 돌봄 지원 사업) (민관협력, '17년-'21년, 4.24억/16.24억, 신규)	Y	교육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미얀마 식물 유전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보급) (민관협력, '17년-'21년, 4.24억/16.24억, 신규)	Y	교육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가나 볼타지역 보건의로 대학 역량강화 사업) (민관협력, '17년-'21년, 4.24억/16.24억, 신규)	Y	교육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글로벌 교육 지원(민관협력, '06년-계속, 8.05억/75.20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교원 해외파견 사업(민관협력, '13년-계속, 73.03억/145.61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교육부	글로벌코리아스칼라십 (민 관협력, '67년-계속, 413.77 억/4,511.01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민관협력, '12년 -계속, 24.36억/136.45 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이러닝 국제컨설팅) (민관협력, '06년-계속, 0.75억/19.64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선도교원 초청 연수 및 인프라 지원) (민관협력, '06년-계속, 13.34억/175.17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국제기구 및 다자간 이러 닝 협력 추진(민관협력, '06년-계속, 7.35억/65.95 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지원 (네팔) (프로 젝트, '17년-'20년, 6.85 억, 신규)	Y	교육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지원(페루) (프로 젝트, '16년-'19년, 1.48억 /6.55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중남미	무상	양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지원(라오스) (프로젝트, '16년-'19년, 1.48억/6.55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지원(우즈베키스 탄)(프로젝트, '15년-'18년, 0.375억/8.03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지원(베트남) (프로젝트, '15년-'18년, 0.375억/8.03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교육부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건축운영지원(필리핀) (민관협력, '17년, 0.14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건축운영지원(몽골) (민관 협력, '17년, 0.14억, 계 속)	Y	교육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건축운영지원(캄보디아) (민관협력, '17년, 0.14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건축운 지원(아제르바이 잔)(민관협력, '17년, 0.20 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건축운영지원(스리랑카) (민관협력, '17년, 0.16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건축운영지원(파라과이) (민관협력, '17년, 0.22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민관협력, '13년-계속, 4.84억/8.43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캄보디아)(프로젝트, '12 년-계속, 3.85억/22.11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아세안대학 이러닝지원 (라 오스)(프로젝트, '12년-계 속, 3.85억/22.11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아세안대학 이러닝지원 (미 얀마)(프로젝트, '12년-계 속, 3.85억/22.11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아세안대학 이러닝지원 (베트남) (프로젝트, '12년- 계속, 3.85억/22.11억, 계 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교육부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 (한동대) (민관협력, '10년- 계속, 16.04억/70.04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 (숙명여대) (민관협력, '16 년-계속, 3.32억/6.14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레 소토사업 (유네스코한국위 원회) (민관협력, '13년-계 속, 0.65억/3.08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르완 다 사업 (유네스코한국위 원회) (민관협력, '13년-계 속, 0.83억/4.12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말 라위 사업(유네스코한국위 원회) (민관협력, '13년-계 속, 0.52억/4.81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스와질란드 사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민관협력, '17 년, 1.21억/0.36억, 신규)	Y	교육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잠비 아 사업 (유네스코한국위원 회) (민관협력, '13년-계속, 0.54억/4.21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짐바 브웨 사업(유네스코한국위 원회) (민관협력, '13년-계 속, 0.48억/2.48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민관협력, '16년-계속, 10.00억/23.00억, 계속)	Y	교육	민관협력		무상	양자
	아태지역 저개발국 ICT활 용교육 지원 사업 (프로젝트, '17년-'20년, 3.45억/29.67억, 신규)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교육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 통과 통합증진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프로젝트, '15년 -'18년, 6.32억/22.85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아프리카 ICT 활용 교육혁 신 지원 사업(프로젝트, '15년-'17년, 16.10억/60.00 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 기술교육 지원 사업(2차) (프로젝트, '16년-'20년, 25.50억/132.00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보건 복지부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연수생초청, 단년도계속, 47.83억/47.83억, 계속)	Y	보건의료	연수생초청		무상	양자
	캄보디아 통합모자보건증 진사업(프로젝트, '11년 -'21년, 20.63억/133.00 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가나 모자보건증진 및 건 강보험제도 개선 협력사 업(프로젝트, '13년-'20년, 13.8억/104.00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에티오피아 통합모자보건 증진 및 건강 보험제도 협력사업(프로젝트, '14년 -'20년, 14.93억/106.00 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미얀마 1차보건 의료체계 강화사업(프로젝트, '14년 -'19년, 10.90억/96.00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라오스 보건의료서비스체 계 강화사업(민관협력, '16년-'21년, 20.90억 /165.00억, 계속)	Y	보건의료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탄자니아 지역보건 의료 체계 강화사업(프로젝트, '16년-'21년, 5.44억 /91.00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보건 복지부	베트남 의료시설 건립 운영 유무상연계사업 (민관협력, '13년-'19년, 3.15억/31.00억, 계속)	Y	보건의료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탄자니아 의료시설 건립 운영 유무상 연계 사업 (민관협력, '13년-'19년, 3.00억/52.00억, 계속)	Y	보건의료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모잠비크 의료시설 건립 운영 유무상연계 사업 (민관협력, '13년-'19년, 3.00억/31.00억, 계속)	Y	보건의료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우즈베키스탄 의료시설 건립운영 유무상연계사업 (프로젝트, '14년-'19년, 8.00억/70.00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몽골 의료시설 건립운영 유무상연계사업(프로젝트, '15년-'19년, 3.00억 /71.00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에티오피아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구축사업 (프로젝트, '15년-'20년, 8.00억/80.00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신규사업개발연구 및 타 당성조사사업(민관협력, 단년도계속, 1.60억/1.60 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스리 랑카)(프로젝트, 단년도계 속, 1.71억/1.71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필 리핀)(민관협력, 단년도계 속, 0.63억/0.63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남수단 결핵관리 역량강 화사업(프로젝트, '13년 -'18년, 0.50억/110.00억, 계속)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우간다 국가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사업(프로젝트, '17년-'21년, 2.00억 /18.00억, 신규)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무상· 무상	양자· 다자
보건 복지부	케냐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프로젝트, '17년-'19년, 3,00억/13,00억, 신규)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우간다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프로젝트, '17년-'21년, 5,27억/50,00억, 신규)	Y	보건의료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ODA운영비(민관협력, '17년-'21년, 25.5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WHO 사업 분담금 지원(프로젝트, '17년-'22년, 2.73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WPRO 전략사업 추진(프로젝트, 26.74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WHO전통의약활성화 지원(프로젝트, 단년도계속, 6,00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프로젝트, 단년도계속, 23.75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국제 인구보건복지연맹분담금(프로젝트, 단년도계속, 0.91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국제적십자위원회분담금(프로젝트, 단년도계속, 3.54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다자
	WHO 의무분담금 납부(민관협력, 단년도계속, 112.52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국제암연구소 분담금(민관협력, 단년도계속, 9.48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분담금(격년납부)(민관협력, 단년도계속, 격년납부,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유엔인구활동기금 분담금(민관협력, 1.16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글로벌펀드 기여금(민관협력, 19.57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국제백신연구소지원(민관협력, 단년도계속, 61.47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보건 복지부	사회복지 국제교류 및 협 력지원(민관협력, 단년도 계속, 2,62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농림축산 식품부	모잠비크 영농기술보급 및 농업생산성 증대사업 (프로젝트, '14년-'17년, 9.90억/27.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베트남 국립가축질병 진 단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 업(프로젝트, '14년-'17년, 12.00억/28.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르완다 사료생산 및 수확 후처리 기술 지원 사업 (프로젝트, '14년-'18년, 9.00억/43.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카메룬 벼재배단지를 활 용한 교육연구단지조성사 업(프로젝트, '14년-'18년, 7.00억/30.00억, 계속)	Y	교육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라오스 쌍통군 농촌개발 및 영농기계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프로젝트, '15년 -'18년, 14.00억/45.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캄보디아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건조저장시설구축사 업(프로젝트, '15년-'18년, 4.50억/30.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가나 아쿠마단 농촌개발 및 채소단지관개사업(프로 젝트, '15년-'18년, 9.69억 /37.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필리핀 MIC지구 농촌 개 발사업(프로젝트, '15년 -'18년, 11.00억/27.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미얀마 농업생산성 증대 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 사업(프로젝트, '16년-'19년, 10.00억/38.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우즈베키스탄 시설농업 지원 및 기술전수 사업 (프로젝트, '16년-'19년, 10.00억/40.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농림축산 식품부	에티오피아 하라리주 관 개시설 구축사업(프로젝 트, '16년-'19년, 8.00억 /35.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볼리비아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기술 전수사 업(프로젝트, '16년-'19년, 7.00억/40.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중남미	무상	양자
	에티오피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사 업(프로젝트, '17년-'20년, 1.60억/30.00억, 신규)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캄보디아 영농기술전수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사 업(프로젝트, '17년-'21년, 2.34억/40.00억, 신규)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에티오피아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전수사 업(프로젝트, '17년-'19년, 2.55억/16.00억, 신규)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우간다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 (프로젝트, '17년-'19년, 2.55억/16.00억, 신규)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타당성조사(민관협력, '11 년-계속, 3.0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사후관리 및 평가 (민관협력, '11년-계속, 3.25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사업관리(민관협력, '11년 -계속, 7.0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 성과확산 사업(네팔) (민관협력, '13 년-'18년, 3.85억/3.85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 성과확산 사업(우즈베키스탄) (민관 협력, '17년, 3.88억/3.88 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무상	양자·다자
농림축산 식품부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 성과확산 사업 (콜롬비아)(민관협력, '17년, 4.27억/4.27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연수(연수생초청, '06년-계속, 1.15억, 신규)	Y	교육	연수생초청		무상	양자
	식물검역국제기준아시아 지역 워크숍개최(민관협력, '06년-계속, 0.74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개도국 국경검역시스템 구축지원(프로젝트, '14년-계속, 0.54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무상	양자
	몽골동물질병관련자료 관리 및 방역 기술지원 사업(프로젝트, '14년-'20년, 1.65억/1.65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무상	양자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성 관련 관계관 초청연수(연수생초청, '11년-계속, 0.71억, 계속)	Y	교육	연수생초청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아시아 중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연수생초청, '08년-계속, 0.87억, 계속)	Y	교육	연수생초청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미얀마 중자품질 인증기술 역량강화 사업(프로젝트, '15년-'17년, 3.64억/10.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미얀마 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 구축(프로젝트, '14년-'17년, 3.00억/21.00억, 신규)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축산물이력제 역량 강화 사업(연수생초청, '15년-'17년, 0.80억/2.90억, 계속)	Y	교육	연수생초청		무상	양자
	축산물품질평가 향상 특화 연수(연수생초청, '14년-'17년, 0.75억/2.40억, 계속)	Y	교육	연수생초청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농림축산 식품부	아프리카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한 능력 개발 및 우수사례교환(프로젝트, '14년-'17년, 3.00억/20.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개도국 조류독감 대응능력 제고사업(프로젝트, '15년-'18년, 8.60억/30.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무상	양자
	ICT를 활용한 농업기술지도 및 가격정보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트, '16년-'19년, 5.00억/20.00억, 계속)	Y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		무상	양자
	남태평양 주요 도서국 농림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프로젝트, '15년-'18년, 5.00억/20.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분담금(민관협력, '49년-, 112.08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분담금(민관협력, '78년-, 30.71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세계식량계획(WFP) 분담금(민관협력, '81년-, 1.15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농촌 진흥청	베트남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센터협력사업(민관협력, '09년-계속, 8.55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캄보디아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센터협력사업(민관협력, '10년-계속, 8.55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필리핀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센터협력사업(민관협력, '10년-계속, 8.55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미얀마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센터협력사업(민관협력, '09년-계속, 4.14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농촌 진흥청	우즈베키스탄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센터협력사업(민관협력, '09년-계속, 5.51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태국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센터협력사업(민관협력, '12년-계속, 4.51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스리랑카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센터협력사업(민관협력, '12년-계속, 7.81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케냐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센터협력사업(민관협력, '09년-계속, 8.93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에티오피아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센터협력사업(민관협력, '11년-계속, 4.76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알제리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센터협력사업(민관협력, '10년-계속, 4.51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파라과이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센터협력사업(민관협력, '10년-계속, 8.18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볼리비아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센터협력사업(민관협력, '11년-계속, 4.88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에콰도르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센터협력사업(민관협력, '12년-계속, 4.14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우간다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센터협력사업(민관협력, '13년-계속, 4.51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농촌 진흥청	세네갈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센터협력 사업(민관협력, '13년-계속, 5.14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몽골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KOPIA) 센터협력사업(민관협력, '14년-계속, 4.51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도미니카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 사업(민관협력, '13년-계속, 2.93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라오스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 사업(민관협력, '16년-계속, 2.93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짐바브웨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 사업(민관협력, '16년-계속, 2.93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니카라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 사업(민관협력, '17년-계속, 3.18억, 신규)	Y	농림수산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아시아농식품협력협의체 운영(프로젝트, '10년-계속, 3.9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프로젝트, '11년-계속, 33.29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프로젝트, '14년-계속, 14.52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중남미	무상	양자
	RDA 연수생연합체 기술지원 사업 운영(민관협력, '06년-계속, 2.43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무상	양자
	국제기관기구분담금(국제농업연구자문단(CGIAR) 분담금) (민관협력, '91년-계속, 3.2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농촌 진흥청	국제기관기구분담금(아태 식량비료기술센터(FFTC) 분담금지원)(민관협력, '06 년-계속, 0.38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국제기관기구분담금(아시 아채소연구개발 센터 (AVRDC)분담금 지원)(민 관협력, '06년-계속, 0.45 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제기관기구분담금(유엔아 태 경 제 이 사 회 위 원 회 (UNESCAP) CAPSA 및 CSAM분담금지원) (민관협 력, '06년-계속, 0.34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제기관기구분담금(경제 개발협력기구(OECD)농약 작업반 및 트랙터시험코 드분담금 지원) (민관협력, '08년-계속, 0.3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국제기관기구분담금(아태 농업연구기관협 의회 (APAARI)분담금 지원) (민 관협력, '01년-계속, 0.12 억, 계속)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산림청	몽골그린벨트 조림사업(프 로젝트, '07년-, 20.07억 /20.07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민간 사막화방지 조림 지원 사업(프로젝트, '07년 -, 5.00억/5.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무상	양자
	개도국 열대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위 한 기술지원(민관협력, '09 년-, 6.40억/6.40억, 계속)	Y	농림수산	민관협력		무상	양자
	한-인도네시아 산림 휴양 및 생태관광 협력사업 (프로젝트, '15년-'18년, 15.20억/20.8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메콩강유역 산림협력센터 운영(프로젝트, '16년-, 4.00억/5.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산림청	유라시아 산림 협력사업 (프로젝트, '16년-, 8.62억 /15.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창원이니셔티브 이행(프로 젝트, '12년-, 20.00억 /20.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무상	양자
	FAO 협력사업(프로젝트, '11년-, 3.00억/3.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무상	양자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이행(프로젝트, '15년 -'20년, 5.16억/70.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무상	양자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 사업(프로젝트, '10년-, 43.00억/43.00억, 계속)	Y	농림수산	프로젝트		무상	양자
	ITTO 사업부담금(프로젝 트, '10년-, 4.10억/4.10 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ITTO 의무분담금(민관협 력, 3.00억/3.00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IUCN 국제분담금(프로젝 트, 0.11억/0.11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CIFOR 의무분담금지원 (프로젝트, 2.24억/2.24 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무상	양자
산업통상 자원부	우즈베키스탄 섬유 테크노 파크 조성 지원사업(프로 젝트, '15년-'19년, 61.94 억/189.4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우즈베키스탄 농기계R&D 센터 조성사업(프로젝트, '16년-'19년, 18.00억 /66.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베트남 농기계 개량, 시범 보급사업(프로젝트, '15년 -'18년, 22.50억/84.6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 기 술지원(태국)(민관협력, '16년-'18년, 1.00억/5.50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산업통상 자원부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원(인도네시아) (민관협력, '16년-'18년, 1.00억/5.5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원(미얀마) (민관협력, '17년-'19년, 1.50억/6.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원(이란) (민관협력, '17년-'19년, 1.50억/5.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원(페루) (민관협력, '16년-'18년, 1.50억/5.5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인도네시아 공작기계 테크 니컬센터 설립 지원사업 타당성조사(민관협력, '17년, 2.00억/2.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필리핀 금형기술지원 센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민관협력, '17년, 2.00억/2.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사업 행정비(민관협력, '17년, 6.00억, 신규)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양자
	페루 스마트 배전망 구축사업(프로젝트, '17년-'19년, 10.00억/30.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남미	무상	양자
	필리핀 배전송압 지원사업 (프로젝트, '17년-'18년, 20.00억/35.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몽골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지원(프로젝트, '17년-'18년, 20.00억/50.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에티오피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지원 (프로젝트, '17년, 27.00억/27.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아프리카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산업통상 자원부	한-베트남 소재부품협력 (민관협력, '12년-'19년, 15.50억/150.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한-베트남 산업인력양성 (연수생초청, '12년-'18년, 6.50억/69.00억, 계속)	Y	교육	연수생초청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개도국과의 적정기술 산업 협력 (민관협력, '17년- 3.0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 업 (에티오피아) (민관협 력, '15년-'17년, 1.50억 /5.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 업 (우즈베키스탄) (민관협 력, '08년-계속, 1.55억 /28.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 업 (인도네시아) (민관협 력, '08년-계속, 1.96억 /33.05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기후변화대응 개도국 협력 사업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페루) (민관협 력, '13년-계속, 1.85억 /5.73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 업 (스리랑카) (민관협력, '12년-계속, 1.55억/7.20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제기구협력사업 (이집트 세계은행 협력) (민관협력, '16년-계속, 2.00억/4.00 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국제기구협력사업(아세안 에너지센터 협력) (민관협 력, '08년-계속, 2.00억 /25.61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제기구협력사업(아시아 개발은행 협력) (민관협력, '16년-계속, 2.00억/4.00 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산업통상 자원부	국제기구협력사업 (에티오피아 유엔산업개발기구 협력)(민관협력, '12년-계속, 2.00억/8.5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프리카	무상	양자
	온실가스감축프로젝트 지원사업(민관협력, '16년-계속, 7.00억/26.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무상	양자
	법정계량제도 선진화(캄보디아)(민관협력, '15년-'19년, 1.50억/5.5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가인정제도 선진화지원(라오스)(민관협력, '15년-'19년, 1.50억/5.5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법정계량 및 시험인증 제도 선진화(베트남)(민관협력, '13년-'17년, 0.30억/3.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지원(미얀마)(민관협력, '17년-'21년, 2.20억/5.50억, 신규)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법정계량제도 및 제품 안전제도 전수(페루)(민관협력, '16년-'20년, 0.50억/7.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지원 (파라과이)(민관협력, '16년-'20년, 2.00억/7.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민관협력	중남미	무상	양자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분담금(민관협력, '54년-, 0.68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민관협력, '61년-, 13.69억, 계속)	Y	기타	민관협력		무상	다자

수행 기관	사 업 명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시행계획 반영 여부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사업지역	유상· 무상	양자· 다자
경기도	몽골 내 한국어 확산을 위한 스마트교실구축 사업 (프로젝트, '14년-'19년, 4.00억/20.00억, 계속)	Y	기술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동아시아	무상	양자
	캄보디아적정기술/공정무역 연계자립마을 (프로젝트, '16년-'19년, 4.00억/12.00억, 계속)	Y	기타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무상	양자
경상남도	모자보건 감염관리 가정용 제대관리용품지원 계획 (프로젝트, '17년, 0.15억/0.50억, 신규)	Y	보건의료	프로젝트		무상	양자
	국외자매도시 몽골 항울구 농업기술연수 교육(연수생 초청, '17년, 0.10억/0.10억, 신규)	Y	교육	연수생초청		무상	양자
부산 광역시	중점협력국 자매도시 공무원 초청 시정연수(연수생 초청, '17년, 0.20억/0.20억, 신규)	Y	교육	연수생초청		무상	양자
	ODA관계자 국제 초청연수(연수생초청, '17년, 0.65억/0.65억, 신규)	Y	교육	연수생초청		무상	양자
	부산해외봉사단 파견봉사 (전문인력/봉사단, '17년, 0.66억/0.66억, 신규)	Y	기타	전문인력/봉사단		무상	양자

라. 2015-17년 부처, 기관별 ODA 사업 유형 통계(건수 기준)

〈표 62〉 2015-17년 부처, 기관별 ODA 사업 유형 통계(건수 기준)¹⁷⁸⁾

사업 건수	프로젝트			초청연수			전문인력 (개발컨설팅 포함)/봉사단			민관협력			기타			양자						다자		
																유상			무상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기획재정부 (본부)	119	144	127	-	-	-	4	28	16	-	-	-	12	13	16	119	70	128	5	33	19	11	10	12
교육부	2	15	13	-	-	-	3	-	-	1	10	13	4	5	21	-	-	-	8	31	47	2	-	-
농림축산 식품부	21	24	24	4	5	5	1	3	3	-	-	-	4	7	7	-	-	-	24	36	36	5	3	3
보건복지부	17	17	19	-	1	1	1	1	2	-	2	1	9	10	11	-	-		17	25	29	10	6	5
산업통상 자원부	4	3	7	2	1	1	15	15	14	-	1	2	5	7	12	-	-	-	23	25	34	3	2	2
농촌진흥청	-	3	3	-	-	-	1	20	20	-	-	-	10	7	7	-	-	-	5	29	29	11	1	1
산림청	9	·	12	-	·	-	-	·	1	1	·	-	1	·	1	-	·	-	4	·	13	7	·	1
경기도	·	·	2	·	·	-	·	·	-	·	·	-	·	·	-	·	·	-	·	·	2	·	·	-
부산광역시	·	·	-	·	·	2	·	·	1	·	·	-	·	·	-	·	·	-	·	·	3	·	·	-
경상남도	·	·	2	·	·	1	·	·	-	·	·	-	·	·	-	·	·	-	·	·	3	·	·	-

178) 2015년 통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a.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0-1-4호)』. 세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년 통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b.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3-1-2호)』. 세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년 통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8-1호)』. 세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3. 입법 제·개정안 현황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입법 제·개정안의 현황 중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국제협력 요원에 관한 법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농촌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익신탁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입법 제·개정안이 나온 것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① 국제개발협력 인권향상 대상자(청소년) 확대 및 청년층의 취업·창업 등 고용창출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경우 근로기간 연장의 법적 근거 마련, ②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3개의 분과를 만들어 각 분과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 부여 근거 마련, ③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의사록 공개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동 권한 강화, ④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 추가에 대한 사항 등이 있다.

〈표 6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¹⁷⁹⁾

개정안 제안시기	제·개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국제개발협력 인권향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아동·장애인에서 청소년도 포함시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 중 “장애인”을 “장애인·청소년”으로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2017. 5. 12.]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경우 근로기간을 2년을 초과 하되 5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봉사활동을 통한 청	제16조제1항 중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이하 이조에서 “전문 인력”이라 한다)”으로

17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접속일: 2017.4.14..)

개정안 제안시기	제·개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년층의 취업·창업 등 고용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공적개발원조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개발협력”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으로, “분야별 전문 인력”을 “전문 인력”로, “분야별 전문 인력”을 “전문 인력”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행기관은 전문 인력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5년의 범위에서 관련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2017. 6. 23.]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협력 및 유상협력 분야의 간사위원을 포함한 간사위원 3명을 두되, 수석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 유상협력 분야는 기획재정부장관, 무상협력 분야는 외교부장관이 각각 간사위원이 되어, 각 분야에서 지원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도록 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실효성과 원조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7조제2항 중 “간사위원”을 “간사위원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를 “수석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유상협력 간사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무상협력 간사위원은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간사위원은”으로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2017. 6. 29.]	현행법은 개발도상국인 협력대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무상의 개발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이 국정농단에 연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취지의 몰이해, 전횡행정, 부실한 사업시행체계를 드러냈음.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변경과 같은 중요결정이 회의 없이 서면으로 의결되는 등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이며, 국회에 보고가 적시에 투명하게 되지 않아 국회가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을 법	가. 기본원칙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삭제). 나.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5항). 다.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록을 비공개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기본계획의 내용에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 관련한 평가계획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5호). 마.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개정안 제안시기	제·개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률에서 규정하면서 의사록을 공개하고, 국회 보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정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시행정을 줄이고 국제적인 기준에서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위해 국내법에 의해 인정되는 사업취지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개발협력 취지와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함.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를 강조하고, 사업정보제공의 목적이 효율성뿐 아니라 투명성과 국민의 정보접근성이 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사업발굴을 주관기관으로 일원화하여 분절화로 인한 부처 간 사업 중복과 책임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않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 바.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및 사업발굴을 추가함(안 제10조제3호의2 및 제5호). 사. 중점협력대상국을 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아.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의 목적에 투명성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추가함(안 제15조제3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대표발의) [2017. 7. 13.]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시행기관은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제3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로서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것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등은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한다.

나.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은 개발도상국 내 질병의 예방과 퇴치의 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의 국회의 심의권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한 내용이다.

〈표 64〉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¹⁸⁰⁾

개정안 제안시기	제·개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2016. 9. 2.] ¹⁸¹⁾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고, 이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메르스·에볼라 등 국제이동으로 유발되거나 전파가 확대되는 국제감염병 등 개도국 내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 질병의 전파를 억제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여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빈곤 및 질병 퇴치”를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과 퇴치”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여금”으로, “부과·징수한다”를 “부과·징수하여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여금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여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외교부장관은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여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8조의2에 따른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여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8조의5(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18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상동

개정안 제안시기	제·개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외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업연도)”를 “(기금 및 협력단의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중 “협력단”을 “기금 및 협력단”으로 한다. 법률 제8316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1482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다만, 위의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입법 취지가 정부가 제출한 「국제질병 퇴치기금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기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 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¹⁸²⁾

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은 ① 재외동포 개념의 명확화 및 재단 파견인력에 대한 공적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②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상의 과태료 규정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의 정합성 구축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표 6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¹⁸³⁾

개정안 제안시기	제·개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한민족의 혈통을 지녔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는 모호한 개념이므로 이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가. 재외동포의 정의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재외동포 정의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 외국에 인력을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

181)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2016-07-26]의안과 동일 내용임

182) 외교통일위원회. 2016.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0면.

18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접속일: 2017.4.14.).

개정안 제안시기	제·개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2017. 1. 12.]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재단이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여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의 공적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우 파견인력의 공적지위가 보장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안 제15조의2 신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7. 3. 16.]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2017. 1. 12.]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의 재외동포 정의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면 동일한 용어를 각 법률에서 달리 정의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¹⁸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해외 파견 직원에 대한 공적지위의 보장 필요성은 있으나,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무상원조사업을 주관하는 외교부장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공적지위에 대한 의미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¹⁸⁵⁾

184) 석영환. 201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4면.

185) 석영환, 전계 검토보고, 8면.

참고문헌

(1) 연구보고서

- 강현철·박광동·차현숙·김종천·류창호.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분석 연구』. 세종: 기획재정부.
- 권윤희. 2016. “SDGs 이행과 ODA 추진체제의 개선과제.” 『KIPA 조사포럼』 vol.19.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권혁주·김효정. 2016.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방안.” 『KIPA 조사포럼』 vol.19.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박광동. 2011.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박영도. 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백옥선. 2015.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제품인증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석영환. 201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 유웅조. 2016. “공적개발원조(ODA) 현황과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vol.56.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전용일·김통원·임병인·문선웅. 2011. 『국내 주요 기관 공적개발원조(ODA) 체제 평가 연구』. 세종: 국무총리실.
- 한국행정연구원. 2016. “공적개발원조(ODA)의 국내외 동향 및 비교분석”. 『KIPA 조사포럼』vol.19.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 간행물 / 보고서

- 감사원. 2017. 『감사보고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서울: 감사원.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a.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0-1-4호)』. 세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_____. 2015b.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3-1-2호)』. 세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_____. 2016.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8-1호)』. 세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_____. 2017. 『2017년 대한민국 ODA백서』, 세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회 법제실. 2016. 『법제이론과 실무』, 서울: 국회 법제실: 287.
- 국회입법조사처. 2016. 『지표로 보는 이슈』,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대외경제협력기금. 2015. 『2015 EDCF Annual Report』, 서울: 대외경제협력기금
- 법제처. 2012. 『법령입안심사기준』, 서울: 법제처.
- 외교통일위원회. 2016.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행정자치부 국제행정협력관실. 2014. 『국제협력실무 매뉴얼』, 세종: 행정자치부

(3) 인터넷 사이트

- 경기도. 『경기도 예산개요』
<http://www.gg.go.kr/archives/3750611> (접속일: 2017.6.13.).
- 경기도 예산개요-2017. p.264 <http://www.gg.go.kr/archives/3750611>(접속일: 2017.6.13.).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접속일: 2017.6.13.).
- 경기도청 홈페이지 조직도안내. <http://www.gg.go.kr/organization>(접속일: 2017.6.13.).
- 경상남도. 『조직도안내』
http://www.gyeongnam.go.kr/jsp/sub04/04_03.jsp (접속일: 2017.6.13.).
- 경상남도.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서』
http://open.gyeongnam.go.kr/jsp/sub01/01_0410.jsp (접속일: 2017.6.13.).
-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jsp/main/main.jsp>
(접속일: 2017.6.13.).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사업기관』
<http://ksp.kdi.re.kr/kr/ksp/organiz.jsp> (접속일: 2017.4.14.).
- 교육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e.go.kr/main.do?s=moe> (접속일: 2017.06.12.).
- 교육부. 『조직도·직원 및 연락처』
<http://www.moe.go.kr/sub/info.do?page=0604&m=0604&s=moe> (접속일: 2017.6.12.).
- 교육부. 『2017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4&boardSeq=70030&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1&s=moe&m=040103&opType=N> (접속일: 2017.6.12.).
- 국무조정실. 201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활동현황 및 결과』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ltSIPL.do?brd_seq=24&bltn_div=

oda (접속일: 2017.6.13.).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위원회 조직도』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3/L01_S00_01.jsp (접속일: 2017.4.14.).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https://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ItSIPL.do?brd_seq=24&bltn_div=oda(접속일: 2017.4.14.)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접속일: 2017.4.14..)
- 기획재정부. 『조직도.』
http://www.mosf.go.kr/mi/orgnzt/org.do?bbsId=MOSFBBS_000000000097&menuNo=9040100 (접속일: 2017.6.12.).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2016. 4분기)』
http://mosf.go.kr/com/bbs/detailComtnbbs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51&menuNo=6050200&searchNttId=MOSF_000000000008416 (접속일: 2017.6.13.)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afra.go.kr/search/totalSearch.jsp>
(접속일: 2017.6.12.).
-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
http://www.mafra.go.kr/list.jsp?group_id=5&menu_id=76&menu_name=조직및직원&link_menu_id=93&division=H&board_kind=&board_skin_id=&parent_code=5&link_url=&depth=1&tab_yn=N&code=top (접속일: 2017.6.12.).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목명세서』
http://www.mafra.go.kr/list.jsp?id=31665&pageNo=1&NOW_YEAR=2015&group_id=4&menu_id=72&link_menu_id=&division=B&board_kind=C&board_skin_id=C1&parent_code=71&link_url=&depth=2 (접속일: 2017.6.12.).
- 대외경제협력기금. 『기금 관리체계』
<http://211.171.208.43/edcf/intro/outline/system.jsp> (접속일: 2017.4.14.).
- 법령해석사례. [법제처 16-0630, 2017.2.15., 국무조정실] .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searchCondition=3&searchKeyword=%ea%b0%9c%eb%b0%9c%ed%98%91%eb%a0%a5&csSeq=375114&rowIdx=1>. (접속일: 2017.4.14.).
- 법령해석사례. [법제처 13-0536, 2013.12.11., 국무조정실].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searchCondition=3&s>

earchKeyword=%ea%b0%9c%eb%b0%9c%ed%98%91%eb%a0%a5&csSeq=105503
&rowIdx=2 (접속일: 2017.4.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접속일: 2017.4.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2264&ancYd=20100125&ancNo=09938&efYd=2010072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접속일: 2017.4.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기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undefined> (접속일: 2017.4.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단 비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0744&lsId=01114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PtnThdCmp#0000> (접속일: 2017.4.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AD%EC%A0%9C%EA%B0%9C%EB%B0%9C%ED%98%91%EB%A0%A5%EA%B8%B0%EB%B3%B8%EB%B2%95#undefined> (접속일: 2017.4.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0744&lsId=&efYd=201504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접속일: 2017.4.14.).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접속일: 2017.06.12.)
- 보건복지부. 『조직도』
http://www.mohw.go.kr/front_new/sg/ssg0101mn.jsp?PAR_MENU_ID=05&MENU_ID=050201 (접속일: 2017.6.12.).
- 보건복지부.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3&CONT_SEQ=337861&page=1 (접속일: 2017.6.12.).
-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조직도』
http://www.haeundae.go.kr/html/07_about/about_05.php (접속일: 2017.6.13.).
-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017년 사업예산 상세정보』
http://e-budget.haeundae.go.kr/html/02_finance/finance_14.php (접속일: 2017.6.13.).

-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http://www.motie.go.kr/motie/ms/mg/budgeting/bbs/bbsView.do?bbs_cd_n=24&bbs_seq_n=37 (접속일: 2017.6.13.).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조직안내』
<http://www.motie.go.kr/motie/mi/on/institution/organizationUser/institutionView.do> (접속일: 2017.6.12.).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tie.go.kr/www/main.do> (접속일: 2017.06.12.).
- 서천군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http://www.seocheon.go.kr/prog/yesanInfo/sub01_08_02/list.do (접속일: 2017.6.13.).
- 서천군청 『조직도』
http://www.seocheon.go.kr/kor/sub06_08_01.do (접속일: 2017.6.13.).
- 세종특별자치시. 『조직안내』 http://www.sejong.go.kr/kor/sub01_01_01_01.do
(접속일: 2017.6.13.).
-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http://www.sejong.go.kr/prog/yesanInfo/sub04_01_04_01/list.do (접속일: 2017.6.13.).
- 인사혁신처. 『조직도』
<http://www.mpm.go.kr/mpm/about/aboutorg/orgchart/> (접속일: 2017.6.13.).
-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
<http://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44&astClsCd=> (접속일: 2017.4.14.).
- 정책뉴스. 『외교부, 충분한 사전검토 통해 체계적 대외원조』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JSESSIONID_KOREA=9AOwKM8zakinBKjTPbTrf1VFNJs09tC0Y93QO1V0rKOzb00cgH5M!2013340275!-1727401076?newsId=148615482&pWise=relationNews2 (접속일: 2017.4.14.).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제규정.』 【별표 1】 조직도.
<http://www.kofih.org/overview/bylaws/regulations/?uid=1478&mod=document>
(접속일: 2017.6.12.).
- 한국수출입은행. 『EDCF 통계보고서』
<https://www.edcfkorea.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4002004001>
(접속일: 2017.6.13.).
- ODA통계. <https://211.171.208.92/index.html> (접속일: 2017.6.14.).
- ODA통계. 『기금 관리체계』 <http://211.171.208.43/edcf/intro/outline/system.jsp>

(접속일: 2017.4.14.).

- ODA KOREA. 『무상원조 주관 및 시행기관』
http://odakorea.go.kr/ODAPage_2012/T02/L02_S02_01.jsp (접속일: 2017.4.14.)

[부록 1]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공여실적(순지출기준)¹⁸⁶⁾

구 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공적개발원조	23.50	34.00	33.80	61.16	57.48	76.80	111.56	140.22	115.99	159.15	185.61	182.70	317.49	212.07	284.65	278.78	365.90	423.32	752.32	455.25	686.11	802.34	816.06	1,173.78	1,324.59	1,597.45	1,755.38	1,866.74	1,915.39	
양자 간 원조	1.42	2.10	5.05	12.25	31.52	45.22	60.12	60.07	71.46	123.31	111.34	124.69	131.35	131.19	171.54	206.76	245.17	330.76	463.32	376.06	490.52	539.22	581.10	900.63	999.57	1,183.17	1,309.58	1,395.77	1,531.14	
무상증여	1.42	2.10	3.27	3.26	25.04	30.99	32.68	38.45	50.11	53.41	54.77	37.21	38.95	47.78	52.97	66.70	145.46	212.09	318.00	258.95	358.33	388.67	366.99	573.89	575.02	714.88	809.00	883.65	968.77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	-	-	-	-	10.32	9.42	10.03	13.64	16.71	19.84	23.21	13.53	14.32	18.08	12.77	21.59	83.34	123.78	184.99	81.58	134.31	99.96	159.09	342.28	265.27	323.48	338.63	371.30	601.81
(기술협력)	1.14	1.71	2.25	2.18	6.19	8.53	10.51	12.28	16.89	16.56	17.38	14.18	14.67	19.79	21.69	30.21	36.93	53.83	80.16	116.78	164.08	181.05	143.27	104.40	220.39	260.78	284.49	335.65	281.15	
(행정비용)	0.28	0.39	1.02	1.08	7.60	11.57	11.15	11.36	14.49	14.43	12.38	8.65	8.08	7.98	8.11	9.03	13.03	17.51	19.38	25.31	31.43	31.51	27.76	38.39	53.60	59.40	69.12	56.65	65.42	
(기타)	-	-	-	-	-	0.93	1.47	0.99	1.17	2.02	2.58	1.80	0.85	1.88	1.93	10.40	5.87	12.16	16.97	33.47	35.29	28.50	56.16	36.87	88.82	35.76	71.22	116.76	120.05	20.40
EOCF 차관	-	-	1.78	8.99	6.48	14.23	27.44	21.62	21.35	69.90	56.57	87.48	92.40	83.41	118.57	140.06	99.71	118.68	145.30	117.11	132.19	170.55	214.13	326.74	414.55	468.29	500.58	512.12	562.39	
다자간 원조	22.08	31.90	28.75	48.91	25.96	31.59	51.44	80.15	44.53	35.84	74.27	58.01	186.14	80.89	93.11	72.02	120.74	92.56	288.01	79.19	205.59	263.12	234.94	273.15	335.02	414.28	445.80	460.97	384.25	
(국제기구출연)	3.20	3.62	3.74	4.67	5.78	8.01	10.25	12.88	14.82	30.08	29.06	33.60	67.70	26.05	35.40	21.45	25.10	51.28	162.38	98.46	108.63	178.87	150.84	174.64	197.18	221.85	261.24	274.63	199.92	
(국제기구출자)	18.88	28.28	16.24	44.24	11.82	21.47	25.67	25.65	22.68	5.76	35.53	28.31	129.46	61.54	59.74	63.71	112.35	51.30	133.27	13.21	96.96	84.25	84.09	98.51	137.84	192.43	184.56	186.34	184.33	
(장기대출금)	-	-	8.77	-	8.36	2.10	15.52	41.62	7.03	-	9.68	-3.90	-11.02	-6.69	-2.03	-13.14	-16.72	-10.02	-6.64	-32.48	-	-	-	-	-	-	-	-	-	-
GN (억 달러)	1,382	1,864	2,300	2,635	3,076	3,293	3,614	4,223	5,155	5,553	5,136	3,404	4,400	5,096	4,811	5,475	6,086	6,824	7,901	8,887	9,713	9,347	8,372	10,146	11,176	11,355	13,160	14,210	13,839	
ODA / GN(%)	0.02	0.02	0.01	0.02	0.02	0.02	0.03	0.03	0.02	0.03	0.04	0.05	0.07	0.04	0.06	0.05	0.06	0.06	0.10	0.05	0.07	0.09	0.10	0.12	0.12	0.14	0.13	0.13	0.14	
(ODA 승인액)	27.33	16.21	96.78	40.39	107.36	80.53	57.21	220.07	237.35	521.86	250.65	325.39	370.14	325.01	262.65	388.82	437.15	780.49	771.69	882.00	1,381.85	1,667.84	1,976.95	1,996.28	1,922.69	2,236.65	2,646.37	2,688.41	2,392	

186)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통계, 2017년 3월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7-05-089

ODA집행기관의 사업시행 법적기반 및 사업유형

발 행 2017년 7월

발 행 인 최성호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KOICA아카데미 ODA연구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031)740-0114

팩 스 031)740-0655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아트프린팅

I S B N 978-89-6469-460-2 9332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7-05-089

ISBN 978-89-6469-460-2 93320



ODA집행기관의 사업시행
법적기반 및 사업유형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